정책연구 2024-14

지역청년지원에 관한 법·제도 수립방안 연구

박진경 · 김민영 · 조정찬 · 최민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참여연구진

저 자	**박진경, 김민영, 조정찬, 최민정**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진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민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객원연구원	조정찬 | 입법 Q&A 대표
		최민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체인 청년층의 도약과 성장은 곧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잠재적인 성장률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高 현상 장기화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청년층의 삶은 더욱 치열해지는 경향

❍ 이에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권리 등 분야별로 청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지만 청년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

-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역에서는 인적자원이 취약해져 지방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과다 경쟁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들이 동시에 어려움에 직면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로 지자체는 지역산업을 가동시키고 지역의 인구를 재생산하는 주체인 청년인구를 '핵심 인적자원'으로 인식, 지역에 청년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 중

- 그러나 청년세대는 전체 인생에서 실패를 해가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 인생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기 위한 청년인구의 유치가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을 살리기 위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

□ 연구목적

❍ 중앙부처의 지역청년 지원과 관련되는 법·제도 분석을 통한 관련 제도의 한계 검토

- 국무조정실 소관「청년기본법」, 고용노동부 소관「청년고용촉진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 지역청년 지원 정책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청년 지원 정책틀 마련
-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유출을 저지하고, 지역과 청년이 함께 안정적으로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 위주

❍ 지역청년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서울 및 수도권과의 교류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은 (가칭) 지역청년지원법 제정(안) 마련
- 청년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청년 지원 정책틀 제안

2. 주요 연구내용

□ 지역청년의 특성 및 실태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청년세대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물질적 소유보다 개인의 삶의 질과 경험을 더 중시하며, 효율성과 경쟁보다는 연대와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음
- 탈물질주의적 성향을 가져 감성적인 소비와 지역 특색을 중시하는 경험을 선호하고 워라밸을 중시하며, 유연한 일자리를 탐색하는 경향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新 라이프스타일과 선호도를 반영한 지역청년정책 추진 필요

❍ 특히, 2015년 이후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입이 두드러지게 커지고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교육 자원들이 청년들의 수도권 선호경향을 강화시켜 수도권 청년들은 경쟁 심화와 치열한 생활환경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반면 비수도권은 미래 세대 부재로 인해 지역 생산기반이 위축
-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등 지역별로는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각기 달라 전국 공통의 정책으로는 처방이 부족한 상황

□ **지역청년 지원 제도 및 정책분석을 통한 법·제도적 한계 검토**

○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과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등 다수 개별법상의 관련 조문 존재

-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주거, 문화, 복지, 참여 등 광범위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으나,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전국 공통의 획일적인 청년지원정책에 해당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

○ 2010년대 중반 이후 기술혁신·자동화, 디지털 전환 경제가 도래함에 따라서 지방의 근간이 되어 주었던 주력 제조업이 쇠퇴하고, 신산업 창출 지체 등으로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커지고 지역소멸위기 가중

-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로컬'이 부상,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지역발전 정책 속에서 차별화된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고, 지역의 다양한 가치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정책과 청년정책의 연계 필요

○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의 활력은 정책의 지속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선순환의 동력이 됨

- 지역마다 다른 산업과 일자리 특성, 청년인구 유출 특성, 지역의 자산과 매력 등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여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
- 청년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정착하여 경제, 문화, 재생 등 지역사회가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지역청년 지원 정책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청년 지원 정책틀 마련**

○ 국가와 지자체는 모두가 청년발전을 도모해야 할 공동의 책무자이며, 지방은 특색있고 의미있는 청년정책의 산지로서 정책 일선에서 청년의 니즈와 가치를 파악하며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해야 함

- 지역발 청년정책은 청년에게 필요한 체감형 정책들이 다수로 청년의 권리 존중 및 사회적 안전망 구현, 시장 상황에 맞는 직무능력 함양, 사회적 가치 지향 존중,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주체로서의 역량 지원 등의 목적 추구하며 실질적인 지원 강조

❍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여 지역 여건 및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하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함

- 지역이 단기적·가시적 성과에 목매지 않고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 청년정책의 분권과 특화발전 지원

□ 지역청년 지원 제도 수립방안 제안

❍ 시행 중인 다수 법률이 있지만 이들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입법사항이 있으므로 새로운 입법 추진 제안

- 지역소멸 방지와 청년의 역할 연계 법제 필요, 청년 중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책추진의 법제적 근거 부족, 지방의 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간의 형평 문제 발생,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방 및 민간의 역할 체계화 필요

❍ 지역청년 지원 정책은 청년의 도약과 성장을 돕는 지역발(發) 청년정책의 추진, '지역'과 '청년'을 연계하는 지역격차 완화정책의 추진,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는 지역청년정책의 추진 필요

- 지역청년 지원정책의 비전은 청년은 지역에서 꿈을, 지역은 청년에서 미래를, 목표는 청년과 지역이 함께 하는 로컬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
- 지역청년 지원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로컬 청년 생태계 구축, 지역활력형 청년 비즈니스 기반 창출, 수도권과 지역의 청년 상생발전 전략을 제안

❍ 지역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으로써 (가칭)지역청년지원법 제정과 지역 청년 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다부처 협업 활성화 제시

- (가칭)지역청년지원법은 청년과 지역의 주도에 의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 지역청년특구 지정 및 전략계획·운영계획 수립,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 및 지역청년특구지역협의회 운영, 지역청년특구사업시행, 지역청년특구에 대한 특례 등 법률의 내용별로 조문을 세분화하여 구성안 마련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0
1. 연구범위 ····· 10
2. 연구방법 ····· 11

제 2 장 지역청년의 특성 및 실태분석

제1절 청년세대의 특성 ····· 15
1. 청년의 의미 ····· 15
2.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변화 ····· 16
3. 청년세대의 변화가 갖는 사회적 함의 ····· 21

제2절 청년의 부문별 삶의 여건 분석 ····· 23
1. 경제 부문 ····· 23
2. 주거 부문 ····· 28
3. 교육 및 학력 부문 ····· 31
4. 결혼 및 출산 부문 ····· 32
5. 여가 부문 ····· 35

제3절 지역청년의 여건 및 문제점 분석 ····· 38
1.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의 여건 비교·분석 ····· 38
2. 비수도권 권역별 청년의 여건 비교·분석 ····· 54

제4절 시사점 ····· 82
1. 수도권 청년인구 집중으로 인한 삶의 여건 악화 ····· 82
2. 지역마다 지역과 청년의 상황 편차 존재 ····· 83
3. 청년의 선호도 변화를 고려한 정책 필요 ····· 85

제 3 장 청년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분석

제1절 청년지원 제도 및 정책 ····· 91
1. 청년기본법 ····· 91
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 94
3. 청년정책 추진계획 ····· 98

제2절 청년일자리정책 ····· 104
1. 청년고용법과 후계청년농어업인법 ····· 104
2. 역대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및 고용대책 ····· 108
3.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 ····· 114

제3절 청년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한계 ····· 120
1. 기본적인 전국 공통의 청년 지원 법률 ····· 120
2. '지역'과 '청년'을 연계한 정책설계 필요 ····· 121
3. 중앙부처별 하향적·산발적 청년정책 추진 ····· 124

제 4 장 지역청년 지원 정책사례

제1절 청년유입거점 조성 정책사례 ····· 127
1. 서울청년센터 ····· 127
2. 청년취업사관학교 ····· 133
3. 미국 포틀랜드 ADX(Art Design Xchange) ····· 138

제2절 지역청년 일자리사업 정책사례 ····· 141
1.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 141
2. 무주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 146

제3절 지역청년 인재교류 및 파견 정책사례 ····· 149
1.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 149
2. 하동 청년(마을)협력가 ····· 154

제4절 수도권-지방 연계협력 정책사례 ····· 158
1.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 ····· 158
2. 서울-지방 상생 청년교류사업(넥스트로컬) ····· 162

제5절 다부처 협업 정책사례 ····· 168
1. 지역활력타운 ····· 168
2. 지역혁신공모사업 ····· 171

제6절 소결 ····· 175
1.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의 현 주소 ····· 175
2. 청년정책을 매개로 한 지역발전의 가능성 ····· 176

제 5 장 지역청년 지원 제도 수립방안

제1절 지역청년지원 법·제도의 필요성 ····· 179
1. 기존 법·제도 ····· 179
2.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 방향 ····· 181
3. 입법형식 ····· 184

제2절 지역청년 지원정책 추진방향 ····· 185
1. 기본방향 ····· 185
2. 추진전략 및 과제 ····· 189
3. 기반구축 ····· 199

제3절 지역청년지원법 제정(안) ····· 200
1. 법안의 주요 내용 ····· 200
2. 법률(안) ····· 206

【참고문헌】 ····· 209

【부록】 ····· 215

표 목차

| 표 2-1 | 코호트별 청년기 특성 ····· 16
| 표 2-2 |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현황(2022) ····· 23
| 표 2-3 | 청년층 종사상지위 현황(2022) ····· 24
| 표 2-4 | 청년층 고용 계약기간 현황(2022) ····· 25
| 표 2-5 | 청년층 복수 일자리 현황(2022) ····· 26
| 표 2-6 | 청년 개인 평균 연간소득 현황(2022) ····· 26
| 표 2-7 | 청년 개인 평균 부채 현황(2022) ····· 27
| 표 2-8 | 청년 개인 평균 재산 현황(2022) ····· 27
| 표 2-9 | 청년 삶에서 일자리, 소득, 자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 현황(2022) ····· 28
| 표 2-10 | 청년 가구 유형 현황(2022) ····· 29
| 표 2-11 | 청년 주거 점유 형태 현황(2022) ····· 29
| 표 2-12 | 가구 생활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현황(2022) ····· 30
| 표 2-13 | 청년 자가 주택 소유가 필요한 이유(2022) ····· 31
| 표 2-14 | 청년 학력 현황(2022) ····· 32
| 표 2-15 | 청년 혼인 상태 현황(2022) ····· 32
| 표 2-16 | 청년 향후 결혼 계획 현황(2022) ····· 33
| 표 2-17 | 청년 삶에서 연애 및 결혼 중요성 인식 현황(2022) ····· 33
| 표 2-18 | 청년 삶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 중요성 인식 현황(2022) ····· 34
| 표 2-19 | 청년 향후 자녀 출산 의향 현황(2022) ····· 35
| 표 2-20 | 청년 활동경험 필요 여부에 대한 인식(2022) ····· 36
| 표 2-21 | 청년 지난 1년간 활동경험 여부(2022) ····· 36
| 표 2-22 | 청년 지난 1년간 활동경험을 못한 이유(2022) ····· 37
| 표 2-23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종사상지위 현황(2022) ····· 38
| 표 2-24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복수 일자리 현황(2022) ····· 39
| 표 2-25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개인 평균 연간소득 현황(2022) ····· 39
| 표 2-26 |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가구주인 청년의 주거 점유 형태 현황(2022) ····· 40

| 표 2-27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가구 유형 현황(2022) ····· 41
| 표 2-28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혼인 상태 현황(2022) ····· 42
| 표 2-29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삶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 중요성 인식 현황(2022) ····· 42
| 표 2-30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활동경험 필요 여부에 대한 인식(2022) ····· 43
| 표 2-31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지난 1년간 활동경험 여부(2022) ····· 44
| 표 2-32 | 청년 포함 세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동 규모(2023) ····· 48
| 표 2-33 | 청년 세대주의 전입사유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동 규모(2023) ··· 49
| 표 2-34 | 청년 동거인 등의 전입사유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동 규모(2023) ····· 51
| 표 2-35 | 청년 자녀, 손자녀의 전입사유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동 규모(2023) ····· 53
| 표 2-36 | 부모와 청년 자녀의 전입사유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동 규모(2023) ····· 54
| 표 2-37 | 강원권 청년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현황(2022) ····· 55
| 표 2-38 | 강원권 청년 종사상지위 현황(2022) ····· 55
| 표 2-39 | 충청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현황(2022) ····· 56
| 표 2-40 | 충청권 청년 종사상지위 현황(2022) ····· 56
| 표 2-41 | 대경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현황(2022) ····· 57
| 표 2-42 | 대경권 청년 종사상지위 현황(2022) ····· 57
| 표 2-43 | 호남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현황(2022) ····· 58
| 표 2-44 | 호남권 청년 종사상지위 현황(2022) ····· 58
| 표 2-45 | 동남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현황(2022) ····· 58
| 표 2-46 | 동남권 청년 종사상지위 현황(2022) ····· 59
| 표 2-47 | 강원권 청년 개인 평균 연간소득 현황(2022) ····· 60
| 표 2-48 | 강원권 청년 개인 평균 부채 현황(2022) ····· 60
| 표 2-49 | 강원권 청년 개인 평균 재산 현황(2022) ····· 60
| 표 2-50 | 충청권 청년 개인 평균 연간소득 현황(2022) ····· 61
| 표 2-51 | 충청권 청년 개인 평균 부채 현황(2022) ····· 61
| 표 2-52 | 충청권 청년 개인 평균 재산 현황(2022) ····· 61

| 표 2-53 | 대경권 청년 개인 평균 연간소득 현황(2022) ····· 62
| 표 2-54 | 대경권 청년 개인 평균 부채 현황(2022) ····· 62
| 표 2-55 | 대경권 청년 개인 평균 재산 현황(2022) ····· 63
| 표 2-56 | 호남권 청년 개인 평균 연간소득 현황(2022) ····· 63
| 표 2-57 | 호남권 청년 개인 평균 부채 현황(2022) ····· 64
| 표 2-58 | 호남권 청년 개인 평균 재산 현황(2022) ····· 64
| 표 2-59 | 동남권 청년 개인 평균 연간소득 현황(2022) ····· 65
| 표 2-60 | 동남권 청년 개인 평균 부채 현황(2022) ····· 65
| 표 2-61 | 동남권 청년 개인 평균 재산 현황(2022) ····· 65
| 표 2-62 | 강원권 청년 가구 유형 현황(2022) ····· 66
| 표 2-63 | 강원권 청년 가구주 주거 점유 형태 현황(2022) ····· 66
| 표 2-64 | 충청권 청년 가구 유형 현황(2022) ····· 67
| 표 2-65 | 충청권 청년 가구주 주거 점유 형태 현황(2022) ····· 67
| 표 2-66 | 대경권 청년 가구 유형 현황(2022) ····· 68
| 표 2-67 | 대경권 청년 가구주 주거 점유 형태 현황(2022) ····· 68
| 표 2-68 | 호남권 청년 가구주 주거 점유 형태 현황(2022) ····· 68
| 표 2-69 | 호남권 청년 가구 유형 현황(2022) ····· 69
| 표 2-70 | 동남권 청년 가구 유형 현황(2022) ····· 70
| 표 2-71 | 동남권 청년 가구주 주거 점유 형태 현황(2022) ····· 70
| 표 2-72 | 강원권 청년 혼인 상태 현황(2022) ····· 71
| 표 2-73 | 강원권 청년 향후 결혼 계획 현황(2022) ····· 71
| 표 2-74 | 강원권 청년 결혼 및 자녀 출산·양육 중요성 인식 현황(2022) ····· 71
| 표 2-75 | 충청권 청년 혼인 상태 현황(2022) ····· 72
| 표 2-76 | 충청권 청년 향후 결혼 계획 현황(2022) ····· 72
| 표 2-77 | 충청권 결혼 및 자녀 출산·양육 중요성 인식 현황(2022) ····· 72
| 표 2-78 | 대경권 청년 혼인 상태 현황(2022) ····· 73
| 표 2-79 | 대경권 청년 향후 결혼 계획 현황(2022) ····· 73
| 표 2-80 | 대경권 결혼 및 자녀 출산·양육 중요성 인식 현황(2022) ····· 73
| 표 2-81 | 호남권 청년 혼인 상태 현황(2022) ····· 74
| 표 2-82 | 호남권 청년 향후 결혼 계획 현황(2022) ····· 74

| 표 2-83 | 호남권 결혼 및 자녀 출산·양육 중요성 인식 현황(2022) ····· 75
| 표 2-84 | 동남권 청년 혼인 상태 현황(2022) ····· 75
| 표 2-85 | 동남권 청년 향후 결혼 계획 현황(2022) ····· 76
| 표 2-86 | 동남권 결혼 및 자녀 출산·양육 중요성 인식 현황(2022) ····· 76
| 표 2-87 | 강원권 청년 활동경험 필요 여부에 대한 인식 및 지난 1년간 경험 여부(2022) ····· 77
| 표 2-88 | 충청권 청년 활동경험 필요 여부에 대한 인식 및 지난 1년간 경험 여부(2022) ····· 78
| 표 2-89 | 대경권 청년 활동경험 필요 여부에 대한 인식 및 지난 1년간 경험 여부(2022) ····· 79
| 표 2-90 | 호남권 청년 활동경험 필요 여부에 대한 인식 및 지난 1년간 경험 여부(2022) ····· 80
| 표 2-91 | 동남권 청년 활동경험 필요 여부에 대한 인식 및 지난 1년간 경험 여부(2022) ····· 81
| 표 2-92 | 권역별 청년 여건 분석결과 요약 ····· 84
| 표 3-1 | 청년기본법의 세부내용 ····· 92
| 표 3-2 |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명과 제정시기 ····· 94
| 표 3-3 |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의 목적 ····· 95
| 표 3-4 |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정책 분야 ····· 96
| 표 3-5 |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관련 조례 ····· 97
| 표 3-6 | 청년고용법과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의 주요내용 ····· 106
| 표 3-7 | 역대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 109
| 표 3-8 | 역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 110
| 표 3-9 | 윤석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 113
| 표 3-10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 114
| 표 3-11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과 대표사업 ····· 115
| 표 3-12 | 유형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2020~2024년 예산 기준) ····· 116
| 표 3-13 | 청년대상 일자리 및 자산형성 사업예산(2022년 예산 기준) ····· 117
| 표 3-14 |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 예산(2022년 예산 기준) ····· 117
| 표 3-15 | 중앙부처의 청년일자리사업 특성 ····· 118

| 표 3-16 | 중앙부처의 청년일자리사업 현황(2024년 10월 기준) ····· 119
| 표 3-17 | 지역청년 지원 관련정책의 한계 ····· 123
| 표 4-1 | 서울광역청년센터 사업 현황(24년 9월 기준) ····· 129
| 표 4-2 | 서울청년센터 사업 현황(24년 9월 기준) ····· 130
| 표 4-3 | 지역부흥협력대 대원 및 지자체 수 ····· 152
| 표 5-1 | 청년 지원 관련 제도 및 내용 ····· 180
| 표 5-2 | 현행 관련 법률과 조례상 청년의 범위(2024년 기준) ····· 201
| 표 5-3 | 관련 법률상 핵심 개념 및 용어 ····· 202
| 표 5-4 | (가칭)지역청년지원법 장별 편제안 ····· 207

그림 목차

| 그림 2-1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청년 인구의 이동 추이(1995~2023) ····· 45
| 그림 2-2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 이동 추이(1995~2023) ····· 46
| 그림 2-3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 추이(1995~2023) ····· 47
| 그림 3-1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98
| 그림 3-2 |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의 3대 방향 ····· 100
| 그림 3-3 |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2022.10) ····· 100
| 그림 3-4 | 청년정책 추진계획(2024.3) ····· 101
| 그림 3-5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조직도 ····· 103
| 그림 3-6 | 17개 시도의 광역청년플랫폼 ····· 103
| 그림 3-7 |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 112
| 그림 4-1 | 서울청년센터: 광역센터 및 자치구 센터 ····· 128
| 그림 4-2 | 서울본청 미래청년기획관 조직도 ····· 130
| 그림 4-3 | 서울청년센터 추진체계 ····· 131
| 그림 4-4 | 청년취업사관학교 핵심 키워드 ····· 133
| 그림 4-5 |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환경 ····· 134
| 그림 4-6 |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과정 ····· 135
| 그림 4-7 | 청년취업사관학교 지원 프로그램 ····· 136
| 그림 4-8 | 미국 포틀랜드 ADX ····· 139
| 그림 4-9 | 미국 포틀랜드 메이드히어(MadeHere) PDX ····· 139
| 그림 4-10 | 경북 사회적경제 기업의 연령대별 고용인원 및 연도별 청년고용 증가율 ·· 141
| 그림 4-11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체계 ····· 143
| 그림 4-12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사업참여현황 ····· 144
| 그림 4-13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만족도 조사(2022년) ····· 144
| 그림 4-14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예상매출액 ····· 145
| 그림 4-15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청년 간담회 의견 ····· 145
| 그림 4-16 |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추진내용 ····· 147

| 그림 4-17 |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참여자 인터뷰 ····· 148
| 그림 4-18 | 지역부흥협력대 활동사례 ····· 150
| 그림 4-19 | 지역부흥협력대 지원 홈페이지 ····· 151
| 그림 4-20 | 지역부흥협력대 실태조사 ····· 153
| 그림 4-21 | 하동군 청년(마을)협력가 ····· 154
| 그림 4-22 | 하동군 청년(마을)협력가 홍보영상: “나는 마을로 출근한다” ····· 157
| 그림 4-23 |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 지원내용 ····· 159
| 그림 4-24 |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성공사례 ‘화수헌’ ····· 161
| 그림 4-25 | 서울-지방 상생 청년교류사업: 넥스트로컬 ····· 162
| 그림 4-26 | 넥스트로컬 활동지역 ····· 163
| 그림 4-27 | 서울 넥스트로컬 사업과정 ····· 164
| 그림 4-28 | 서울 넥스트로컬 사업유형 ····· 165
| 그림 4-29 | 서울 넥스트로컬 6기 발대식 ····· 166
| 그림 4-30 |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 169
| 그림 4-31 | 지역활력타운 부처 간 협업체계 ····· 170
| 그림 4-32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지원대상 ····· 171
| 그림 4-33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추진체계 ····· 173
| 그림 4-34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지원가능지역 현황 ····· 174
| 그림 5-1 | 지역청년 지원정책의 추진방향 ····· 188
| 그림 5-2 | 청년혁신복합공간 개념도(예시) ····· 189
| 그림 5-3 | 리빙랩 기반 청년이주 통합플랫폼(예시) ····· 191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01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미래를 이끌어나갈 핵심주체인 청년의 도약과 성장 중요

❍ '청년'이란 「청년고용법」에서는 19~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지만 「청년기본법」상에서는 19~34세 미만인 사람, 농어촌의 지역소멸 여건을 고려하여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서는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주로 20~30대의 젊은 세대를 일컫는 청년세대는 전체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기이고, 사회적으로는 인생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시기이며, 삶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임
-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세대인 청년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튼튼한 역량을 점차 보유해 나갈 때 우리 사회도 지속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음

❍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체인 청년층의 도약과 성장은 곧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잠재적인 성장률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

- 청년실업은 청년 개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훼손시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한국경제연구원, 2021)
  - 청년실업률이 1%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가 낮아지고, 잠재성장률은 0.21% 낮아져 한경연은 이를 두고, "높은 청년실업은 청년들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즉 '업무에 의한 학습'(learning-by-doing)[1] 기회를 감소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훼손하고,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분석(한국경제연구원, 2021)

□ 저성장 시대, 청년의 삶은 치열해지는 반면 '쉬었음' 인구는 증가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高 현상 장기화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청년층의 삶은 더욱 치열해지는 경향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기술혁신과 자동화 등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사무직과 생산직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산업이 성숙화되어 대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및 경력직 선호, 교육 동질화 등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제약(행정안전부, 2023)

○ 지금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년들은 미래를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개인이 미래를 바꾸거나 내가 바라는 미래가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음

- 국회미래연구원이 '22년 수행한 미래정책의 국민선호연구 결과 미래에 대한 낙관, 참여, 기대에 20대는 6.5%, 30대는 10%만 동의하여 40대가 21.9%, 50대가 24.5%, 60대가 37.1% 동의한 것과 대조적임

○ 2024년 기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15~29세)은 39만 8천명으로 2023년에 비해 1만3천명이 증가하여 전체 청년인구는 감소했지만 비중(4.6%에서 4.9%)은 더 증가했고, 전체 구직단념자[2] 중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1.1%

- '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그냥 쉰다'라고 답한 경우(통계청)로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과 취업 의사가 있어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포함[3]

---

1) '7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Kenneth Arrow)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장 분석에 사용되기 시작(한국경제연구원, 2021)

2)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을 원하고 취업할 수 있었으나 임금수준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취업을 단념한 구직 경험자들을 말함(통계청)

❍ ‘쉬었음’ 청년인구는 이직자들도 있지만 적성 불일치나 ‘쉬었음’ 기간의 장기화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가 상당수

-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3포+내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 7포(5포+꿈, 희망 포기)를 넘어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30대를 의미하는 ‘N포 세대’,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등의 용어가 새롭게 생겨남

□ 비수도권 청년의 유출 및 지역청년 삶 여건의 지역간 격차 확대

❍ 게다가 대부분의 청년인구는 고학력이지만 특히, 지역에는 이들이 만족할만한 보수와 근로환경을 가진 일자리는 부족하여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인구가 커지고 있는 추세

-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인구의 비율은 2000년 48.7%였으나 2004년 50.2%로 비수도권을 역전하기 시작했고, 2010년 52.4%, 2020년 54.5%, 2023년 55.8%로 꾸준히 증가

❍ 지역의 핵심적인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청년인구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을 하니 지역의 인적역량은 취약해지고 인력을 구할 수 없다 보니 지역기업은 유출되어 지역의 악순환 발생(박진경·김도형, 2020)

- 대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유출로 인한 청년인구 감소 등은 지역사회 인적자원 부족과 활력저하, 자율적 문제해결 역량 감소,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공동체 역량을 약화시켜 지방소멸 위기 가중

❍ 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 유입된 청년들도 집값 상승 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어들고 고물가로 생활비 증가, 경쟁 심화 등으로 만족도 저하

- 청년의 우울감과 좌절감은 7대 광역시 중에서 인천이 1위, 서울은 2위(국회미래연구원, 2023)

3) 2024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11만 3천명으로 전체 5명 중 1명에 해당(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백수'…외환위기 수준 악화, 연합뉴스 2024년 10월 1일자)

□ 그동안의 꾸준한 청년정책 추진에도 청년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

❍ 이에 정부는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12)을 수립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권리 등 분야별로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역대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청년정책을 반영했으며, 희망·공정·참여의 3대 추진방향 하에서 청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마련(관계부처 합동, 2022.10)
- 현행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2024년 3월 청년정책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2024.3) 하에서 2024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범정부 청년정책을 총괄하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실(1실 2관 4과 33명)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전국 공통의 혜택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한계 노정

❍ 또한 2000년대 이후 청년실업과 고용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됨에 따라서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해오고 있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
- 2023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내놓으며 청년의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청년인구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의 한계로 '쉬었음' 청년인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지방시대를 향한 균형발전과 지역청년정책 연계 추진 필요**

❍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와 만족도는 여전히 부족

- 2022년 상반기 기준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4]는 청년층(15~29세)이 25.1로 全 세대 중에서 월등하게 높아서 1위(한국경제인협회, 2022)
- 미래세대인 청년이 느끼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 2022년 11월부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각 장관실 소속의 청년보좌역을 설치하고, 청년세대의 입장에서 청년들의 의견과 인식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 현재 24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이 운영되고 있음
  - 청년보좌역은 각 중앙부처별 2030 자문단의 단장 역할 담당

❍ 청년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청년들이 바라는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① 일자리(97.4%) ②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95.7%) ③ 소득과 자산(93.7%)(청년삶 실태조사, 2023.3)

❍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유출을 저지하고, 지역과 청년이 함께 안정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필요

-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역에서는 인적자원이 취약해져 지방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과다 경쟁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들이 동시에 어려움에 직면

4)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rthur Okun)이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경제고통지수(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하여 산출)를 재구성하여 연령대별 체감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산하여 산출(한경협, 2022)하는데, 15~29세가 1위로 25.1, 60~69세가 2위로 16.1, 30~39세가 3위로 14.4로 나타나 1위와 2위의 격차가 매우 큼

2. 연구목적

□ 지역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한 관련 제도의 한계 검토

❍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인구의 학업, 취업, 창업 등 일자리 및 고용을 지원하는 법률, 청년의 주거, 복지, 참여 등 삶의 기본권을 지원하는 법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역청년을 지원하는 법률 등 중앙부처의 지역청년 지원과 관련되는 법·제도 분석

- 국무조정실 소관의 「청년기본법」, 고용노동부 소관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 역대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희망, 공정, 참여의 3대 방향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기조와 청년정책 추진계획(2022.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2023.3),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2024.3) 등 역대 정부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 검토

-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부문별로 추진 중인 청년 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한계점, 부처별 관련 법률의 미비점 등 검토

□ 지역청년 지원 정책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청년 지원 정책틀 마련

❍ 외지청년의 지역유입과 정착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외지청년이 지역청년과 함께 스스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경북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사례 분석

- 지역이 청년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거나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사례 위주

❍ 일본 총무성에서 2009년 이후부터 청년인구의 지방으로의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부흥협력대(지역 오코시다이) 등 일본의 인재교류와 관련되는 정책사례 분석

-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대도시권에서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례 등

❍ 시대전환기 청년의 삶의 태도나 선호도를 반영하여 지역의 청년거점복합공간을 조성하거나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되는 중앙과 지방의 정책사례 분석 등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책교류, 도시청년의 지역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 지역활력타운 등 다부처 협업사업 등을 검토하여 지역청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틀 마련 필요

□ 지역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청년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지역청년을 지원하는 종합대책 수립 필요

- 청년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청년 지원 정책틀 마련

❍ 지역청년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수도권과의 교류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은 (가칭)지역청년 지원법 제정(안) 마련

- 지역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동시에 청년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 법안 마련, 특례 제안, 추진체계 정비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청년의 범위

❍ 현행 법률상 청년은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 34세 미만인 사람을,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서는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통계청에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

❍ 시도별로는 조례 상에서 서울, 울산, 세종, 경기도는 청년의 연령을 15~34세로, 충북과 경북은 15~39세로, 부산, 강원, 충남은 18~34세로, 전북과 전남은 18~39세로, 경남과 제주는 19~34세로, 나머지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19~39세로 각기 다르게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률과 시도의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15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정의
  - 법률마다 청년의 범위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시간적·공간적 범위

❍ 청년세대의 특성과 청년의 계층별, 부문별 삶의 여건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자료의 기준년도는 2023년임
- 2023년의 기준년도 자료를 가용할 수 없을 경우 2022년 및 2021년 등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의 특성을 분석하지만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비교
- 17개 광역자치단체나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청년 특성 자료를 가용할 수 있는 경우 지역특성을 함께 분석

2. 연구방법

❍ 청년의 특성 및 지역청년의 실태 및 애로사항과 관련되는 문헌조사
- 국책연구기관과 시도연구원 등 청년인구의 사회·경제 실태조사, 통계청의 청년고용동향, 국민 삶의 질 등 최근 청년인구의 실태 및 문제점 대응 이슈와 관련되는 연구보고서 및 선행연구 검토
- 저성장 세대, 고립청년 증가, 청년의 선호도 등 청년의 특성과 관련되는 연구보고서 및 선행연구 검토

❍ 지역청년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관련 문헌조사
- 청년기본법(국무조정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고용노동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행정안전부) 등 관련 법률 조사
- 2024년 3월에 발표한 「청년정책 추진계획」과 2024년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청년지원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문헌조사

❍ 기존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한 지역청년 관련 기초자료 수집, 국내외 정책사례 조사
- 일본의 총무성을 중심으로 도시청년과 지역청년의 교류, 지역청년 인재 양성 등 기존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지역청년 지원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집중 시정, 청년과 지역의 동반성장 및 활력 촉진, 청년거점복합공간 조성 등 지역청년 지원에 적합한 정책사례 조사

❍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 개최를 통한 브레인스토밍
- 지역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자문회의, 워크숍 등 개최, 관련 사업 조사 및 대응전략 논의
- (가칭)지역청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률 자문 및 관련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법안의 실효성 제고

제 2 장
지역청년의 특성 및 실태분석

제1절 청년세대의 특성
제2절 청년의 부문별 삶의 여건 분석
제3절 지역청년의 여건 및 문제점 분석
제4절 시사점

02 지역청년의 특성 및 실태분석

제1절 청년세대의 특성

1. 청년의 의미

□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의 의미

○ 청년기는 생애주기에서 중·장년기로 이행하는 중요한 과도기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임

- 청소년기에 시작된 자아 탐색이 본격화되며,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 목표, 가치관 등을 구체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놓여 있음
- 동시에, 가정으로부터의 경제적·심리적 독립을 추구하며, 가족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강화하는 단계에 진입함

○ 직업 선택, 결혼, 자녀 양육 등 개인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구체화해 나감

- 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되며, 친구, 동료,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시기이기도 함

□ 코호트별 청년기 특성

○ 한국에서 세대는 크게 '베이비붐 세대', '386 세대', 'X 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세대는 태어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보임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는 1974~1997년 청년기를 보내며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 속에서 안정적인 고용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강했던 시기를 경험함

- 386 세대(1964~1970년 출생)는 1983~2004년 청년기에 민주화 운동과 사회 변화를 경험하며 사회적 정의와 참여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
- X 세대(1970~1980년 출생)은 1989~2014년 청년기를 겪으며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화를 경험, 개인주의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함
- 밀레니얼 세대(Y 세대)(1981~1996년 출생)는 2000~2030년 청년기를 보내며 저성장 시대의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자기실현과 유연한 고용을 중시하며 새로운 생활 방식을 형성하고 있음

| 표 2-1 | 코호트별 청년기 특성

세대	출생 시기	청년기	특성
베이비붐 세대	1955 ~1963년	1974~1997년	•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시기를 경험한 세대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강했던 시기 • 주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 사회 진출함
386세대	1960년대 (1964 ~1970년)	1983~2004년	• 민주화 운동과 사회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사회적 정의와 참여 의식을 중시함 •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사회 진출함
X세대	1970 ~1980년	1989~2014년	•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화를 경험한 세대로, 개인주의와 자율성을 중시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사회에 진입함
밀레니얼 세대 (Y세대)	1981 ~1996년	2000~2030년	• 저성장 시대와 경제적 불안정을 겪으면서도 자기실현과 여가를 중시하며, 유연한 고용과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임

자료: 박진경·김도형(2020)의 [표 2-2] 재구성.

2.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변화

❍ 밀레니얼 세대(Y세대, 1981~1996년 출생)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형성하고 있음
- 이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실현을 중시하며,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과 주거 문제, 디지털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음

□ 탈물질주의 가치관과 삶의 질, 경험, 다양성 중시

❍ 한국은 현재 탈산업화와 탈물질주의 사회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쟁과 성장보다 개성, 다양성, 심미성, 차별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전정환, 2019)되고 있음

- 경제가 급속히 성장했던 시기에는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사회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나, 탈물질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개인들이 각자의 정체성과 세계를 만들어가는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

❍ 청년세대는 경제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 소유보다는 경험, 효율성보다는 다양성, 경쟁보다는 연대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경향을 반영함(조성철 외, 2019)
- 예를 들어,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물질적 소비에 집착하기보다는 감성적인 소비활동과 이색적인 문화경험을 선호하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지역성과 고유성을 중시하는 소비 행태를 보임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밀레니얼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로, 2014년 이후 20~30대 중심으로 확산되었음

-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개인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일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김동영, 2018)

❍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모습이 두드러짐(조성철 외, 2019)

- 밀레니얼 세대는 독립 상점, 공방, 편집숍과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의 소비를 중시하고, 지역성과 고유성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이들은 탈물질주의적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함으로써, 물질적 소유보다는 관계와 행위에 집중하고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냄

□ 저성장 시대, 노동 가치관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 밀레니얼 세대는 저성장 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로, 경제적 불안정성과 고용 시장의 변화 속에서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이들은 과거의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 환경을 수용하게 되었음
- 저성장 시대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수가 줄어들었음(김선기 외, 2012)
-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전통적인 고용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대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탐색하게 되었음

❍ 밀레니얼 세대 중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자유노동(free labor)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조성철 외, 2019)
-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프리랜서나 긱 경제(Gig economy)에 참여하고 있음
  • 긱 경제(Gig economy)는 전통적인 고용 형태에서 벗어나 프리랜서나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는 경제 모델로, 개인이 특정 프로젝트나 단기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의미함
- 청년들은 디지털 및 온라인 기술에 능숙해 원격근무(remote work)를 통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의 다양한 요소(육아, 학습, 취미 등)를 직무와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

❍ 밀레니얼 세대 중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재택 및 원격근무를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원격근무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인재를 채용하고 있음
  •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재택·원격근무를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함
- 이들은 고정된 직장 없이 세계를 여행하며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고용 안정성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의하는 모습을 보여줌

❍ 종신고용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최근 청년세대는 기업에 입사하자마자 퇴사를 계획하며(임홍택, 2018), 더 나은 회사로의 이직이나 창업, 자아 실현을 위해 퇴사를 준비함

- 최근의 경제 불황과 일자리 시장의 불안정성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고용을 추구하기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험을 쌓으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
-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와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경향이 강하여, 기업이 개인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퇴사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더 나은 직장을 찾거나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려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퇴준생'이라는 신조어의 등장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음

❍ 한편, 대다수의 청년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자 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기 계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

- 비록 긱 경제와 디지털 노마드 방식이 새로운 노동 형태로 부상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를 보임
- 이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현재에도, 고정된 월급과 안정적인 직장 환경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일자리가 여전히 매력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임
-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첫 취업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청년들은 이러한 경쟁 환경 속에서 취업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인턴십 경험, 추가 학위 등을 통해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가족형성에 대한 인식 변화

❍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기대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음(유효송, 2024)

- 청년들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있으며, 미혼 남성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1998년 75.5%에서 2022년 39.8%로 급감했음

-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모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의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30세대는 가족형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있음
- 2030 세대가 직면한 입시 및 취직 경쟁은 그들의 결혼 및 출산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가족의 정서적 친밀성이 낮아진 것도 가족 형성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IMF 사태 이후 가족 간의 정서적 연결이 약해진 것과 관련이 있음
- 청년들은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며, 가족형성보다는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젊은 세대의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으며, 맞벌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이 선호되고 있음(유효송, 2024)
- 남성과 여성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 지향에서 맞벌이 지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해도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불안감과 여성의 커리어 지향 향상에 기인함

❍ 한편,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와의 동거가 주거 비용 절감과 가사 부담 경감 등의 이유로 선택되고 있음(이창준, 2023)
- 한국 청년층의 10명 중 8명이 미혼 상태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미혼 청년 인구는 783만 7,000명으로, 일반 가구에서 거주하는 청년의 81.5%를 차지함
- 미혼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도 덩달아 늘어났으며,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비중은 2000년 46.2%에서 2020년 55.3%로 증가함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연결 방식 변화**

❍ 청년세대는 SNS를 통해 느슨한 사회적 연결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음(박진경·김도형, 2020)
- 전통적인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약화된 반면, 개인과 사회 간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
- 고독하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대신, 청년들은 SNS를 활용하여 자신의 일상과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음
- 청년들은 일상에서 평범한 삶을 누리며, 작지만 의미 있는 공헌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청년들은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통해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사회적 연결을 추구하고 있음(박진경·김도형, 2020)
- 코워킹스페이스, 코리빙 하우스, 독립서점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함으로써 창의적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청년들은 지역신문이나 방송 대신 로컬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콘텐츠로 구현하고 확산시키고 있음

3. 청년세대의 변화가 갖는 사회적 함의

❍ 최근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변화는 사회 전반에 중요한 함의를 지님
-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지가 감소하는 현상은 한국 사회가 조만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가족 형성을 기피하는 경향은 출산율 감소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 사회 복지, 그리고 국가 정책에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우려됨

❍ 청년세대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동시에 프리랜서 및 경제에 참여하는 경향은 노동시장의 다변화와 유연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고용 모델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며, 기업은 인재 유치를 위해 고용 조건 및 근무 환경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청년들이 경제적 불안정성 속에서 개인의 직무와 회사에서의 경험을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 기업은 직원의 자아 실현을 지원하고,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삶의 질을 중시하는 태도는 소비 방식과 생활 패턴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청년들이 경험과 관계를 중시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연대감과 사회적 연결이 재정의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자본의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코워킹스페이스 및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청년들의 창의적인 관계 형성은 사회적 자본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사회 내의 협업을 증진시킬 수 있음

❍ 디지털 기술과 SNS의 발전은 청년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도록 촉진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며,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전통적인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형식의 협업과 소통이 중시되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청년세대의 전통적 가치관 변화는 맞벌이와 같은 새로운 가족 형태의 선호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불안감과 변화하는 성역할 인식에 기인하며, 이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와 정책에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 맞벌이를 지향하는 경향은 가족 내의 역할 분담을 재정의하며, 성평등 및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나타냄

제2절 청년의 부문별 삶의 여건 분석

❍ 국무조정실의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경제’, ‘주거’, ‘교육 및 학력’, ‘결혼 및 출산’, ‘여가’ 등 5개 부문에 대해서 청년의 삶의 여건을 분석함
-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는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만 19~34세 청년 대상 최초의 국가승인통계로, 2022년 첫 조사가 이뤄짐

1. 경제 부문

□ 고용 형태

❍ 청년층의 전체 인구는 10,077,124명으로, 이 중 약 70%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 비중이 높음
- 경제활동인구는 7,296,960명으로 전체 청년층의 72.4%를 차지하고 있고 취업자는 6,938,254명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대다수가 취업 상태

❍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청년층의 27.6%를 차지해 학업, 육아, 군복무 등 다양한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이 상당수임
- 비경제활동인구는 2,780,164명으로, 이는 전체 청년층의 27.6%에 해당
- 실업자는 358,706명으로, 전체 청년층 중 3.6%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2-2 |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현황(2022)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합계
		취업자	실업자		
수(명)	7,296,960	6,938,254	358,706	2,780,164	10,077,124
비중(%)	72.4	68.9	3.6	27.6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청년층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78.9%로, 전체 청년 취업자 6,938,254명 중 5,471,409명이 상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청년층 중 13.6%가 일정 기간만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음

❍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로 842,577명(12.1%)이 일하고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로는 107,161명(1.5%)이 일하고 있음
  - 이러한 비중은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층이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의 7.4%로, 청년층 중 일부는 자영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학업과 병행해 임시 또는 일용근로를 하거나 자영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특징을 보임

| 표 2-3 | 청년층 종사상지위 현황(2022)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합계
수(명)	5,471,409	842,577	107,161	181,743	335,364	6,938,254
비중(%)	78.9	12.1	1.5	2.6	4.8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청년층의 고용 계약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청년이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의 68.7%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 6,421,146명 중 약 68.7%에 해당하는 4,410,880명이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일하고 있음

❍ 반면, 계약기간이 정해진 청년층은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의 31.3%를 차지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의 14.8%를 차지하며, 주로 단기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층으로 학업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일하는 경우가 많음
- 고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16.5%를 차지하는데, 이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직면한 청년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함

❍ 이러한 고용 계약기간 현황은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단기계약과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표 2-4 | 청년층 고용 계약기간 현황(2022)

구분	1달 미만	1달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으로 정함	정하지 않았음	합계
수(명)	107,161	842,577	1,060,528	4,410,880	6,421,146
비중(%)	1.7	13.1	16.5	68.7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청년층 일자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청년 취업자 6,938,254명 중 96.2%에 해당하는 6,671,777명이 하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둘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층의 비율은 전체의 3.8%로 확인됨
- 복수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은 경제적 이유나 직업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일자리 수를 늘리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청년층의 고용 시장이 단일 일자리에서 복수 일자리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일자리에 종사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음

| 표 2-5 | 청년층 복수 일자리 현황(2022)

구분	단일 일자리	복수 일자리			합계
			2개	3개	
수(명)	6,671,777	266,477	239,611	26,866	6,938,254
비중(%)	96.2	3.8	3.5	0.4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소득 수준

❍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의 합계로 구성된 청년 개인의 평균 연간소득은 총 2,753만 원으로 나타났음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94.7%(2,607만 원)를 차지하며, 청년층의 주요 소득원이 근로 및 사업소득임을 보여줌
- 재산소득이 전체 개인 연간소득의 0.9%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청년층이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임

| 표 2-6 | 청년 개인 평균 연간소득 현황(2022)

구분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합계
금액(만 원)	2,607	24	90	32	2,753
비중(%)	94.7	0.9	3.3	1.2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자산 형성

❍ 학자금 부채,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주택 관련 부채, 생활비 부채 등으로 구성된 청년 개인의 평균 부채는 총 949만 원으로 나타났음
- 이 중에서 주택 관련 부채가 823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86.7%를 차지하여 청년층의 평균 부채 구조는 주로 주택 관련 부채에 집중되어 있음

- 한편, 청년층의 학자금 부채는 58만 원(6.1%),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는 36만 원(3.8%), 생활비 부채는 32만 원(3.4%)으로, 전체 부채 중 교육 비용, 자산 투자 및 생활비를 위한 부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표 2-7 | 청년 개인 평균 부채 현황(2022)

구분	학자금 부채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주택 관련 부채	생활비 부채	합계
금액(만 원)	58	36	823	32	949
비중(%)	6.1	3.8	86.7	3.4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청년층의 평균 재산은 총 2,459만 원으로 나타나며, 이 중 금융재산이 1,415만 원(57.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들이 금융 자산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줌

- 주식은 259만 원(10.5%), 가상자산은 25만 원(1.0%)으로, 청년층이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지만,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기타 부동산 및 재산은 760만 원(30.9%)으로, 이는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음

| 표 2-8 | 청년 개인 평균 재산 현황(2022)

구분	금융재산	주식	가상자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	합계
금액(만 원)	1,415	259	25	760	2,459
비중(%)	57.6	10.5	1.0	30.9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삶에서 일자리, 소득, 자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

❍ 청년층이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매우 중요함'과 '중요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97.4%에 달하여,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해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에 대해서도 청년층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매우 중요함'과 '중요함'에 응답한 비율이 93.7%로 나타났음

- 이는 청년층이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와 소득과 자산의 확보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

| 표 2-9 | 청년 삶에서 일자리, 소득, 자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 현황(2022)

부문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내가 원하는 일자리	수(명)	23,303	242,662	5,126,360	4,684,798	10,077,124
	비중(%)	0.2	2.4	50.9	46.5	100.0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수(명)	36,269	590,534	5,446,519	4,003,802	10,077,124
	비중(%)	0.4	5.9	54.0	39.7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2. 주거 부문

□ 독립 생활 여부

❍ 청년층 가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구주)+미혼청년' 가구가 전체의 5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부모와 동거하며 독립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줌

❍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 주거 안정성 부족 등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부모와 동거하는 기혼 청년의 비율은 0.4%에 불과해, 결혼 후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 것으로 나타남

❍ ‘청년독거’ 가구는 22.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청년부부’ 가구는 7.2%, ‘청년+자녀’ 가구는 6.0%로 나타나, 결혼과 출산을 통해 자립한 청년 가구의 비중이 낮음을 시사함

❍ 이러한 청년 가구 유형의 분포는 청년층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어려움을 반영하며, 특히 주거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독립 생활을 유지하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임

| 표 2-10 | 청년 가구 유형 현황(2022)

구분	청년 독거	청년 부부	청년+ 자녀	부모 동거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부모 (가구주)+ 미혼청년	부모 (가구주)+ 기혼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합계
명(천 명)	2,282	729	608	360	350	5,370	45	332	10,077
비중(%)	22.6	7.2	6.0	3.6	3.5	53.3	0.4	3.3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가구주가 아닌 청년층의 경우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하기보다 부모의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가 아닌 청년층의 경우, ‘자가’ 비중이 74.3%로 가장 높아 대부분이 부모와 함께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11 | 청년 주거 점유 형태 현황(2022)

가구주 여부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무상 거주	일세	합계
가구주 아님	수(천 명)	4,822	1,104	465	17	9	75	-	6,491
	비중(%)	74.3	17.0	7.2	0.3	0.1	1.2	-	100.0
가구주	수(천 명)	802	1,060	1,447	91	56	129	1	3,586
	비중(%)	22.4	29.5	40.4	2.5	1.6	3.6	0.0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가구주인 청년층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차 형태로 독립 주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증금 있는 월세’가 4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독립한 청년층 중 상당수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세’ 거주자는 29.5%로 그 뒤를 이었으며, ‘자가’ 주택을 보유한 청년 가구주는 전체의 22.4%로 나타났음

□ 주거 비용

❍ 가구주가 아닌 청년의 생활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불과한데, 이는 가구주가 아닌 청년들이 부모나 다른 가구주와 함께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주거비 부담을 지고 있음을 나타냄
- 가구주가 아닌 청년층의 경우, 월세와 주거관리비를 합한 주거비는 평균 14만 원으로 총 생활비 238만 원의 6.0%를 차지함

❍ 가구주인 청년의 생활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9%로, 독립적으로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인 청년층의 경우, 주거비는 평균 10만 원으로 총 생활비 74만 원의 12.9%를 차지함

| 표 2-12 | 가구 생활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현황(2022)

가구주 여부	구분	월세	주거관리비	주거비 (월세+주거관리비)	총생활비
가구주 아님	금액(만 원)	2	12	14	238
	비율(%)	0.8	5.3	6.0	-
가구주	금액(만 원)	5	4	10	74
	비율(%)	7.4	5.4	12.9	-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주택 소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청년의 91.3%가 자가 주택 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청년층의 31.3%가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로 응답함
- 두 번째 이유는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로 나타났으며, 전체 청년층의 21.6%가 자가 주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장기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결과는 청년층이 주택 소유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와 자산 증식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자가 소유가 경제적 안전망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

| 표 2-13 | 청년 자가 주택 소유가 필요한 이유(2022)

구분	임대료 상승 압박이 없어서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내 집이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집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노후 보장을 위해서	기타	합계
수(천 명)	1,091	2,878	1,987	1,235	1,069	880	61	9,202
비중(%)	11.9	31.3	21.6	13.4	11.6	9.6	0.7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3. 교육 및 학력 부문

□ 최종 학력

❍ 청년층의 학력 분포를 보면, 청년층의 다수가 고등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화가 뚜렷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이 전체의 6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대학 재학/휴학 중인 청년은 전체의 24.0%에 달하며, 이들은 학업을 이어가거나 잠시 중단한 상태로 고졸 이하 학력보다는 고등교육을 받는 중인 청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은 전체의 14.6%로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

| 표 2-14 | 청년 학력 현황(2022)

구분	고졸 이하	대학 재학/휴학	대학 졸업 이상	합계
수(명)	1,474,169	2,413,993	6,188,962	10,077,124
비중(%)	14.6	24.0	61.4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4. 결혼 및 출산 부문

□ 결혼 여부 및 결혼에 대한 인식

❍ 청년층의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미혼 청년이 전체의 8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의 청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줌

❍ 유배우자, 즉 결혼한 청년은 전체의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미혼 청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로, 청년층에서는 결혼보다 미혼 상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남

❍ 결혼한 청년 비율이 낮은 것은 경제적 부담, 학업과 경력 관리 등의 이유로 결혼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될 수 있음

| 표 2-15 | 청년 혼인 상태 현황(2022)

구분	유배우자	미혼	이혼	별거	사별	합계
수(명)	1,764,410	8,238,912	51,600	18,541	3,661	10,077,124
비중(%)	17.5	81.8	0.5	0.2	0.0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청년층의 향후 결혼 계획을 살펴보면, 결혼 의향이 있는 청년이 전체의 6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결혼 의향이 없는 청년은 20.6%로 나타나며, 이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나 개인적인 가치관 변화로 인해 결혼을 고려하지 않는 청년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보여줌

❍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계획하고 있지만, 약 20% 이상이 결혼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제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표 2-16 | 청년 향후 결혼 계획 현황(2022)

구분	비해당(유배우)	의향 있음	의향 없음	합계
수(명)	1,769,746	6,231,671	2,075,707	10,077,124
비중(%)	17.6	61.8	20.6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17 | 청년 삶에서 연애 및 결혼 중요성 인식 현황(2022)

부문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연애	수(명)	329,856	1,594,764	6,284,977	1,867,527	10,077,124
	비중(%)	3.3	15.8	62.4	18.5	100.0
결혼	수(명)	521,252	2,074,712	4,737,229	2,743,932	10,077,124
	비중(%)	5.2	20.6	47.0	27.2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연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은 전체의 80.9%('중요함' 62.4%와 '매우 중요함' 18.5%를 합한 값)에 달하며, 대부분의 청년들이 삶에서 연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
  - 전체 청년의 74.2%('중요함' 47.0%와 '매우 중요함' 27.2%를 합한 값)가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역시 많은 청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연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남

□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

❍ 자녀 출산과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층은 전체의 69.3%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이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74.2%)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출산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며, 청년층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반영함

| 표 2-18 | 청년 삶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 중요성 인식 현황(2022)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수(명)	726,463	2,374,792	4,490,754	2,485,115	10,077,124
비중(%)	7.2	23.6	44.6	24.7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실제로 배우자가 있는 청년층 중 자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2.7%에 달함

- 배우자가 없는 청년층에서는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64.5%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청년층보다 자녀 출산 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 출산 의향이 더 낮은 이유는 결혼 후 양육 과정에서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독신 청년들은 결혼 전,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해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
- 결혼 후에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시간, 에너지 등의 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러한 부담이 자녀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표 2-19 | 청년 향후 자녀 출산 의향 현황(2022)

배우자 여부	구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합계
배우자 있음	수(명)	1,011,501	752,909	1,764,410
	비중(%)	57.3	42.7	100.0
배우자 없음	수(명)	5,363,861	2,948,853	8,312,714
	비중(%)	64.5	35.5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5. 여가 부문

□ 여가·문화 활동

❍ 각 활동경험에 대해 '꼭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24.3%,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은 30.5%,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 동호회 활동은 15.0%,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은 44.0%로 나타남

- 청년들이 문화 예술, 스포츠, 동호회 활동, 여행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높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행을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0%로 가장 높아, 청년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휴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음

❍ 실제로,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청년은 4,074,724명(40.4%)으로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가 낮은 편으로 나타남

-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에 대해 전체 청년의 46.2%가 참여했다고 응답하여 스포츠 활동도 청년층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나 동호회 활동에 대해 참여한 청년은 2,477,444명(2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을 경험한 청년은 7,050,499명(70.0%)으로, 절반 이상이 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청년들이 여행을 통한 휴식과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표 2-20 | 청년 활동경험 필요 여부에 대한 인식(2022)

기준	구분	꼭 필요함	하면 좋음	할 필요 없음	합계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수(명)	2,449,686	6,773,675	853,763	10,077,124
	비중(%)	24.3	67.2	8.5	100.0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수(명)	3,069,796	6,380,811	626,518	10,077,124
	비중(%)	30.5	63.3	6.2	100.0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수(명)	1,509,094	6,590,517	1,977,513	10,077,124
	비중(%)	15.0	65.4	19.6	100.0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	수(명)	4,434,250	5,365,469	277,405	10,077,124
	비중(%)	44.0	53.2	2.8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21 | 청년 지난 1년간 활동경험 여부(2022)

기준	구분	했음	안(못)했음	합계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수(명)	4,074,724	6,002,400	10,077,124
	비중(%)	40.4	59.6	100.0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수(명)	4,652,958	5,424,166	10,077,124
	비중(%)	46.2	53.8	100.0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수(명)	2,477,444	7,599,680	10,077,124
	비중(%)	24.6	75.4	100.0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	수(명)	7,050,499	3,026,625	10,077,124
	비중(%)	70.0	30.0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시간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남
- 문화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간 부족'이 46.5%, '경제적 부담'이 23.5%, '할 필요가 없어서'가 16.0%로 나타남
- 스포츠 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시간 부족'이 48.1%, '경제적 부담'이 22.5%, '할 필요가 없어서'가 15.6%로 나타남
-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15.9%, '시간 부족'이 37.3%, '할 필요가 없어서'가 28.9%로 나타남
- 여행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시간 부족'이 49.0%, '경제적 부담'이 30.1%,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가 7.1%로 나타남

❍ 또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문화·여가 활동의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함

| 표 2-22 | 청년 지난 1년간 활동경험을 못한 이유(2022)

기준	구분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시간이 부족해서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공간, 지리적 문제로	관련 경험, 지식, 정보가 부족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합계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수(천명)	456	905	100	47	126	311	1,944
	비중(%)	23.5	46.5	5.1	2.4	6.5	16.0	100.0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수(천명)	436	935	147	49	73	304	1,944
	비중(%)	22.5	48.1	7.6	2.5	3.8	15.6	100.0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수(천명)	309	724	150	23	176	562	1,944
	비중(%)	15.9	37.3	7.7	1.2	9.1	28.9	100.0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	수(천명)	584	953	138	49	32	187	1,944
	비중(%)	30.1	49.0	7.1	2.5	1.7	9.6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제3절 지역청년의 여건 및 문제점 분석

1.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의 여건 비교·분석

○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비수도권 청년(지역청년)이 직면한 고유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함

○ 비수도권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들이 직면한 특수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함

1) 경제활동과 고용 형태

○ 수도권에 일자리가 다양하고 기회가 많지만, 고용의 질적 안정성에서는 다소 취약한 경향이 나타남

- 수도권 청년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74.5%로 비수도권(70.1%)보다 높지만, 상용근로자 비율은 78.6%로 비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임

○ 반면, 임시근로자 비율은 수도권이 12.4%로 비수도권(11.8%)보다 다소 높아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은 편임

| 표 2-23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종사상지위 현황(2022)

지역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합계
수도권	수(명)	2,976,256	470,975	75,696	91,973	172,173	3,787,073
	비중(%)	78.6	12.4	2.0	2.4	4.5	100.0
비수도권	수(명)	2,495,152	371,602	31,465	89,771	163,191	3,151,181
	비중(%)	79.2	11.8	1.0	2.8	5.2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수도권 청년 중 복수 일자리를 가진 비율은 5.2%로, 비수도권(2.2%)보다 높아 추가 소득을 위해 여러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비수도권 청년들은 복수 일자리 비율이 2.2%로 수도권보다 낮아, 주된 일자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표 2-24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복수 일자리 현황(2022)

지역	구분	단일 일자리	복수 일자리			합계
				2개	3개	
수도권	수(명)	3,588,693	198,380	177,548	20,832	3,787,073
	비중(%)	94.8	5.2	4.7	0.6	100.0
비수도권	수(명)	3,083,084	68,097	62,063	6,034	3,151,181
	비중(%)	97.8	2.2	2.0	0.2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2) 소득

❍ 수도권 청년의 연간 소득 중 근로 및 사업소득 비중은 95.1%로, 비수도권보다 근로 소득 의존도가 높고 재산소득 비중도 0.9%로 약간 높음

- 비수도권 청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비중이 수도권보다 낮은 반면, 사적 이전소득 비중이 높아 가족이나 기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2-25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개인 평균 연간소득 현황(2022)

지역	구분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합계
수도권	금액(만 원)	2,662	26	78	33	2,799
	비중(%)	95.1	0.9	2.8	1.2	100.0
비수도권	금액(만 원)	2,542	21	105	30	2,699
	비중(%)	94.2	0.8	3.9	1.1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비수도권 청년의 경우, 연간 소득 중 근로 및 사업소득 비중은 94.2%로 수도권보다 낮으며, 재산소득 비중도 0.8%로 낮음
- 대신 사적 이전소득 비중이 3.9%로 수도권보다 높아 가족이나 기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주거 점유 형태 및 부모 동거 현황

❍ 수도권 청년의 자가 보유 비율은 18.8%로 낮고,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비율이 50.1%로 가장 높아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임
-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수도권 청년의 부모와 동거 비율은 55.2%로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남
- 부모와의 동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 청년의 자아 정체성이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비수도권 청년의 자가 보유 비율은 22.9%, 전세 비율은 30.3%로 수도권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있음
-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51.1%로 수도권보다 낮아 독립적인 생활이 비교적 용이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청년은 높은 주거비로 인해 독립이 어려운 반면, 비수도권 청년은 주거비 부담이 낮아 독립적 생활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 표 2-26 |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가구주인 청년의 주거 점유 형태 현황(2022)

지역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무상 거주	일세	합계
수도권	수(천 명)	54	51	145	11	15	13	1	289
	비중(%)	18.8	17.6	50.1	3.6	5.2	4.3	0.3	100.0
비수도권	수(천 명)	478	632	844	44	9	77	-	2,084
	비중(%)	22.9	30.3	40.5	2.1	0.4	3.7	-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27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가구 유형 현황(2022)

지역	구분	청년 독거	청년 부부	청년+ 자녀	부모 동거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부모 (가구주) +미혼 청년	부모 (가구주) +기혼 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합계
수도권	명(천 명)	1,192	339	267	214	196	2,948	19	168	5,342
	비중(%)	22.3	6.3	5.0	4.0	3.7	55.2	0.4	3.1	100.0
비 수도권	명(천 명)	1,090	390	342	146	154	2,422	26	164	4,735
	비중(%)	23.0	8.2	7.2	3.1	3.3	51.1	0.5	3.5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4) 결혼 및 출산

❍ 수도권 청년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비교적 덜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 미혼 비율은 84.0%로 비수도권 청년(79.2%)보다 높아 결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음
-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함" 또는 "매우 중요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66.3%로, 비수도권보다 낮아 가족 중심 가치관이 비교적 약하게 나타남

❍ 반면, 비수도권 청년은 결혼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더 뚜렷하게 나타남

- 비수도권 청년은 미혼 비율이 79.2%로 수도권보다 낮아 결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함" 또는 "매우 중요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72.5%로 수도권보다 높아,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더 강하게 나타남

| 표 2-28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혼인 상태 현황(2022)

지역	구분	유배우자	미혼	이혼	별거	사별	합계
수도권	수(명)	813,477	4,490,338	25,931	12,731	-	5,342,477
	비중(%)	15.2	84.0	0.5	0.2	-	100.0
비수도권	수(명)	950,933	3,748,574	25,669	5,810	3,661	4,734,647
	비중(%)	20.1	79.2	0.5	0.1	0.1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29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삶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 중요성 인식 현황(2022)

지역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수도권	수(명)	475,953	1,325,005	2,223,026	1,318,492	5,342,477
	비중(%)	8.9	24.8	41.6	24.7	100.0
비수도권	수(명)	250,509	1,049,786	2,267,729	1,166,622	4,734,647
	비중(%)	5.3	22.2	47.9	24.6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5) 여가 활동

○ 수도권 청년들은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활동 기회의 영향을 받아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며, 여가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은 편임

- 수도권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은 43.7%로 비수도권(36.8%)보다 높아, 문화적 자원과 다양한 활동 기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또한, 정기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47.3%로 높고, 여가 활동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편임
- 수도권 청년의 71.6%가 2~3일 정도의 짧은 여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바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여가 기회를 통해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을 반영함

| 표 2-30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활동경험 필요 여부에 대한 인식(2022)

지역	기준	구분	꼭 필요함	하면 좋음	할 필요 없음	합계
수도권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수(명)	1,444,586	3,499,260	398,631	5,342,477
		비중(%)	27.0	65.5	7.5	100.0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수(명)	1,701,006	3,348,063	293,408	5,342,477
		비중(%)	31.8	62.7	5.5	100.0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수(명)	854,070	3,488,440	999,967	5,342,477
		비중(%)	16.0	65.3	18.7	100.0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	수(명)	2,458,518	2,744,634	139,325	5,342,477
		비중(%)	46.0	51.4	2.6	100.0
비수도권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수(명)	1,005,100	3,274,415	455,132	4,734,647
		비중(%)	21.2	69.2	9.6	100.0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수(명)	1,368,790	3,032,748	333,109	4,734,647
		비중(%)	28.9	64.1	7.0	100.0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수(명)	655,024	3,102,076	977,546	4,734,647
		비중(%)	13.8	65.5	20.6	100.0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	수(명)	1,975,731	2,620,835	138,080	4,734,647
		비중(%)	41.7	55.4	2.9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비수도권 청년들은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 참여율이 수도권에 비해 낮고, 여가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 비수도권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은 36.8%로 수도권(43.7%)보다 낮으며, 정기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율도 44.9%로 수도권 청년(47.3%)보다 낮은 수준임
- 비수도권 청년들은 여가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수도권 청년에 비해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남

| 표 2-31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 지난 1년간 활동경험 여부(2022)

지역	기준	구분	했음	안(못)했음	합계
수도권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수(명)	2,333,601	3,008,876	5,342,477
		비중(%)	43.7	56.3	100.0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수(명)	2,527,781	2,814,696	5,342,477
		비중(%)	47.3	52.7	100.0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수(명)	1,316,036	4,026,441	5,342,477
		비중(%)	24.6	75.4	100.0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	수(명)	3,824,524	1,517,953	5,342,477
		비중(%)	71.6	28.4	100.0
비수도권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수(명)	1,741,124	2,993,523	4,734,647
		비중(%)	36.8	63.2	100.0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수(명)	2,125,177	2,609,470	4,734,647
		비중(%)	44.9	55.1	100.0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수(명)	1,161,408	3,573,239	4,734,647
		비중(%)	24.5	75.5	100.0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	수(명)	3,225,975	1,508,672	4,734,647
		비중(%)	68.1	31.9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6) 청년인구 이동 규모 및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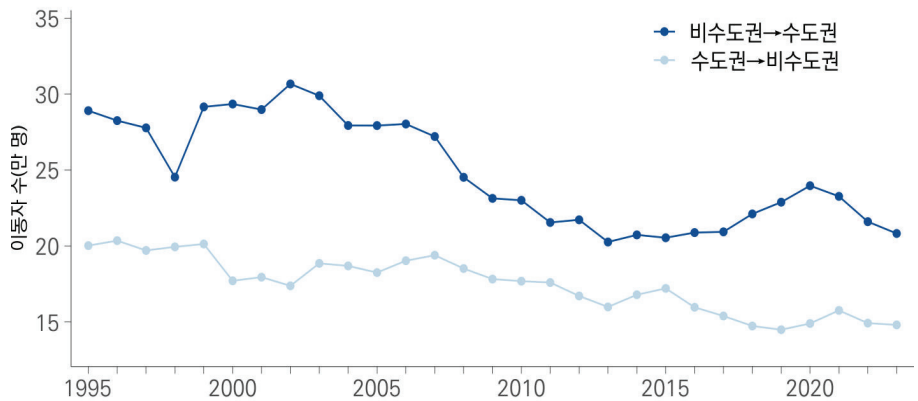
□ 청년인구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 추이

❍ 1995년부터 2023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보다 많았으며, 이는 청년층이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의 생활과 취업 기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자 수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자 수 간의 격차는 시기에 따라 변동을 보임

❍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더욱 활발해졌으나, 2010년대 들어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음

| 그림 2-1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청년 인구의 이동 추이(1995~2023)



주: 본 도표에서 청년은 만 20세에서 34세 사이의 인구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2015년 이후로는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남
- 2015년에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가 약 20만 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가 약 17만 명으로, 두 이동자 수 간의 격차가 비교적 작았으나, 이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자 수가 증가하면서 격차가 다시 확대되었음
- 2020년에는 약 23.9만 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이동자 수가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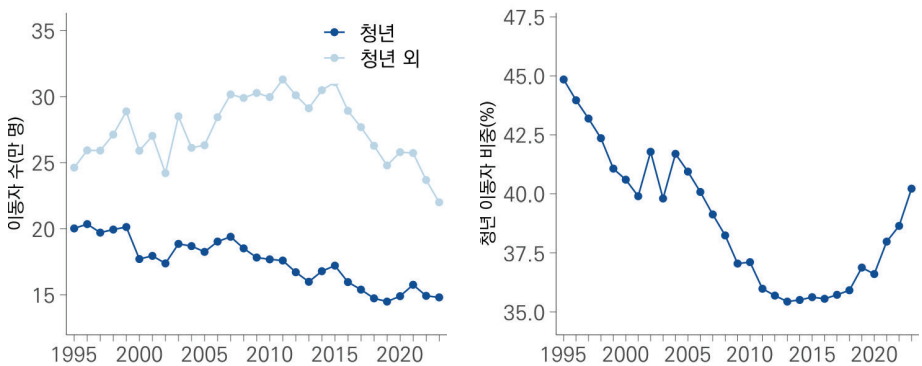
❍ 2020년 이후에는 격차가 다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수도권 유입이 우세함
- 2023년 기준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는 약 21만 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는 약 15만 명으로 나타남

❍ 1995년부터 2023년까지 청년 인구의 이동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전체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2020년 이후 청년 비중이 증가한 것은 청년 외 인구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급격히 감소한 데 비해, 청년 인구의 이동은 비교적 완만하게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됨

| 그림 2-2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 이동 추이(1995~2023)



주: 본 도표에서 청년은 만 20세에서 34세 사이의 인구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유입되었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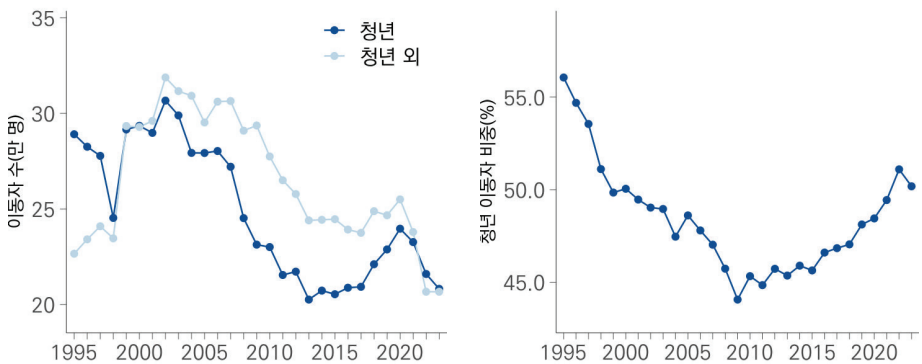
- 1995년부터 2023년까지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년 인구의 이동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특히,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수도권 유입이 이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

❍ 한편, 청년 외 인구의 이동자 수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청년층에 비해 완만하게 감소하며 특정 연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함

- 2015년의 청년 이동자 수는 약 21만 명에서 시작하여, 2020년에는 약 24만 명으로 증가함
- 청년 외 인구의 이동자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꾸준히 유지되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의 비중 또한 소폭 증가함

| 그림 2-3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 추이(1995~2023)



주: 본 도표에서 청년은 만 20세에서 34세 사이의 인구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2020년 이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20년 약 24만 명에 달했던 청년 이동자 수는 2023년에는 약 21만 명으로 줄어들었음
- 2020년 이후 청년 외 인구의 이동이 더 급격히 감소한 반면 청년층의 이동은 비교적 완만하게 줄어들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 비중이 증가함
- 이는 최근 들어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선호가 줄어들었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청년 포함 세대 이동 시 주요 세대구성

❍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만 19~34세)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구성에 따른 이동 규모와 이동 사유를 분석함

❍ 청년이 포함된 세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이 세대주, 자녀, 동거인, 형제자매, 기타 친척, 배우자, 손자녀 등의 역할로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더 활발한 세대 구성을 살펴보면, 청년이 세대주, 동거인, 형제자매, 기타 친척의 역할로 이동하는 경우와 청년 부부가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남

❍ 반면, 비수도권으로의 유입이 더 활발한 세대 구성을 보면, 청년이 자녀나 손자녀의 역할로 이동하는 경우와 부모와 청년 자녀가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주된 유형으로 나타남

| 표 2-32 | 청년 포함 세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동 규모(2023)

(단위: 세대)

세대구성	수도권 → 비수도권 이동 수	비수도권 → 수도권 이동 수
세대주(청년)	68,696	144,001
자녀(청년)	52,410	26,824
동거인(청년)	7,546	13,971
형제자매(청년)	2,956	9,127
기타친척(청년)	2,072	3,823
배우자(청년)	3,555	3,596
손자녀(청년)	2,136	1,308
세대주·자녀(청년)	1,307	1,204
세대주(청년)·배우자(청년)	923	943
세대주·배우자·자녀(청년)	1,027	902

주: 이동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세대구성을 추출하여 제시함.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청년 세대주의 이동 사유

❍ 청년 세대주와 청년 부부는 수도권으로 유입이 더 활발한 세대 구성 중 하나임

❍ 청년 세대주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요 사유로 '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세대는 91,442세대(63.5%)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38,100세대(55.5%)보다 훨씬 많음
- 청년 세대주가 수도권에서의 직업적 기회를 얻기 위해 이동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표 2-33 | 청년 세대주의 전입사유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동 규모(2023)

(단위: 세대, %, 세대, %)

세대구성	전입사유	수도권 → 비수도권 이동 수		비수도권 → 수도권 이동 수	
		수	비중	수	비중
세대주(청년)	직업	38,100	55.5	91,442	63.5
	가족	3,680	5.4	4,051	2.8
	주택	5,610	8.2	9,147	6.4
	교육	16,667	24.3	31,074	21.6
	주거환경	1,571	2.3	3,836	2.7
	자연환경	574	0.8	115	0.1
	기타	2,494	3.6	4,336	3.0
세대주(청년)·배우자(청년)	직업	565	61.2	560	59.4
	가족	139	15.1	135	14.3
	주택	172	18.6	201	21.3
	교육	7	0.8	4	0.4
	주거환경	13	1.4	11	1.2
	자연환경	10	1.1	1	0.1
	기타	17	1.8	31	3.3

주: 비중은 세대구성 유형 내에서 전입사유별 비중을 나타냄.
비중이 큰 상위 2~3개 전입사유에 대해서 음영 표시함.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청년 세대주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또 다른 주요 사유로 '교육'이 있음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세대는 31,074세대(21.6%)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16,667세대(24.3%)보다 많음
- 이는 수도권의 교육 기회를 찾는 청년 세대주가 많다는 점을 보여줌

❍ 청년 부부가 함께 이동하는 경우에서도, '주택'을 이유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세대가 201세대(21.3%)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172세대(18.6%)보다 많음

❍ 따라서, 청년 세대주와 청년 부부의 수도권 유입이 활발한 주요 요인은 '직업', '교육', '주택' 등으로 분석됨

□ 청년 동거인, 형제자매, 기타친척의 이동 사유

❍ 청년 동거인, 형제자매, 기타친척 역시 수도권으로 유입이 더 활발한 세대 구성 중 하나임

❍ 청년 동거인, 형제자매, 기타 친척 모두에서 수도권 유입의 주요 요인으로 '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청년 동거인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세대 중 7,510세대(53.8%)가 직업을 이유로 이동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3,527세대(46.7%)에 비해 많음
- 청년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 직업을 이유로 한 세대가 3,721세대(40.8%)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718세대(24.3%)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음
- 청년 기타친척 역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세대 중 2,189세대(57.3%)가 직업을 이유로 이동한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세대는 764세대(36.9%)로 나타남

| 표 2-34 | 청년 동거인 등의 전입사유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동 규모(2023)

(단위: 세대, %, 세대, %)

세대구성	전입사유	수도권 → 비수도권 이동 수		비수도권 → 수도권 이동 수	
		수	비중	수	비중
동거인(청년)	직업	3,527	46.7	7,510	53.8
	가족	2,126	28.2	2,503	17.9
	주택	374	5.0	517	3.7
	교육	323	4.3	1,559	11.2
	주거환경	328	4.3	678	4.9
	자연환경	113	1.5	26	0.2
	기타	755	10.0	1,178	8.4
형제자매(청년)	직업	718	24.3	3,721	40.8
	가족	1,711	57.9	3,580	39.2
	주택	144	4.9	177	1.9
	교육	89	3.0	950	10.4
	주거환경	48	1.6	270	3.0
	자연환경	22	0.7	8	0.1
	기타	224	7.6	421	4.6
기타친척(청년)	직업	764	36.9	2,189	57.3
	가족	549	26.5	531	13.9
	주택	79	3.8	80	2.1
	교육	175	8.4	542	14.2
	주거환경	96	4.6	161	4.2
	자연환경	102	4.9	8	0.2
	기타	307	14.8	312	8.2

주: 비중은 세대구성 유형 내에서 전입사유별 비중을 나타냄
비중이 큰 상위 2~3개 전입사유에 대해서 음영 표시함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교육’도 수도권 유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청년 동거인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세대 중 1,559세대(11.2%)가 교육을 이유로 이동한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세대는 323세대(4.3%)에 그침
- 청년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세대 중 950세대(10.4%)가 교육을 이유로 이동했으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세대는 89세대(3.0%)에 불과함
- 청년 기타친척 역시 교육을 이유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세대는 542세대(14.2%)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175세대(8.4%)보다 많음

❍ 따라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인이나 형제자매, 친척의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 수도권에서의 직업적 기회나 교육 기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청년 자녀, 손자녀의 이동 사유

❍ 청년 자녀, 손자녀는 비수도권으로 유입이 더 활발한 세대 구성 중 하나임

❍ 청년 자녀와 청년 손자녀 모두에서 비수도권 유입의 주요 사유는 ‘가족’으로 나타나며, 가족과의 결속을 목적으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청년 자녀의 경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세대 중 37,276세대(71.1%)가 가족을 이유로 이동했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세대 중에서도 가족을 이유로 한 이동이 18,984세대(70.8%)로 나타남
- 청년 손자녀 또한 가족을 이유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손자녀는 1,207세대(56.5%)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577세대)보다 많음

| 표 2-35 | 청년 자녀, 손자녀의 전입사유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동 규모(2023)

(단위: 세대, %, 세대, %)

세대구성	전입사유	수도권 → 비수도권 이동 수		비수도권 → 수도권 이동 수	
		수	비중	수	비중
자녀(청년)	직업	7,511	14.3	4,453	16.6
	가족	37,276	71.1	18,984	70.8
	주택	2,344	4.5	949	3.5
	교육	1,821	3.5	964	3.6
	주거환경	489	0.9	347	1.3
	자연환경	165	0.3	19	0.1
	기타	2,804	5.4	1,108	4.1
손자녀(청년)	직업	361	16.9	374	28.6
	가족	1,207	56.5	577	44.1
	주택	103	4.8	39	3.0
	교육	177	8.3	204	15.6
	주거환경	41	1.9	39	3.0
	자연환경	58	2.7	4	0.3
	기타	189	8.8	71	5.4

주: 비중은 세대구성 유형 내에서 전입사유별 비중을 나타냄.
비중이 큰 상위 2~3개 전입사유에 대해서 음영 표시함.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부모와 청년 자녀의 이동 사유

❍ 부모와 청년 자녀, 부부와 청년 자녀는 비수도권으로 유입이 더 활발한 세대 구성 중 하나임

❍ 그러나, 전입사유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방향 이동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특정 요인에 의해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더 활발하다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표 2-36 | 부모와 청년 자녀의 전입사유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동 규모(2023)

(단위: 세대, %, 세대, %)

세대구성	전입사유	수도권 → 비수도권 이동 수		비수도권 → 수도권 이동 수	
		수	비중	수	비중
세대주·자녀(청년)	직업	517	39.6	469	39.0
	가족	197	15.1	193	16.0
	주택	328	25.1	293	24.3
	교육	55	4.2	107	8.9
	주거환경	36	2.8	49	4.1
	자연환경	65	5.0	4	0.3
	기타	109	8.3	89	7.4
세대주·배우자·자녀(청년)	직업	409	39.8	354	39.2
	가족	159	15.5	165	18.3
	주택	280	27.3	278	30.8
	교육	14	1.4	22	2.4
	주거환경	34	3.3	31	3.4
	자연환경	71	6.9	5	0.6
	기타	60	5.8	47	5.2

주: 비중은 세대구성 유형 내에서 전입사유별 비중을 나타냄.
비중이 큰 상위 2~3개 전입사유에 대해서 음영 표시함.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 비수도권 권역별 청년의 여건 비교·분석

❍ 지역청년의 여건이 권역별로 상이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의 5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강원권(강원),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경권(대구, 경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으로 구분함

❍ 권역별로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각 권역 내 지역청년들이 처한 고유한 상황과 요구를 이해하고자 함

1) 경제활동 및 고용 형태

□ 강원권 청년의 경제활동 및 고용 형태

○ 강원권 청년들은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72.9%로 높은 편이나, 실업자 비율이 4.3%로 비교적 높아 청년층의 고용 기회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음

○ 임시근로자 비율이 12.6%로 높은 편이어서 일부 청년들이 비정규 고용 형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이는 강원권의 특성상 관광 산업과 계절적 고용이 많아 임시직의 비중이 높기 때문일 수 있음

○ 자영업자 비율이 7.2%로 다른 권역에 비해 낮은 것은 강원권 청년들이 자영업보다는 고용주가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 표 2-37 | 강원권 청년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현황(2022)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합계
		취업자	실업자		
수(명)	203,931	191,957	11,975	75,678	279,609
비중(%)	72.9	68.7	4.3	27.1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38 | 강원권 청년 종사상지위 현황(2022)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합계
수(명)	150,798	24,207	3,236	7,618	6,097	191,957
비중(%)	78.6	12.6	1.7	4.0	3.2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충청권 청년의 경제활동 및 고용 형태

○ 충청권 청년은 상용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고 임시근로자 비율이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큼

- 충청권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71.9%에 달하며, 상용근로자 비율은 82.3%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음
- 임시근로자 비율은 9.5%로 가장 낮아 고용 안정성이 보장됨
- 자영업자 비율은 7.7%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이러한 고용 형태는 충청권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줌

| 표 2-39 | 충청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현황(2022)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합계
		취업자	실업자		
수(명)	842,710	810,825	31,885	329,803	1,172,513
비중(%)	71.9	69.2	2.7	28.1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40 | 충청권 청년 종사상지위 현황(2022)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합계
수(명)	667,556	77,212	3,999	27,212	34,846	810,825
비중(%)	82.3	9.5	0.5	3.4	4.3	1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대경권 청년의 경제활동 및 고용 형태

❍ 대경권 청년은 경제활동인구 비율과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고 실업자 비율이 높아,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일자리 기회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대경권 청년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67.9%로 다른 권역에 비해 낮고, 실업자 비율은 4.1%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편임
- 대경권 청년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76.5%로 가장 낮고, 임시근로자 비율이 12.5%로 높은 편임

- 자영업자 비율이 9.9%로 가장 높아 자영업 일자리에 대한 의존도가 큼

❍ 대경권의 산업 구조가 자영업 중심이거나 상용직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청년이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일 수 있음

| 표 2-41 | 대경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현황(2022)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합계
		취업자	실업자		
수(명)	607,764	571,245	36,518	286,736	894,499
비중(%)	67.9	63.9	4.1	32.1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42 | 대경권 청년 종사상지위 현황(2022)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합계
수(명)	436,822	71,377	6,086	15,561	41,400	571,245
비중(%)	76.5	12.5	1.1	2.7	7.2	1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호남권 청년의 경제활동 및 고용 형태

❍ 호남권 청년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용근로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며, 경제활동에 있어 자영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징이 있음

- 호남권 청년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70.0%로 중간 수준이며, 취업자 비율 또한 67.3%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상용근로자 비율이 79.3%로 비교적 양호하며, 임시근로자 비율은 11.4%로 충청권에 이어 낮은 편에 속해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경향을 보임
- 자영업자 비율은 8.0%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표 2-43 | 호남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현황(2022)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합계
		취업자	실업자		
수(명)	635,728	611,058	24,670	272,832	908,560
비중(%)	70.0	67.3	2.7	30.0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44 | 호남권 청년 종사상지위 현황(2022)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합계
수(명)	484,761	69,935	7,132	18,518	30,712	611,058
비중(%)	79.3	11.4	1.2	3	5	1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동남권 청년의 경제활동 및 고용 형태

❍ 동남권의 경우 청년이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역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동남권 청년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68.2%로 중간 수준이며, 실업자 비율은 4.4%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표 2-45 | 동남권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현황(2022)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합계
		취업자	실업자		
수(명)	928,222	867,799	60,423	432,417	1,360,639
비중(%)	68.2	63.8	4.4	31.8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상용근로자 비율은 78.0%로 대경권에 이어 낮은 편이며, 임시근로자 비율은 13.5%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아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 비율은 7.4%로 중간 수준임

| 표 2-46 | 동남권 청년 종사상지위 현황(2022)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합계
수(명)	676,921	117,384	9,699	17,256	46,540	867,799
비중(%)	78	13.5	1.1	2	5.4	1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2) 소득 및 부채

□ 강원권 청년의 소득 및 부채

❍ 강원권 청년들은 소득의 대부분이 근로 및 사업소득에 의존하지만, 다른 권역에 비해 외부로부터의 사적·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높아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큼
- 강원권 청년의 소득 중 근로 및 사업소득 비중은 90.6%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사적 이전소득 비중이 6.3%,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2.5%로 다른 권역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외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 강원권 청년들은 재산 구성에서 주식과 기타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편이며, 자산 축적을 위해 부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강원권 청년의 재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 기타 부동산 및 재산 비율은 38.6%로, 모든 권역 중 주식, 기타 부동산 및 재산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음
- 또한, 강원권 청년 부채의 7.3%가 자산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산 축적을 위한 부채 비중 또한 다른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표 2-47 | 강원권 청년 개인 평균 연간소득 현황(2022)

구분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합계
금액(만 원)	2,383	15	166	67	2,631
비중(%)	90.6	0.6	6.3	2.5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48 | 강원권 청년 개인 평균 부채 현황(2022)

구분	학자금 부채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주택 관련 부채	생활비 부채	합계
금액(만 원)	41	95	1,127	41	1,305
비중(%)	3.1	7.3	86.4	3.2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49 | 강원권 청년 개인 평균 재산 현황(2022)

구분	금융재산	주식	가상자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	합계
금액(만 원)	1,150	291	28	924	2,392
비중(%)	48.1	12.1	1.2	38.6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충청권 청년의 소득 및 부채

○ 충청권 청년들은 경제적 자립도가 높고, 주로 근로 및 사업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함

- 충청권 청년의 소득 중 근로 및 사업소득 비중은 95.6%로 호남권에 이어 높은 수준을 보이며,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 비중은 각각 3.0%와 0.6%로 낮아 자립도가 높은 편임

❍ 금융재산 비중이 높아 재산 구성에서 안전성을 중시하는 특성을 보임
  - 재산 구성에서는 금융재산 비중이 61.6%로 동남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주식은 7.1%, 가상자산은 0.8%, 기타 부동산 및 재산은 30.4%로 나타나 주식,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의 고위험 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다만, 생활비를 위한 부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상적인 지출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부채 중 생활비를 위한 부채가 5.2%로 모든 권역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 표 2-50 | 충청권 청년 개인 평균 연간소득 현황(2022)

구분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합계
금액(만 원)	2,866	22	91	19	2,998
비중(%)	95.6	0.7	3.0	0.6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51 | 충청권 청년 개인 평균 부채 현황(2022)

구분	학자금 부채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주택 관련 부채	생활비 부채	합계
금액(만 원)	48	33	764	46	891
비중(%)	5.3	3.7	85.8	5.2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52 | 충청권 청년 개인 평균 재산 현황(2022)

구분	금융재산	주식	가상자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	합계
금액(만 원)	1,443	167	19	712	2,342
비중(%)	61.6	7.1	0.8	30.4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대경권 청년의 소득 및 부채

❍ 대경권 청년은 재산소득 비중이 높아 자산 기반의 소득 창출 경향을 보이며, 사적 이전소득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큼
- 대경권 청년의 재산소득 비중은 1.2%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사적 이전소득 비중이 5.3%로 상대적으로 높아,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큰 편임

❍ 주택 관련 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대경권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 있어 주택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냄
- 주택 관련 부채가 전체 부채의 90.1%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은 반면, 자산 투자를 위한 부채 비율은 1.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재산 구성에서는 기타 부동산 및 재산 비중이 38.4%로 높은 반면, 금융자산은 51.0%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표 2-53 | 대경권 청년 개인 평균 연간소득 현황(2022)

구분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합계
금액(만 원)	2,330	30	134	23	2,517
비중(%)	92.6	1.2	5.3	0.9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54 | 대경권 청년 개인 평균 부채 현황(2022)

구분	학자금 부채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주택 관련 부채	생활비 부채	합계
금액(만 원)	39	10	716	30	794
비중(%)	4.9	1.3	90.1	3.7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55 | 대경권 청년 개인 평균 재산 현황(2022)

구분	금융재산	주식	가상자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	합계
금액(만 원)	1,055	200	19	794	2,067
비중(%)	51.0	9.7	0.9	38.4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호남권 청년의 소득 및 부채

❍ 호남권 청년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근로 및 사업소득에 의존하고 있어, 자립도가 높고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
- 호남권 청년의 소득 중 근로 및 사업소득 비중은 96.1%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반면, 재산소득은 0.6%, 사적 이전소득은 2.1%, 공적 이전소득은 1.2%로 다른 권역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함

| 표 2-56 | 호남권 청년 개인 평균 연간소득 현황(2022)

구분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합계
금액(만 원)	2,480	15	54	32	2,582
비중(%)	96.1	0.6	2.1	1.2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주택 관련 부채 비중이 높고 생활비 부채가 낮은 점은 주거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일상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나타냄
- 주택 관련 부채 비율이 88.0%로 대경권에 이어 높은 반면, 생활비 부채는 2.7%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가상자산 비중이 높아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성향을 보임
- 재산 구성에서는 가상자산 비중이 1.9%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으며, 다른 재산 항목들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표 2-57 | 호남권 청년 개인 평균 부채 현황(2022)

구분	학자금 부채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주택 관련 부채	생활비 부채	합계
금액(만 원)	32	24	533	16	606
비중(%)	5.3	4.0	88.0	2.7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58 | 호남권 청년 개인 평균 재산 현황(2022)

구분	금융재산	주식	가상자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	합계
금액(만 원)	1,202	203	42	796	2,243
비중(%)	53.6	9.1	1.9	35.5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동남권 청년의 소득 및 부채

❍ 동남권 청년은 학자금과 생활비에 대한 부채 의존도가 높아 교육과 생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동남권 청년의 소득 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93.1%, 재산소득 0.7%, 사적 이전소득 4.7%, 공적 이전소득 1.4%로 나타나며, 모든 항목에서 중간 수준을 보임
- 부채 중 학자금 부채 비중이 7.8%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고, 생활비 부채 역시 5.0%로 충청권에 이어 높은 수준을 보임

❍ 재산 구성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가장 높고 부동산 및 기타 자산 비중이 낮은 점은 부동산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줌
- 재산 구성에서는 금융자산이 64.6%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기타 부동산 및 재산 비중은 26.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표 2-59 | 동남권 청년 개인 평균 연간소득 현황(2022)

구분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합계
금액(만 원)	2,451	19	125	37	2,632
비중(%)	93.1	0.7	4.7	1.4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60 | 동남권 청년 개인 평균 부채 현황(2022)

구분	학자금 부채	자산투자를 위한 부채	주택 관련 부채	생활비 부채	합계
금액(만 원)	46	10	509	29	594
비중(%)	7.8	1.7	85.6	5.0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61 | 동남권 청년 개인 평균 재산 현황(2022)

구분	금융재산	주식	가상자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	합계
금액(만 원)	1,318	173	18	531	2,041
비중(%)	64.6	8.5	0.9	26.0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외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3) 주거 점유 형태 및 부모 동거 현황

□ 강원권 청년의 주거 점유 형태 및 부모 동거 현황

○ 강원권 청년들은 자가 보유율이 낮고 전세 거주 비율이 높음
- 강원권 청년 가구주의 자가 보유 비율은 25.7%로, 충청권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 전세 거주 비율은 26.4%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청년 독거 비율이 높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낮음
-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청년 독거 비율이 27.2%로 충청권에 이어 높은 편이며, 청년 부부와 청년+자녀 가구 비율은 15.8%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부모(가구주)+미혼 청년 가구 비율은 45.0%로 충청권 다음으로 낮게 나타남

| 표 2-62 | 강원권 청년 가구 유형 현황(2022)

구분	청년 독거	청년 부부	청년+ 자녀	부모 동거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부모 (가구주)+ 미혼청년	부모 (가구주)+ 기혼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합계
명(천 명)	76	15	29	8	18	126	-	8	280
비중(%)	27.2	5.5	10.3	2.7	6.5	45.0	-	2.9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63 | 강원권 청년 가구주 주거 점유 형태 현황(2022)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무상 거주	일세	합계
수(천 명)	32	33	49	3	2	6	-	126
비중(%)	25.7	26.4	38.8	2.8	1.9	4.4	-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충청권 청년의 주거 점유 형태 및 부모 동거 현황

○ 충청권 청년들은 자가 보유 비율이 낮고 월세 거주 비율이 높아, 자가 보유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거나 주거 안정성이 낮을 가능성이 큼
- 충청권 청년 가구주의 자가 보유 비율은 21.0%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낮으며, 월세 거주 비율은 44.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청년 독거 및 결혼하여 자립한 가구 비율이 높은 점은 청년층이 비교적 빠르게 자립하여 독립적인 생활 단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줌

- 청년 독거 비율은 28.8%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고, 결혼하여 구성된 청년 부부 및 청년+자녀 가구 비율도 2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반면, 부모(가구주)+미혼청년 비율은 40.4%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낮음

| 표 2-64 | 충청권 청년 가구 유형 현황(2022)

구분	청년 독거	청년 부부	청년+ 자녀	부모 동거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부모 (가구주)+ 미혼청년	부모 (가구주)+ 기혼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합계
명(천 명)	337	111	123	35	39	474	7	45	1,173
비중(%)	28.8	9.5	10.5	3.0	3.4	40.4	0.6	3.9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65 | 충청권 청년 가구주 주거 점유 형태 현황(2022)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무상 거주	일세	합계
수(천 명)	111	130	225	12	26	25	-	529
비중(%)	21.0	24.6	42.5	2.3	4.9	4.7	-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대경권 청년의 주거 점유 형태 및 부모 동거 현황

❍ 대경권 청년은 월세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주거 안정성에서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대경권 청년 가구주의 자가 보유 비율은 26.5%로 중간 수준이며, 월세 거주 비율은 44.3%로 충청권에 이어 높은 편임
- 가구 구성에서는 청년 독거 비율이 22.2%, 청년 부부가 8.3%, 청년+자녀 가구 비율이 5.6%로, 전반적으로 다른 권역과 비교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표 2-66 | 대경권 청년 가구 유형 현황(2022)

구분	청년 독거	청년 부부	청년+ 자녀	부모 동거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부모 (가구주)+ 미혼청년	부모 (가구주)+ 기혼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합계
명(천 명)	198	74	50	31	20	479	4	38	894
비중(%)	22.2	8.3	5.6	3.4	2.2	53.6	0.4	4.3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67 | 대경권 청년 가구주 주거 점유 형태 현황(2022)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무상 거주	일세	합계
수(천 명)	81	66	132	4	7	16	-	307
비중(%)	26.5	21.5	43.1	1.2	2.4	5.3	-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호남권 청년의 주거 점유 형태 및 부모 동거 현황

❍ 호남권 청년은 자가 보유 비율이 높아 주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호남권 청년 가구주의 자가 보유 비율은 30.8%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은 반면, 전세 거주 비율은 19.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표 2-68 | 호남권 청년 가구주 주거 점유 형태 현황(2022)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무상 거주	일세	합계
수(천 명)	99	61	130	6	13	11	-	320
비중(%)	30.8	19.2	40.6	1.9	4.0	3.5	-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청년 부부 및 청년+자녀 가구 비율이 낮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호남권에서 청년들의 독립적인 가구 형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모와의 동거가 흔한 주거 형태임을 나타냄

- 가구 구성 측면에서 청년 부부와 청년+자녀 가구의 비율은 10.7%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낮고, 부모(가구주)+미혼 청년 가구 비율은 57.2%로 가장 높음

| 표 2-69 | 호남권 청년 가구 유형 현황(2022)

구분	청년 독거	청년 부부	청년+ 자녀	부모 동거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부모 (가구주)+ 미혼청년	부모 (가구주)+ 기혼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합계
명(천 명)	202	40	57	28	32	520	7	22	909
비중(%)	22.2	4.4	6.3	3.1	3.6	57.2	0.8	2.4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동남권 청년의 주거 점유 형태 및 부모 동거 현황

❍ 동남권 청년들은 자가 보유와 전세 거주 비율이 높은 편으로 주거 안정성이 비교적 확보된 것으로 보임

- 동남권 청년 가구주의 자가 보유 비율은 28.5%로 호남권에 이어 높은 수준이며, 전세 거주 비율은 25.8%로 강원권 다음으로 높고, 월세 거주 비율은 41.5%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낮음

❍ 청년 독거 가구 비율이 낮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점은 독립 가구를 형성하기보다는 가족과의 동거를 선호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례가 많음을 시사함

- 가구 구성 측면에서 청년 독거 비율은 18.9%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낮으며, 결혼하여 구성된 청년 부부 및 청년+자녀 가구 비율은 15.2%로 중간 수준을 보임
- 또한, 부모(가구주)+미혼 청년 가구 비율은 56.2%로 호남권 다음으로 높은 편임

| 표 2-70 | 동남권 청년 가구 유형 현황(2022)

구분	청년 독거	청년 부부	청년+ 자녀	부모 동거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	부모 (가구주)+ 미혼청년	부모 (가구주)+ 기혼청년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	합계
명(천 명)	257	140	66	40	39	764	7	47	1,361
비중(%)	18.9	10.3	4.9	2.9	2.9	56.2	0.5	3.4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71 | 동남권 청년 가구주 주거 점유 형태 현황(2022)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무상 거주	일세	합계
수(천 명)	126	115	175	10	4	14	-	445
비중(%)	28.5	25.8	39.3	2.2	1.0	3.2	-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4) 결혼 및 가족 가치관

□ 강원권 청년의 결혼 및 가족 가치관

❍ 강원권 청년들은 미혼 비율이 높지만 결혼 의향과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강원권 청년의 유배우자 비율은 18.2%로 호남권 다음으로 낮으며, 미혼 비율은 80.9%로 호남권에 이어 높은 수준을 보임
-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7%로 호남권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결혼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중요함'과 '매우 중요함' 응답 합산)은 77.3%로, 충청권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자녀 출산 및 양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중요함'과 '매우 중요함' 응답 합산)은 73.3%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청년층이 결혼을 고려하면서도 실제 결혼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표 2-72 | 강원권 청년 혼인 상태 현황(2022)

구분	유배우자	미혼	이혼	별거	사별	합계
수(명)	51,013	226,331	2,265	-	-	279,609
비중(%)	18.2	80.9	0.8	-	-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73 | 강원권 청년 향후 결혼 계획 현황(2022)

구분	비해당(유배우)	의향 있음	의향 없음	합계
수(명)	51,013	175,312	53,284	279,609
비중(%)	18.2	62.7	19.1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74 | 강원권 청년 결혼 및 자녀 출산·양육 중요성 인식 현황(2022)

부문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결혼	수(명)	19,472	43,991	129,329	86,817	279,609
	비중(%)	7.0	15.7	46.3	31.0	100.0
자녀 출산·양육	수(명)	24,624	49,986	123,951	81,048	279,609
	비중(%)	8.8	17.9	44.3	29.0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충청권 청년의 결혼 및 가족 가치관

❍ 유배우자 비율이 높고 미혼 비율이 낮은 점은 충청권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나타냄
- 충청권 청년의 유배우자 비율은 25.5%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으며, 미혼 비율은 74.0%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충청권 청년들은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에서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두드러지며, 결혼 및 자녀 양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함

-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7%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이는 유배우자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결혼 의향 응답 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 결혼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중요함'과 '매우 중요함' 응답 합산)은 79.8%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77.6%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음

| 표 2-75 | 충청권 청년 혼인 상태 현황(2022)

구분	유배우자	미혼	이혼	별거	사별	합계
수(명)	299,400	867,866	4,175	905	166	1,172,513
비중(%)	25.5	74.0	0.4	0.1	0.0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76 | 충청권 청년 향후 결혼 계획 현황(2022)

구분	비해당(유배우)	의향 있음	의향 없음	합계
수(명)	299,400	687,747	185,366	1,172,513
비중(%)	25.5	58.7	15.8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77 | 충청권 결혼 및 자녀 출산·양육 중요성 인식 현황(2022)

부문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결혼	수(명)	35,490	201,136	645,066	290,820	1,172,513
	비중(%)	3.0	17.2	55.0	24.8	100.0
자녀 출산·양육	수(명)	51,663	211,970	608,121	300,759	1,172,513
	비중(%)	4.4	18.1	51.9	25.7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대경권 청년의 결혼 및 가족 가치관

❍ 대경권 청년들은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관심이 중간 정도로 나타남

- 미혼 비율은 80.1%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관심은 강원권과 비슷하며 결혼 의향이 없는 비율은 23.5%로 다소 높음
-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중요함” 이상이 66.1%로 중간 수준임

| 표 2-78 | 대경권 청년 혼인 상태 현황(2022)

구분	유배우자	미혼	이혼	별거	사별	합계
수(명)	170,404	716,698	5,277	2,121	-	894,499
비중(%)	19.1	80.1	0.6	0.2	-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79 | 대경권 청년 향후 결혼 계획 현황(2022)

구분	비해당(유배우)	의향 있음	의향 없음	합계
수(명)	171,326	512,777	210,397	894,499
비중(%)	19.2	57.3	23.5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80 | 대경권 결혼 및 자녀 출산·양육 중요성 인식 현황(2022)

부문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결혼	수(명)	49,699	214,476	415,652	214,673	894,499
	비중(%)	5.6	24.0	46.5	24.0	100.0
자녀 출산·양육	수(명)	59,769	243,539	390,936	200,255	894,499
	비중(%)	6.7	27.2	43.7	22.4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호남권 청년의 결혼 및 가족 가치관

❍ 호남권 청년들은 결혼 의향이 높지만 유배우자 비율이 낮아, 결혼에 대한 의향은 있으나 실질적인 결혼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 호남권 청년의 유배우자 비율은 14.4%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낮으며, 미혼 비율은 84.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0%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배우자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결혼 의향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 결혼과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중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점은 호남권 청년들이 결혼과 가족 형성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결혼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중요함'과 '매우 중요함' 응답 합산)은 76.3%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결혼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중요함'과 '매우 중요함' 응답 합산)은 76.3%로 중간 수준을 보이며, 자녀 출산 및 양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중요함'과 '매우 중요함' 응답 합산)은 74.2%로 충청권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표 2-81 | 호남권 청년 혼인 상태 현황(2022)

구분	유배우자	미혼	이혼	별거	사별	합계
수(명)	130,853	767,966	5,873	1,244	2,624	908,560
비중(%)	14.4	84.5	0.6	0.1	0.3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82 | 호남권 청년 향후 결혼 계획 현황(2022)

구분	비해당(유배우)	의향 있음	의향 없음	합계
수(명)	131,136	590,424	187,000	908,560
비중(%)	14.4	65.0	20.6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83 | 호남권 결혼 및 자녀 출산·양육 중요성 인식 현황(2022)

부문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결혼	수(명)	31,952	183,278	426,921	266,409	908,560
	비중(%)	3.5	20.2	47.0	29.3	100.0
자녀 출산·양육	수(명)	38,635	195,838	435,324	238,764	908,560
	비중(%)	4.3	21.6	47.9	26.3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동남권 청년의 결혼 및 가족 가치관

❍ 동남권 청년들은 유배우자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해 결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결혼 의향과 결혼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동남권 청년의 유배우자 비율은 19.6%로 충청권에 이어 높은 수준이며, 미혼 비율은 79.8%로 충청권 다음으로 낮음
-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4%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결혼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중요함'과 '매우 중요함' 응답 합산)은 76.0%로 중간 수준을 보이며, 자녀 출산 및 양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1.0%로 대경권 다음으로 낮게 수준임

❍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동남권 청년들은 결혼을 통한 가정 형성에는 비교적 긍정적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 표 2-84 | 동남권 청년 혼인 상태 현황(2022)

구분	유배우자	미혼	이혼	별거	사별	합계
수(명)	266,462	1,085,874	6,440	992	871	1,360,639
비중(%)	19.6	79.8	0.5	0.1	0.1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85 | 동남권 청년 향후 결혼 계획 현황(2022)

구분	비해당(유배우)	의향 있음	의향 없음	합계
수(명)	266,462	849,458	244,719	1,360,639
비중(%)	19.6	62.4	18.0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86 | 동남권 결혼 및 자녀 출산·양육 중요성 인식 현황(2022)

부문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결혼	수(명)	47,544	279,258	704,786	329,051	1,360,639
	비중(%)	3.5	20.5	51.8	24.2	100.0
자녀 출산·양육	수(명)	68,148	326,663	656,270	309,557	1,360,639
	비중(%)	5.0	24.0	48.2	22.8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5) 여가 활동

□ 강원권 청년의 여가 활동

❍ 강원권 청년들은 여가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실제 참여율도 높은 편으로, 여가와 문화적 경험을 중요한 삶의 요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 여가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문화·예술 활동이 29.5%, 스포츠 활동이 37.3%,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이 21.3%로, 모든 권역 중 여가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청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실제 참여율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활동 참여 비율은 38.1%로 중간 수준이며, 스포츠 활동 참여 비율은 47.6%로 높은 편에 속하고,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비율은 26.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 2~3일 정도의 여행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6%로 높은 편이며, 실제로 2~3일 정도의 여행을 다녀온 비율이 68.1%로 높게 나타남

| 표 2-87 | 강원권 청년 활동경험 필요 여부에 대한 인식 및 지난 1년간 경험 여부(2022)

기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함		지난 1년간 경험 했음	
	수(명)	비중(%)	수(명)	비중(%)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82,426	29.5	106,659	38.1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104,377	37.3	133,043	47.6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59,597	21.3	73,104	26.1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	144,261	51.6	190,287	68.1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강원권 청년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이는 강원권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에 비해 참여 기회가 충분하지 않거나,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 등 다른 권역에 비해 부족해 괴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충청권 청년의 여가 활동

❍ 충청권 청년들은 여가와 휴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실제로 여가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

- 여가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문화·예술 활동 22.7%, 스포츠 활동 32.6%로 강원권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실제 참여율은 문화·예술 활동이 39.7%로 높은 편이며, 스포츠 활동 참여율은 47.9%,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참여율은 28.9%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2~3일 정도의 여행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7%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으며, 실제로 이러한 여행을 다녀온 비율도 7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2-88 | 충청권 청년 활동경험 필요 여부에 대한 인식 및 지난 1년간 경험 여부(2022)

기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함		지난 1년간 경험 했음	
	수(명)	비중(%)	수(명)	비중(%)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265,835	22.7	465,670	39.7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381,908	32.6	561,979	47.9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207,066	17.7	339,380	28.9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	605,940	51.7	854,921	72.9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대경권 청년의 여가 활동

❍ 대경권 청년들은 여가 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다른 권역에 비해 낮고, 실제 참여율도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 여가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문화·예술 활동이 18.7%, 스포츠 활동이 26.0%로 낮은 편이며,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이 9.8%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실제 참여율을 보면, 문화·예술 활동 참여 비율은 31.5%, 스포츠 활동 참여 비율은 41.1%,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비율은 21.2%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2~3일 정도의 여행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8.1%로 중간 수준이며, 실제로 2~3일 정도의 여행을 다녀온 비율은 66.9%로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 표 2-89 | 대경권 청년 활동경험 필요 여부에 대한 인식 및 지난 1년간 경험 여부(2022)

기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함		지난 1년간 경험 했음	
	수(명)	비중(%)	수(명)	비중(%)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167,623	18.7	281,401	31.5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233,005	26.0	367,838	41.1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87,719	9.8	190,062	21.2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	340,846	38.1	598,217	66.9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호남권 청년의 여가 활동

❍ 호남권 청년들은 여가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며, 특히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가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문화·예술 활동이 18.4%, 스포츠 활동이 25.6%로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의 경우,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실제 참여율을 보면, 문화·예술 활동 참여 비율은 32.7%, 스포츠 활동 참여 비율은 42.8%,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비율은 22.4%로 모두 낮은 수준임

- 2~3일 정도의 여행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로 낮은 편이며, 실제로 2~3일 정도의 여행을 다녀온 비율이 67.7%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표 2-90 | 호남권 청년 활동경험 필요 여부에 대한 인식 및 지난 1년간 경험 여부(2022)

기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함		지난 1년간 경험 했음	
	수(명)	비중(%)	수(명)	비중(%)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167,578	18.4	296,858	32.7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232,196	25.6	388,486	42.8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120,586	13.3	203,966	22.4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	344,494	37.9	615,366	67.7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 동남권 청년의 여가 활동

❍ 동남권 청년들은 여가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은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가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문화·예술 활동이 21.4%, 스포츠 활동이 27.6%,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이 11.7%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실제 참여율을 보면, 문화·예술 활동 참여 비율은 30.5%로 가장 높고, 스포츠 활동 참여 비율은 45.2%,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비율은 24.0%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짧은 여행의 필요성 인식과 실제 여행 참여율은 모든 권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3일 정도의 여행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1%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낮으며, 실제로 2~3일 정도의 여행을 다녀온 비율도 66.8%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표 2-91 | 동남권 청년 활동경험 필요 여부에 대한 인식 및 지난 1년간 경험 여부(2022)

기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함		지난 1년간 경험 했음	
	수(명)	비중(%)	수(명)	비중(%)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291,852	21.4	551,602	40.5
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375,793	27.6	615,348	45.2
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	159,583	11.7	326,225	24.0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	490,619	36.1	908,289	66.8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제4절 시사점

1. 수도권 청년인구 집중으로 인한 삶의 여건 악화

□ 청년인구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 심화

❍ 1995년부터 2023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보다 지속적으로 많았음
- 이러한 청년층 유출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2015년 이후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은 더욱 증가해 2020년에 정점을 이루었으며, 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도권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음
- 이는 수도권의 높은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취업 기회와 교육 자원이 제공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도권 집중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교육 자원이 청년들에게 수도권 선호 경향을 강화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경쟁 심화와 치열한 생활 환경으로 인한 청년 삶의 만족도 저하

❍ 수도권 청년들은 높은 생활비, 특히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 독립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2022년 수도권 청년의 상당수가 보증금 있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며, 자가 주택 보유율이 낮아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음
-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수도권 청년의 절반 이상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의 자립성과 생활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수도권 청년 중 5.2%가 복수의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비수도권 청년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청년들이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 경제 안정성이 저하되고 삶의 질과 워라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와 같은 환경은 수도권 청년들이 자아 실현과 개인적 성장을 위한 여유를 갖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며, 경제적 생존을 우선시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저하될 가능성을 보여줌

2. 지역마다 지역과 청년의 상황 편차 존재

□ 지역별로 상이한 청년의 상황과 요구

❍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등 지역별로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강원권은 계절적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아 청년층의 임시·계절 일자리 비율이 높은 편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고용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많은 청년들이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음
- 충청권 청년들은 자가 보유율이 낮고 월세 거주 비율이 높아 주거 안정성이 낮은 편이며, 청년들이 빠르게 독립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주거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음
- 호남권 청년들은 자가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거 안정성이 있는 편이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자립과 독립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강원권에는 관광산업의 계절적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다각화가 필요함
- 충청권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중요할 수 있음

| 표 2-92 | 권역별 청년 여건 분석결과 요약

권역	경제활동 및 고용 형태	소득 및 부채	주거 점유 형태 및 부모 동거 현황	결혼 및 가족 가치관	여가 활동
강원권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으나 실업률과 임시근로자 비율도 높음	사적·공적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고, 자산 투자를 위해 부채 의존	자가 보유율 낮고 전세 거주 비율 높고 독거 비율 높음	결혼 의향과 중요성 인식이 강하나 실제 결혼 비율 낮음	여가 활동 필요성 인식 높으나, 실제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은 낮음
충청권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고용환경	경제적 자립도 높고 금융재산 비중 높음	자가 보유 비율 낮고 월세 비율 높고 독립 가구 형성 비율 높음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해 가족 중심 가치관 강함	여가 활동 참여율 및 필요성 인식 높음
대경권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자영업 의존도가 높음	재산소득 비중 높고 주택 관련 부채 집중	월세 비율 높고 주거 안정성 낮고, 부모 동거 비율 낮음	결혼 및 자녀 출산에 대한 관심 중간 수준	여가 활동 필요성 및 참여율 낮음
호남권	자영업 비율이 높으며, 고용 안정성이 양호한 편	근로 소득 의존도 높고 가상자산 비율 높음	자가 보유율 높고 부모와 동거 비율 높음	결혼 의향 강하나 실제 결혼 비율 낮음	여가 활동 참여 및 필요성 인식 전반적으로 낮음
동남권	실업률 높고 임시근로자 비율 높아 고용 안정성 낮음	학자금 및 생활비 부채 의존도 높음	자가 보유율 높고 부모와 동거 비율 높음	결혼 비율 높으나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 중간 수준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높으나, 여행에 대한 참여율 낮음

자료: 연구진 작성.

□ 미래 세대 부재로 인한 지역 생산기반 위축 가능성

❍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면서 비수도권의 생산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큼

- 청년층은 지역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노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비수도권은 경제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역의 산업 유지와 성장 가능성이 약화되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청년들이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미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유출은 지역의 장기적인 인력 확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청년층이 이탈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은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유치 및 유지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청년들이 지역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청년층의 정착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수적임
-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청년이 자아 실현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함

3. 청년의 선호도 변화를 고려한 정책 필요

□ 시대 변화에 따른 청년 선호도 변화

❍ 최근 청년 세대는 물질적 소유보다 개인의 삶의 질과 경험을 더 중시하며, 효율성과 경쟁보다는 연대와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김
- 이러한 탈물질주의적 성향은 소비에서도 나타나며, 청년들은 감성적인 소비와 지역 특색을 중시하는 경험을 선호하고 있음
-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청년들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평생직장 개념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일자리를 탐색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프리랜서와 긱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대응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음
- 동시에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며,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지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관련이 깊음

-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이 낮아지고 있으며, 가족보다는 개인의 삶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음
- 청년들은 경제적 여건과 생활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가족 형성을 부담스럽게 느끼며 독립적인 삶을 선호하고 있음

□ 新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지역청년 정책 필요

❍ 청년들이 경험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감성적 소비와 지역 특색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함
- 지역 사회의 특성과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청년 문화 센터, 창의적 활동 공간, 지역 고유의 문화·역사 체험 공간 등을 마련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정서적 만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긍정적 인식과 참여를 장려할 수 있을 것임

❍ 청년들의 선호에 맞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격 근무 등 유연 근무제도를 확대하고, 프리랜서 및 긱 경제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 근무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프리랜서와 긱 노동자를 위한 근로 조건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 주거비 지원 정책과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임

❍ 결혼과 가족 형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결혼·출산 지원 정책을 넘어서, 비혼, 한부모, 공동체 기반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 또한,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가족 형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 3 장

청년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분석

제1절 청년지원 제도 및 정책

제2절 청년일자리정책

제3절 청년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한계

03 청년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분석

제1절 청년지원 제도 및 정책

1. 청년기본법

❍ 2020년 2월 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들에게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조정하며, 청년의 고용촉진, 능력개발, 주거·복지향상, 참여확대 등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최상위 법률임

- 제1조에 의거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음

❍ 기본이념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첫째,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둘째,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셋째,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넷째,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청년기본법」 제8조에 의거 국무총리는 5년 단위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는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을 포함(제17조~제24조)

-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사업을 수행해야 함

❍ 청년정책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무총리는 청년단체나 청년시설로 하여금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청년친화도시 지정·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지역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함

❍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중앙부처와 시·도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국무총리)와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으로 함

| 표 3-1 | 청년기본법의 세부내용

구분	법률명	세부내용	주무부서
청년의 권익 증진	청년기본법 (2023.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국무조정실

구분	법률명	세부내용	주무부서
청년의 권익 증진	청년기본법 (2023.3.21 일부개정)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제24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 지원, 능력개발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제5장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제24조 청년시설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청년지원센터 지정,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청년친화도시	국무조정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24일 검색.

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현황

❍ 2024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청년기본법」에 의거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광주의 청년정책기본조례는 '21년에, 전남과 경남의 청년발전기본조례는 각각 '17년과 '19년에 청년기본조례로 개정되었음
- 예외적으로 '18년 2월 제정되었던 인천 청년기본조례는 '22년 11월에 인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로 개정되었음

| 표 3-2 |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명과 제정시기

조례명칭	제정연도	해당시도
청년기본조례	2015	• 서울(1.2.) 전남(7.23.) 경기(8.13.) 광주(12.28.) 대구(12.30.)
	2016	• 충남(2.22.) 충북(5.24.) 경남(6.9.) 제주(6.22.) 대전(10.20.) 세종(12.20.)
	2017	• 전북(4.14.) 울산(4.27.) 부산(5.31.) 강원(11.3.) 경북(12.28.)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2018	• 인천(2.26)

자료: 김도형·박승규(2017)를 참조하여 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24일 검색.

□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목적

❍ 청년기본조례의 목적은 대부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해당 지역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다른 지역과 구별되어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 청년 간 교류 확대 등이 특별한 사항으로 명시되기도 하고, 대전과 같이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기도 함

❍ 조례의 명칭에 유일하게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던 광주는 그 목적에 있어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 등이 포함
- 제주의 경우 '청년 간 교류확대'를 유일하게 명시하고 있고, 경북의 경우에는 정책개발과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등도 목적에 포함시키고 있음
- 충남과 전남은 해당 지역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과 함께 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지역 외 청년도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는데, 이는 청년층의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김도형·박승규, 2017)

| 표 3-3 |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의 목적

조례 목적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일반 사항																	
• 사회 참여	○	○	○	○	○	○	○	○	○	○	○	○	○	○	○	○	○
• 자립기반 형성	○	○	○	○	○	○	○	○	○	·	○	○	○	○	·	○	○
• 권익증진·발전	○	○	○	○	○	○	○	○	○	○	○	○	○	○	○	○	○
2. 특별 사항																	
• 정책 개발	·	·	·	·	○	·	·	·	·	·	·	·	·	·	○	·	·
• 정책 수립·조정	·	·	·	·	·	·	·	·	·	·	·	·	·	·	○	·	·
• 지역사회 발전	·	·	·	·	○	·	·	·	·	·	·	○	·	○	·	·	·
• 교류 확대	·	·	·	·	·	·	·	·	·	·	·	·	·	·	·	·	○

자료: 김도형·박승규(2017)를 참조하여 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년 8월 6일 검색.

□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 분야

❍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청년정책은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등 7개 분야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대동소이하게 규정
- 5개 광역의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특별한 사항에 해당하는 청년정책 분야로는 창업 지원이나 부채 경감 및 건강권 보장, 청년 실태조사, 복지 증진, 또는 교류 확대 등이 있음

| 표 3-4 |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정책 분야

정책 분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일반 사항																	
• 청년의 참여 확대	○	○	○	○	○	○	○	○	○	○	○	○	○	○	○	○	○
• 청년의 능력 등 개발	○	○	○	○	·	○	○	○	○	○	○	○	○	○	○	○	○
•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	○	○	○	○	○	○	○	○	○	○	○	○	○	○	○	○
•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	○	·	○	·	○	○	○	○	○	○	○	○	·	○	·	○
• 청년의 생활 안정	○	○	○	○	○	○	○	○	○	·	○	○	○	○	○	○	○
• 청년 문화 활성화	○	○	○	○	○	○	○	○	○	○	○	○	○	○	○	○	○
• 청년의 권리 보호	○	○	○	○	○	○	○	○	○	○	○	○	○	○	○	○	○
2. 특별 사항																	
• 청년의 창업 지원	·	·	·	○	○	·	·	·	·	○	·	·	○	·	○	·	·
• 청년의 부채 경감	○	○	·	·	○	·	·	·	·	·	·	·	·	·	·	·	·
• 청년의 건강권 보장	·	·	·	·	·	○	·	·	·	·	·	·	○	·	○	·	·
• 청년 실태에 관한 조사	·	·	·	·	·	·	·	·	·	·	·	·	○	·	○	·	·
• 청년의 복지 증진	·	·	·	·	○	·	·	·	·	·	·	·	○	·	○	·	·
• 청년의 교류 확대	·	·	·	·	·	·	·	·	·	·	·	·	·	·	·	·	○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	○	·	○	○	·	·	·	○	·	○	○	·	·	·	○	○

자료: 김도형·박승규(2017)를 참조하여 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년 8월 6일 검색.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청년 관련 조례

❍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시·군·구 지역에서 대부분 시군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조례 외에도 일자리·창업, 주거 및 문화예술 지원, 활동 및 참여 지원, 고립 청년 지원 등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시스템을 통해서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024년 10월 기준 1,075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청년세대의 특성상 일자리, 취업 및 창업지원, 농어업인 육성 등 고용촉진과 관련되는 조례가 277건으로 25.8%를 차지

| 표 3-5 |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관련 조례

구분	조례수(건)	해당 조례명
일자리·취업	119	청년 일자리 기본조례 청년 일자리창출·고용촉진 조례,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조례
창업 지원	65	청년 창업 지원조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청년 농어업인 육성	93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조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어입 육성·지원조례
청년공간 설치	14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 청년활동공간 조례
주거 지원	15	청년 주거 기본조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조례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충주) 청년 주거 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전남)
문화예술 지원	3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예술인 육성 지원조례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지원조례(전남)
자립준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115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아동복지시설 자립준비 청년지원조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조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가족돌봄청년 지원	7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조례
기본소득 지원	31	청년 기본소득 지급조례
청년기금 설치	19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참여 및 활동지원	9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조례(대전서구), 청년회 등 활동 지원 조례, 청년단체 활동 지원 조례(영양)
기타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합계	1,075	

자료: 국가법령정부센터, 2024년 10월 4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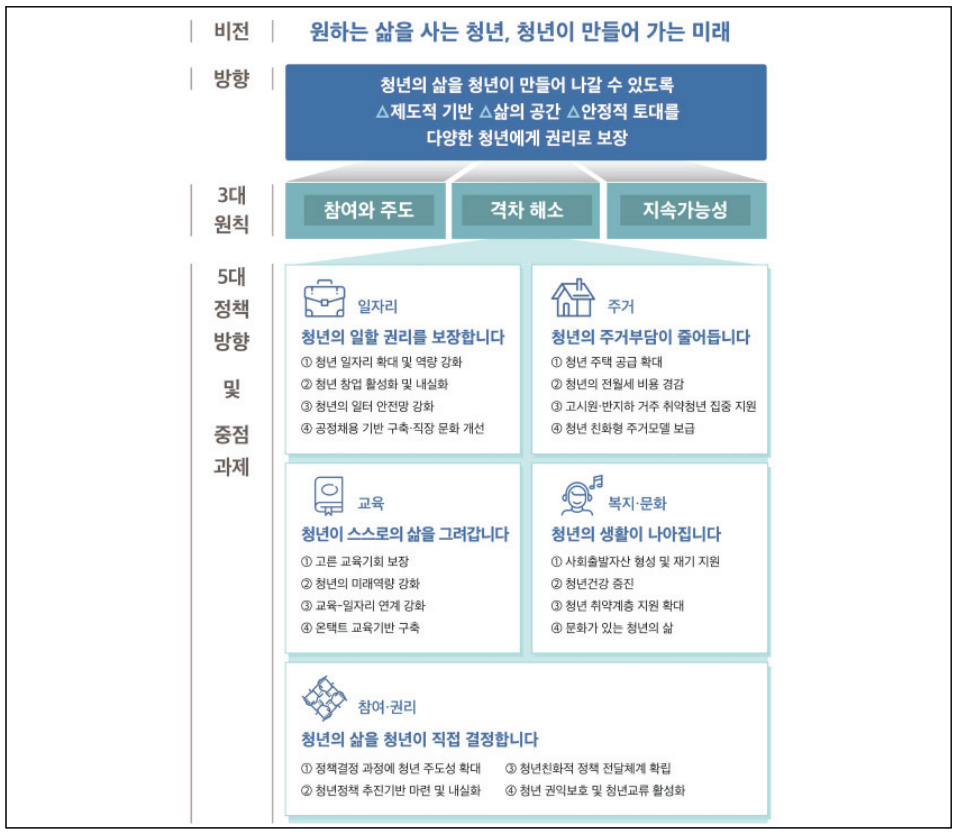
3. 청년정책 추진계획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의거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고, ‘23년 3월에는 수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그동안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위주로 전개되어 왔으나 청년의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청년정책으로 전환하고, 청년이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권리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림 3-1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12).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은 청년이 단순한 중간세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되도록 선제적인 사회투자에 집중
- 청년이 자신의 삶을 둘러싼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확대하고, 이행 전주기에 걸쳐 모든 청년의 기본적 권리와 기회를 충실히 보장, 자립 지원
-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시의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되 중장기 국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청년정책의 격차 축소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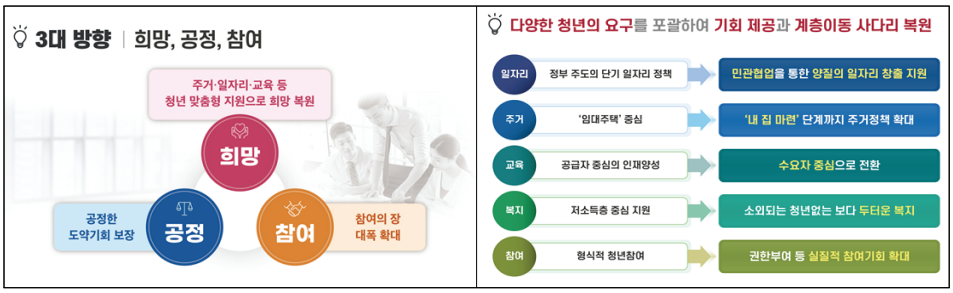
❍ 청년정책의 3대 원칙은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으로 두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대 정책방향 및 중점과제 제시
-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주거부담 축소, 고른 교육기회 보장, 생활 부담 경감, 청년의 주도성 및 교류 활성화 등

□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2022.10)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을 정부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역대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청년정책 반영
-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 기조 하에서 COVID-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제시
-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복원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보장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의 5대 분야별로 다양한 청년의 요구를 포괄하여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
-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관협업을 통한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양성과 교육비 부담 완화, 소외됨 없는 청년 복지, 권한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참여 기회 확대

| 그림 3-2 |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의 3대 방향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2.10.26.), p.10.

| 그림 3-3 |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202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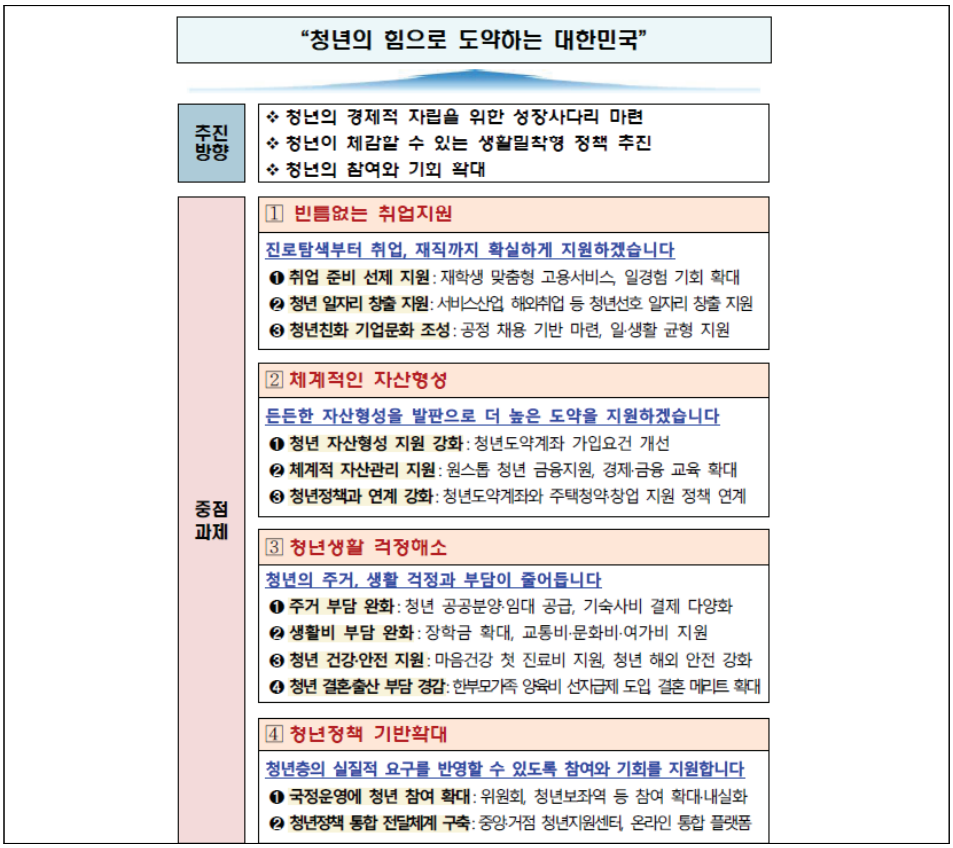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10).

□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청년정책 추진계획(2024.3)

❍ 청년정책 추진계획(2022.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계획(2023.3)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삶 여건은 취업 애로, 세대간 경제적 격차 등으로 여전히 불안정하고 어려워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이에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청년정책 추진계획 수립(2024.3)
- 일자리,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소득과 자산 등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집중 추진

| 그림 3-4 | 청년정책 추진계획(2024.3)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3).

❍ 청년정책의 추진방향은 첫째,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성장사다리 마련, 둘째,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셋째, 청년의 참여와 기회 확대임

- 중점적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 재직까지 빈틈 없이 취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청년의 주거 및 생활과 관련된 걱정과 부담을 해소
- 청년층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청년 참여 위원회를 57개에서 221개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보좌역이나 2030 자문단 등 참여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청년지원센터(오프라인)와 통합플랫폼(온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함

❍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청년정책 조정 및 협력, 청년정책 분석·평가, 제도개선 등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하에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는 2024년 중앙부처 청년정책 시행계획 및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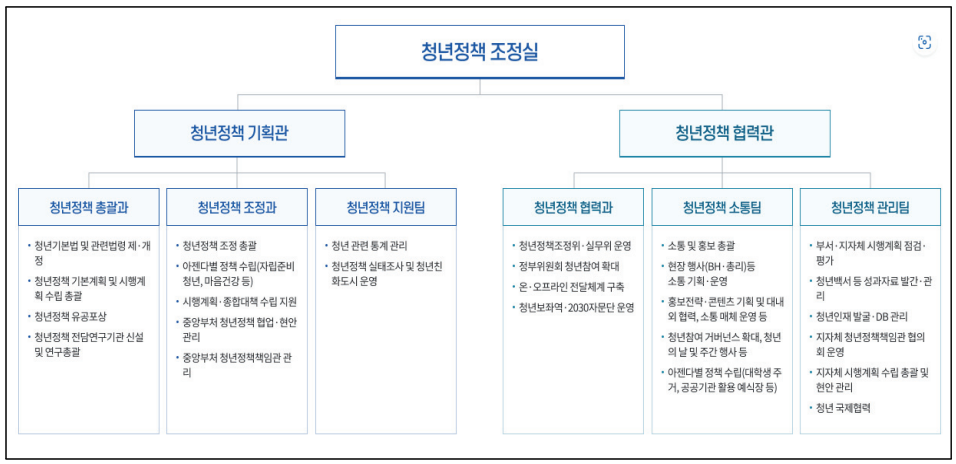
❍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 ·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을 설치

- 범정부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조정실은 1실, 2관(청년정책기획관과 청년정책협력관), 4과 33명으로 구성

❍ 중앙 청년지원센터 및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통합플랫폼에서는 청년 개인의 관심 분야나 여건(소득, 지역) 등에 따라서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지원자격 진단· 상담·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중앙에는 온통청년 청년포털이 운영되고 있으며, 17개 시도에는 광역청년 플랫폼 운영

| 그림 3-5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조직도



자료: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2030.go.kr/etc/ythPlatform#).

| 그림 3-6 | 17개 시도의 광역청년플랫폼



자료: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2030.go.kr/etc/ythPlatform#)

제2절 청년일자리정책

1. 청년고용법과 후계청년농어업인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은 기존에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확대·개편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9년에 제정된 법률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에 의거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 「청년고용법」은 국가의 고용정책 전반을 다루는 「고용정책기본법」과 별도로 특별히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임

❍ 국가와 지자체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에 의거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청년고용촉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지님

- 기본적으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서 고용확대 및 직업지도(제2장)와 직업능력개발훈련(제3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 제5조에 의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는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고, 국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제공할 수 있음

- 국가는 청년 미취업자나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중소기업체가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고, 청년고용촉진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국가는 매년 동법 제14조에 의거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통합인력전산망을 설치(제16조)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제16조의2)해야 함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 2020년 5월에 제정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에 의거 청년농어업인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제3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기본계획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방안,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의거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 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해서는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0조)
- 국가와 지자체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음(제13조)
- 또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7조)

| 표 3-6 | 청년고용법과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의 주요내용

구분	법률명	세부내용	주무부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청년고용법)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①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의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

구분	법률명	세부내용	주무부서
		3.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 농어업인의 육성 지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청년농어업인법) (2020.5.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 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구분	법률명	세부내용	주무부서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영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단체 또는 학교가 제1항에 따른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24일 검색.

2. 역대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및 고용대책

□ 역대정부의 청년 고용대책

❍ 1997년과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특히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산업이 성숙화되면서 대기업은 서서히 신규 채용을 줄이기 시작했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 등으로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감소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청년의 실업과 고용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
  -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3포+내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 7포(5포+꿈, 희망 포기) 등 'N포 세대',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등 용어가 생겨남

❍ 먼저 노무현 정부(2004~2008)는 IMF와 외환위기를 겪고 난 이후 변화한 노동시장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이 발생하여 청년 실업 사태에 대응하고자 2004년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청년고용촉진대책 발표

- 청년고용촉진대책은 대학의 현장 적합성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 청년의 진로 지원 및 정보 제공, 해외 취업 등을 제시

❍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2009~2013)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특히, 청년세대의 고용환경이 악화되었고, 장기화되어 청년 실업률 등에서 벗어나고자 노무현 정부가 제정하였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청년실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강화하였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실시, 중소기업 취업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음

| 표 3-7 | 역대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노무현 정부 ('04~'08)	이명박 정부 ('09~'13)	박근혜 정부 ('14~'17)	문재인 정부 ('17~'22)	윤석열 정부 ('22~'27)
청년 실업현황과 대책 (2003.9.) 청년 고용촉진 대책 (2005.1.) 해외취업 촉진 대책 (2006.3.)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 (2006.4.) 청년 실업보완 대책 (2007.4.)	글로벌 청년리더양성계획 (2008.4.) 청년고용촉진대책 (2008.8.) 청년고용추가대책 (2009.3.) 청년·중기 미스매치 해소 (2009.2.) 청년 내일만들기 1차 (2010.10.) 청년 내일만들기 2차 (2011.5.)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 (2013.10.)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 (2013.12.)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2014.4.) 청년 해외 취업촉진 방안 (2014.12.)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 (2015.8.)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2016.4.) 청년 고용대책 보완방안 (2017.3.)	청년일자리대책 (2018.3.)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 (2019.7) 제1차 청년의삶 개선방안 (2020.3.) 제2차 청년의삶 개선방안 (2020.9.)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2020.12.)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2021.3.) 청년특별대책 (2021.8.) 청년생활 체감형 제도개선 (2021.11)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2022.1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 (2023.3)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정 (2023.4) 청년정책 추진계획 수립 (2024.3)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2024.4)

자료: 김기헌(2017), 송수종 외(2021), 국무조정실(2021), 행정안전부(2023)를 참조하여 작성.

○ 박근혜 정부(2014~2017)는 청년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중심으로 청년의 실업률 완화 및 일자리 확충에 나섰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기획·조정·평가를 위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설립 추진하였음

-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임금피크제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고.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K-Move 실시, 청년여성 취업연계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추진

| 표 3-8 | 역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구분	노무현 정부 ('04~'08)	이명박 정부 ('09~'13)	박근혜 정부 ('14~'17)	문재인 정부 ('17~'22)	윤석열 정부 ('22~'27)
주요 이슈	청년 정치참여 청년 우울 청년실업 경제양극화	생애주기별 문제 일자리 창출 일자리질 개선 글로벌 경제위기 청년 창업활동	일자리문제 정치참여 대학 창업지원 경제개혁 저출산고령화 청년복지정책	청년 고용부진 심화 저출산고령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청년의 삶 전반 관심 지역 주도 청년정책 활발 정부-지방-청년 협치	청년 취업애로 등 체감도 부족 '쉬었음' 청년 증가 추세 고물가로 청년 생활비 부담 증가 민간주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강화
법·제도	청년실업특별해소법 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청년기본법 제정	-
추진체계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주요 정책	청소년직장체험 해외취업지원 기능사 양성훈련 고용정보망 운영 청년고용촉진 장려금 등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해외취업연수 바이오전문인력 양성 신규직업자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버스 (취업상담) 중소기업직업체험 내일채움공제 대학중심 취업설명회 청년창업 2030 정책참여단 등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증대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온라인청년센터 청년창업지원 확대 등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일자리채움청년 지원금 청년도전지원 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자료: 김지경 외(2019), 국무조정실(2022), 행정안전부(2023) 등을 참조하여 작성

❍ 문재인 정부(2017~2022)는 고용 중심이던 청년정책의 방향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포괄적·입체적 정책 접근을 시도하는 한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토대로서 「청년기본법」을 2020년 제정·시행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함

- 일자리 분야에 국한되었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외 주거비부담, 자산격차, 참여소외 등 청년의 어려움을 다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정책대상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보편적 청년으로 포괄하고 사회진입 이행기라는 특정 시기만이 아닌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정책도 함께 구상
- 청년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청년의 범위,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의무, 청년 실태조사 시행 등을 규정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을 다루는 범정부컨트롤타워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한편 부처별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 신설하고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조정실은 총괄 역할 수행

□ 윤석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 주도의 단기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

- 동시에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지역맞춤형의 운영방식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

❍ 특히, 청년의 경우 체계화된 경력설계가 가능하도록 훈련·일경험·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으로 전환(행정안전부, 2023)

- 우수 프로그램 육성·발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일경험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매칭과 이력관리를 통해 일경험 기회 확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

- 현장 실무경험 기회 확대 차원에서 일경험 제공방식 및 유형을 다양화하고

청년-기업 맞춤형 매칭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첨단산업·신기술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등을 확대 운영

❍ 노동전환의 관점에서 디지털 경제, 탄소중립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인력공급을 확대(행정안전부, 2023)

- 기술변화 속에서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 일자리 정책과 경제 정책, 교육 정책이 모두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천영민, 2022)

| 그림 3-7 |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자료: 천영민(2022.7), 새정부 청년일자리정책 방향과 지역사례, 한국고용정보원.

❍ 대학생과 구직단념 청년 등의 취업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학생 맞춤형의 고용서비스를 도입하고 구직단념 청년을 위해서는 특화프로그램 지원하며 취업애로청년 채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감

- 청년의 창업지원을 강화하고자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확대·지원하고 청년창업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우대 보증지원을 확대·실시

| 표 3-9 | 윤석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구분	내용	세부내용
현장실무 경험기회 확대	일경험 활성화	• 제공방식·유형 다양화: 온라인 직무체험, 프로젝트수행·인턴십 등 추가 • 지원대상 확대: 2022년 1만명 → 2023년 2만명 • 청년-기업 맞춤형 매칭 통합플랫폼 구축
	첨단산업·신기술 실무인재 양성	• AI, 빅데이터 등 훈련과정 확대: K-HighTech Training* 2022년 2.8만명에서 2023년 3.6만명으로 확대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확대운영	• 디지털 산업구조 변화 반영해 하이테크 과정 확대: 2022년 AI+X**, 저탄소분야 등 신설, 2023년 반도체 분야 등 신설
취업서비스 개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 진로찾기부터 훈련·일경험까지 학년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 직업정보 제공에서부터 직업포트폴리오 설계(저학년), 취업활동 계획 수립에서부터 훈련·일경험 등 제공(고학년)
	구직단념 청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	• 특화프로그램 신설 및 지원 수준 확대: 단기(1-2개월)중심에서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신설, 수료시 20만 원 지급 수준을 참여수당·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 원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	• 구직단념·장기실업 등 취업 애로청년 채용 중소기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규모확대: 2022년 1년 최대 960만 원→2023년 2년 최대 1,200만 원
청년창업 지원강화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 투자사업화 지원 역량 갖춘 민간운영사 중심으로 우수 청년창업 자선발 교육 투자유치 지원: 2022년 1곳 시범도입 후 2023년 2곳 추가
	청년창업펀드 확대	• 모태펀드 출자 통해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청년 창업가 집중투자: 2022년 500억 출자/1,100억 원 조성→2023년 330억 원 출자/550억 원 추가 조성(정부안 기준)
	청년 창업기업 우대 보증지원확대	• 2026년까지 청년 창업기업에 2조 원 신규 보증 • 우수기업 '청년테크스타보증' 지원대상 확대: 정부추천기업 외 민간추천기업 추가

주: * K-HighTech Training: 민간 혁신훈련기관, 첨단산업 선도기업, 대학 등 참여해 AI·빅데이터 등 훈련과정 제공.
** AI+X: 인공지능에 다른 분야 기술 연결·융합.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2.10.26.)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https://naver.me/FTkn8b0m).

3.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과 예산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의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말함

- 2024년 기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총규모는 29.3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 원(3.5%)이 감소하였으며, 정부 전체 총지출의 4.5%를 차지하고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3: 119)

| 표 3-10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단위: 조 원, %)

구분	2021	2022	2023(A)	2024(B)	증감(B-A)	(B-A)/A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A)	30.5	31.6	30.3	29.3	△1	△3.5
정부총지출(B)	558.0	607.7	639.0	656.9	17.9	2.8
A/B	5.5	5.2	4.7	4.56		

주: 본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Ⅱ」.

❍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OECD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련 9개 공공지출 유형에 기초하여 7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지원고용 및 재활로 구분됨

- OECD는 공공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 훈련, 일자리순환 및 일자리나누기, 고용인센티브, 장애인통합, 직접일자리창출, 창업인센티브, 실직자 소득보장 및 지원, 조기은퇴의 9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표 3-11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과 대표사업

7개 유형	주요 내용	대표사업
직접일자리	•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소득보조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복지부)
직업훈련	• 실업자의 취업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실업위험감소를 위해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	내일배움카드 (고용부)
고용서비스	•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노동시장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구직자의 직업탐색과 고용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고용장려금	•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고용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일자리 질 향상 등의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	고용창출장려금 (고용부)
창업지원	•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융자·시설·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	창업기업자금 (중기부)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실업보험,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공적 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	구직급여 (고용부)
지원고용 및 재활	•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는 조치	장애인취업지원 (고용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Ⅱ」.

❍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은 실업소득유지·지원의 비중이 2024년도 예산(안) 기준 44.1%로 가장 크고, 고용장려금(14.6%), 직접일자리(12.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로 예산 배분 경향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고용장려금은 COVID-19 발생 이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직업훈련과 창업지원의 예산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임

❍ 2024년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 총액은 29.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원 가량 감소하였으나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고용 및 재활사업, 그리고 창업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증액되었음

-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10.3%가 증가하였고, 창업지원사업의 경우에는 3.8%, 지원고용 및 재활사업의 경우 7.4%가 증가하였음

| 표 3-12 | 유형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2020~2024년 예산 기준)

(단위: 억 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본예산	비중	본예산	비중	본예산	비중	본예산	비중	본예산	비중
합계	**254,998**	**100**	**305,131**	**100**	**315,809**	**100**	**303,481**	**100**	**292,935**	**100**
직접일자리	28,587	11.2	31,599	10.4	32,079	10.2	32,244	10.6	35,578	12.1
직업훈련	22,434	8.8	22,648	7.4	24,785	7.8	27,301	9.0	26,069	8.9
고용서비스	11,994	4.7	17,330	5.7	18,922	6.0	17,745	5.8	16,348	5.6
고용장려금	64,950	25.5	76,002	24.9	65,263	20.7	50,634	16.7	42,701	14.6
창업지원	23,585	9.2	24,071	7.9	28,376	9.0	31,484	10.4	32,687	11.2
실업소득 유지·지원	103,447	40.6	133,481	43.7	137,715	43.6	134,404	44.3	129,172	44.1
지원고용 ·재활	-	-	-	-	8,668	2.7	9,669	3.2	10,380	3.5

자료: 각 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총괄분석Ⅱ」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의 유형과 예산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일자리사업의 경우 청년희망사다리패키지 예산안을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2021)에 따르면 일자리 부문과 자산형성 부문으로 크게 나뉘고, 이는 또한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2에 의거 시행하는 일자리사업 평가에 포함되는 사업과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 구분 가능

-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7개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 중에서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 지원고용·재활사업을 제외하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그리고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24년 현재 지역혁신형과 지역포용형이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되며, 상생기반대응형 사업은 창업지원 유형에 포함

| 표 3-13 | 청년대상 일자리 및 자산형성 사업예산(2022년 예산 기준)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A)	2022			(B-A)	(B-A)/A
			예산안(B)	비중	사업수		
합계		**5,758,364**	**7,423,818**	**100.0**	**115**	**1,665,454**	**28.9**
일자리	소계	4,009,353	5,479,696	73.8	104	1,470,343	36.7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포함	3,003,104	3,876,950	52.2	42	873,846	29.1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불포함	1,006,249	1,602,746	21.6	62	596,497	59.3
자산형성	소계	1,749,011	1,944,122	26.2	11	195,111	11.2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포함	1,716,628	1,595,417	21.5	3	△121,211	△7.1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불포함	32,383	348,705	4.7	8	316,322	976.8

주: 이후 예산안 총괄분석에서는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수록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1), 「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Ⅱ」, p.244.

| 표 3-14 |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 예산(2022년 예산 기준)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A)	2022			(B-A)	(B-A)/A
			예산안(B)	비중	사업수		
합계		**3,003,104**	**3,876,950**	**100.0**	**42**	**873,846**	**29.1**
일자리	직접일자리	302,922	395,772	10.2	9	92,850	30.7
	직업훈련	204,106	420,477	10.8	8	216,371	106.0
	고용서비스	503,948	614,733	15.9	9	110,785	22.0
	고용장려금	1,671,643	2,066,032	53.3	5	394,389	23.6
	창업지원	320,485	379,936	9.8	11	59,451	18.6

주: 이후 예산안 총괄분석에서는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수록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1), 「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Ⅱ」, p.244.

❍ 2022년 예산 기준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를 받았던 3.9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은 53.3%가 고용장려금 사업에 해당
- 청년세대의 특성상 고용장려금 사업과 고용서비스 사업(15.9%), 직업훈련(10.8%) 순으로 추진

□ 중앙부처의 청년일자리사업 현황

❍ 국무조정실 청년포털(https://2030.go.kr/etc/searchType1)에서는 청년기본계획에 의거 청년정책을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 복지·문화 분야, 참여·권리 분야의 5개 분야로 구분하고, 중앙부처와 시도의 청년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 2024년 10월 현재, 청년포털에서 제공하는 중앙부처의 청년 일자리사업은 70건, 주거 분야는 38건, 교육 분야는 71건, 복지·문화분야는 60건, 참여·권리 분야는 49건으로 검색됨
-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업이 가장 많고,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가 관련 사업을 추진

| 표 3-15 | 중앙부처의 청년일자리사업 특성

구분	특성
고용노동부	- 청년 취약계층, 취업애로청년 등 세분화된 정책대상 중심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 예비창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지원
기획재정부	- 청년 고용 관련 간접적 세제 혜택
산업통상자원부	- 청년 석박사 등 특정대상 및 산업단지 관련 고용지원
여성가족부	- 청년여성/학교밖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중심
문화체육관광부	- 청년예술가·생활체육지도자 등 문화관광 분야 중심
국토교통부	- 항공 및 스마트시티, LH희망상가 등 국토교통 분야 중심
농림축산식품부	- 귀농, 식품클러스터 등 농림 분야 중심

자료: 행정안전부(2023), 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성과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표 3-16 | 중앙부처의 청년일자리사업 현황(2024년 10월 기준)

구분	사업명(70)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성장프로젝트,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해외 일경험지원사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K-Move 스쿨, 청년국가기술가격시험 응시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 국내 해외취업센터 운영,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 취업 알선, 조기재취업수당, 월드잡플러스, 국가인적자원개발,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예술인 고용보험, 공정채용컨설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전용 창업기반 지원,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 CEO 육성사업, 창업성공패키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지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클로컬상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식품 창업패키지, 맞춤형 농지지원 선임대후매도사업, 갓생인턴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 어선임대사업, 양식장 임대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예술가 도약지원, 청춘만발 예술인 지원, 글로벌 콘텐츠 인재들의 부트캠프 GCC 사관학교, 대한체육회 운동선수 진로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일본 온라인잡페어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3D 프린팅 전문기술 활용지원사업, 1인 미디어 콤플렉스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여성가족부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국가보훈부	청년장병 진로상담 및 일자리 지원
국세청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병무청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자료: 청년포털(https://2030.go.kr/etc/searchType1).

제3절 청년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한계

1. 기본적인 전국 공통의 청년 지원 법률

□ 청년기본법은 권익증진 중심의 청년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장기적·종합적인 청년발전을 위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최상위 법률이라 할 수 있음
-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들에게 고용촉진 및 능력개발, 주거 및 복지 향상, 참여 확대 등 사회경제적인 종합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국무총리는 동법 제8조에 의거 5년 단위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역시 대부분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청년정책은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등 7개 분야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대동소이하게 규정

□ 전국 공통의 획일적인 청년 지원으로 지역청년의 특성 반영 미흡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하에서 그동안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에서 주거, 문화, 복지, 참여 등 광범위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으나,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전국 공통의 획일적인 청년지원정책에 해당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대부분의 청년정책은 신청자격상 청년에 해당하는 요건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역여건과 상관없이 전국 공통으로 사업을 추진함

❍ 또한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에서 탈피하여 광범위하게 청년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세대의 특성상 일자리, 취업 및 창업지원, 농어업인 육성 등 고용촉진과 관련되는 조례가 가장 많은 것이 현실

- 그만큼 청년세대는 인생의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대의 특성상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청년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경우 청년 세대 전반에 걸쳐 고졸자, 구직단념 청년, 저소득 청년 등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여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주요 일자리 제공처가 되기 때문에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인력을 채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그러나 지방에는 5인 이하의 영세한 기업들이 많을뿐더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중앙부처가 천편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청년의 권익이 증진되지는 않는 문제 발생

2. '지역'과 '청년'을 연계한 정책설계 필요

□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도모하는 청년정책 추진 필요

❍ 2010년대 중반 이후 기술혁신·자동화, 디지털 전환 경제가 도래함에 따라서 지방의 근간이 되어 주었던 주력 제조업이 쇠퇴하고, 신산업 창출 지체 등으로 민간 일자리 수요 자체가 위축되고 있음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기존의 거점 산업도시들이 쇠퇴하면서 지방의 산업 및 일자리가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와 맞물려 지방소멸 가중
- 우리나라는 대도시권의 산업 경쟁력이 수도권 일극집중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산업의 일자리도 대전환의 방향에 따라서 Big3(미래차, 반도체, 바이오)산업, 이차전지,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게임·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주력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김영수, 2022)

❍ 성장의 패러다임이 기술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인적자본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게 되면 IT, R&D 등 지식기반 고숙련 일자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계속해서 만들어지지만 지방에서는 기존 주력 제조업이 쇠퇴하게 되면서 지역 일자리가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 발생(박진경, 2024)
  - 현재 청년세대는 고학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의 보수나 근로환경 등 만족할만한 일자리가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대도시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향성이 더 커지고 있는 문제

❍ 대도시 지역으로의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의 인적자원 부족은 지역의 문제해결 역량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공동체마저도 붕괴시켜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인구학적 메커니즘에 따르면 지역의 인구감소는 본질적으로 인구유출에 의해 발생하며, 인구유출은 지방의 인구감소 및 지역축소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근인변수(이상림, 2018)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문제는 자연적 인구감소보다는 국가가 Zero-Sum으로 인식해 외면하고 있는 사회적 인구유출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박진경 외, 2019)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자되고 있지만 지방소멸위기지역들은 전체 사업체의 90% 이상이 종사자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분포하고 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 할 수 없고,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일자리 관련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기에도 역부족(행정안전부, 2023)
  - 지역인재가 지역을 떠나는 문제를 완화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

□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지역발전정책 속에서의 청년정책(지역의 재발견) 추진 필요

❍ 시대전환기 요즘 청년들은 경제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을, 경쟁보다는 연대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조성철 외, 2019)

- 시대적으로도 디지털 시대 도래, SNS 발달 등으로 장소의 제약이 희미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장소의 문화적 매력이 중요한 시대

❍ 경제가 성장하고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탈물질주의 사회에서는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이 성공하고, 그러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역이 번영함(박진경·김도형, 2020)

- 지방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 고유한 역사성과 문화적 맥락을 드러내는 장소성을 개발할 수 있다면 청년유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관련사례도 점차 등장하고 있음(마쓰나가 게이코, 2015)
-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로컬'이 부상하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 지역의 다양한 가치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정책과 청년정책의 연계 필요

| 표 3-17 | 지역청년 지원 관련정책의 한계

구분	법률	소관부처	한계
청년정책	청년기본법	국무조정실	• 청년의 기본권 보장 • 전국 공통의 청년 권익, 사회경제적 지원 규정
청년고용·일자리정책	청년고용법	고용노동부	• 전국 공통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직업지도 및 교육 규정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이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창업 또는 취업의사가 있을 때에만 지원 가능
지역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지원 규정 •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음 •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특별법 형식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행정안전부	•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원 규정 •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음

3. 중앙부처별 하향적·산발적 청년정책 추진

□ 지역청년과 지역이 상향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추진 필요

❍ 중앙부처가 저마다의 입장에서 부처의 미션에 맞게 청년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종합적인 정책이 되어야 할 청년정책이 정책의 대상이 청년일 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

- 가령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일자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등 특화된 부처 미션에 맞게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지역에 무관한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사업여건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용노동부의 사업추진방식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전국 각지의 지방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므로 수직적·경직적이어서 지역과의 정책적 접점 부족

❍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의 활력은 정책의 지속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선순환의 동력이 됨

- 지역마다 다른 산업과 일자리 특성, 청년인구 유출 특성, 지역의 자산과 매력 등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여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

□ 사업간 연계를 기반으로 융복합 사업 추진 필요

❍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창업,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지원 등 각각의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업이 아니라 주거·복지·공동체 등 융복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도록 융복합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이 지역에 탐색·유입·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 청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증대로 지역공동체 발전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 청년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정착하여 경제, 문화, 재생 등 지역사회가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필요

제 4 장
지역청년 지원 정책사례

제1절 청년유입거점 조성 정책사례
제2절 지역청년 일자리사업 정책사례
제3절 지역청년 인재교류 및 파견 정책사례
제4절 수도권-지방 연계협력 정책사례
제5절 다부처 협업 정책사례
제6절 소결

04 지역청년 지원 정책사례

제1절 청년유입거점 조성 정책사례

1. 서울청년센터

□ **추진배경 및 목적**

○ 서울청년센터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정책 종합 지원센터로 2023년 12월 현재 서울광역청년센터 1개소와 15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고 향후 자치구별로 확대 예정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와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을 추진 근거로 하여 설립

○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청년의 희망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본 기관이 청년정책의 전달·수행·확산을 담당하는 매개체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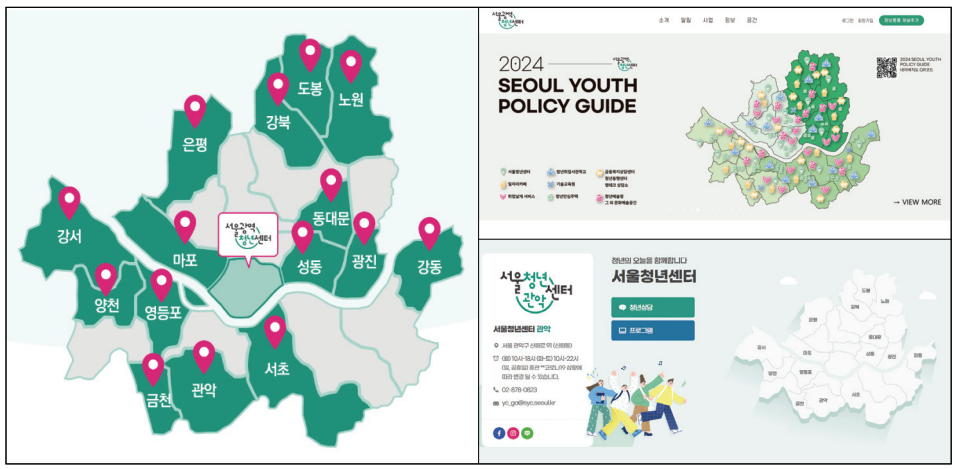
-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활력 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며 밀도 높은 교류와 협력으로 청년정책 성과확산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한편 서울 전역에 운영 중인 15개의 서울청년센터는 청년을 대면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청년을 위한 '전담인력'의 필요성을 충족하고자 마련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세부 조직

- 지역의 다양한 청년을 매개하는 공간이자 청년의 생활권에 기반한 물적·인적 서비스를 연결하는 거점일 뿐만 아니라 청년이 정책의 공급자 또는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

- 현재 강서, 양천, 영등포, 금천, 관악, 서초, 마포, 은평,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 성동, 광진, 강동 등 15개 자치구에 분포

| 그림 4-1 | 서울청년센터: 광역센터 및 자치구 센터



자료: 서울광역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smyc.kr/
서울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orang/oranglndex.do

□ 추진내용

❍ 서울청년센터는 광역센터와 자치구 센터 간 위상에 따라 업무 내용과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강조

- 광역센터는 사업의 운영 및 조정, 성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자치구 센터는 청년지원매니저를 통해 상담, 커뮤니티 참여 등 현장 중심적임

❍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정책사업, 심리치료, 지역지원, 대외협력 등과 관련하여 15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고, 해당 사업별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 본청 또는 관련 조직, 민간기업 등과 청년지원조직 및 청년 개인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기능
- 청년수당 사업관리에서부터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정보망 운영 및 관리, 대외협력 및 교류 추진 등 주요 청년정책의 실무 담당

| 표 4-1 | 서울광역청년센터 사업 현황(24년 9월 기준)

구분	사업명	내용
정책 사업	청년수당 참여자 지원 및 모니터링	• 청년수당 참여자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 • 참여자의 활력 및 역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년수당 참여자 행사	• 청년수당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및 활력박람회(상반기) • 청년수당 참여자 수기공모 등 성과공유행사(하반기)
	청년정책 연구 및 포럼	• 국내외 청년 이슈 및 정책을 연구하고 전문가 포럼 개최
청년 마음	서울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 유형별 심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청년에게 맞춤형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지역 지원	서울청년센터 공간활성화 사업	• 센터이용객 증가를 위한 공간활성화활동 및 공간테마 조성
	서울청년센터 성과평가 및 관리	• 서울청년센터 성과관리 및 평가, 맞춤형 컨설팅
	서울청년센터 전문인력양성	• 청년지원매니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기본/심화/특강)
	서울청년센터네트워크 및 운영지원	• 정책 및 현장 흐름에 맞는 사업운영매뉴얼 개정 • 서울청년센터 통합홍보 및 시스템 운영 지원 • 청년지원매니저 간담회 운영
정책 정보	홍보 기획 및 채널 운영	• 유튜브 채널 및 SNS 활성화 • 언론 보도자료 배포 및 오프라인 홍보 행사 • 연차보고서 발간 등 센터 운영성과 확산을 위한 기획 홍보
	청년정책 정보관리 및 배포	• 청년정책 정보 수집 및 집적 프로세스 운영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지원정보 게시판 관리·운영 • 정보퐁퐁 정기발송 및 채널관리, 청년정보 캘린더 운영
대외 협력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MOU	• 청년유관기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협약 기관 연계사업 운영 • 서울광역청년센터 기관방문 응대 및 업무협약 진행
	외부연계사업	• 기업, 대학 등 외부연계사업 기획 및 운영 • 대외 네트워크 참여 및 사업홍보 • 청년지원 자원 발굴 및 연계 확대
	청년국제교류	• 국내외 국제기관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해외청년기관 방문 및 청년정책 교류
	청년사회안전망	• 청년사례 발굴 및 지원방안 모색 • 유관기관 연계협력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한 인프라 강화 • 맞춤형 서비스 제공 패스트트랙 구축 • 생애주기 및 영역별 맞춤 지원 운영
경영 지원	대관 및 공간관리	• 청년공간 모임 지원을 위한 실시간 대관접수 및 운영 등 • 청년이용객들이 상시 이용가능한 공용공간 제공

자료: 서울광역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smyc.kr/.

○ 한편 자치구 단위 서울청년센터는 청년의 직접 방문 및 소모임 프로그램 진행, 공간 대관 등의 청년 체감형 사업 위주로 추진

| 표 4-2 | 서울청년센터 사업 현황(24년 9월 기준)

구분	사업	내용
상담연계	종합상담	•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직접 방문 또는 문자, 카카오톡으로 맞춤형 상담 및 정보 제공
	두시티톡	• 또래 청년과의 대화 및 소통 프로그램
사회적관계망	커뮤니티 참여	• 관심 및 고민을 공유하는 소모임 프로그램
지역특화	동네정보퐁퐁	• 서울시 및 정부정책, 동네정보 등을 주기적 발송
공간	공간 이용 및 대관	• 청년센터의 항시 이용 및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

자료: 서울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orang/orangIndex.do.

□ 추진체계

○ 서울청년센터는 서울본청 내 미래청년기획관 소관업무에 해당

- 미래청년기획관의 전신인 청년청이 21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현 체제로 변경
-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정책담당관과 청년사업담당관으로 구분되고 각각 4개의 팀으로 구성

| 그림 4-2 | 서울본청 미래청년기획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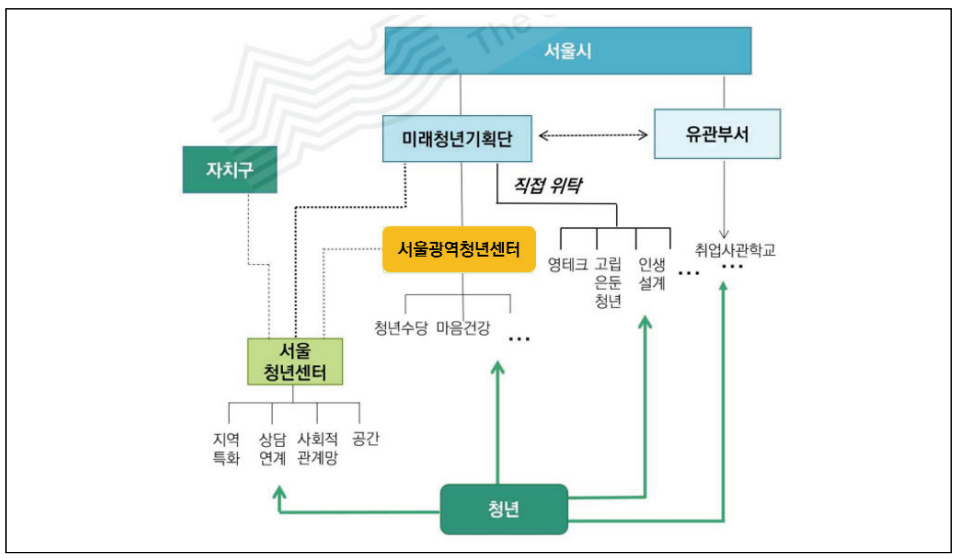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청 https://org.seoul.go.kr/org/orgChartView.do.

❍ 서울청년센터의 관리감독 내지 민간위탁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청년공간팀이지만 미래청년기획관 내 많은 팀이 센터와 업무가 연계되는 구조임
- 예컨대 청년정책 정보제공사이트인 청년몽땅정보통의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은 청년정책팀이지만 해당 사이트 내 청년지원정보 게시판 관리·운영, 정보수집 및 집적 프로세스 운영 등은 센터의 업무에 해당
- 또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총괄은 청년활력팀에서 맡고 있지만 사업을 신청한 청년의 심리상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센터의 몫
- 이밖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문화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서울문화재단 등 여러 조직 및 기관과 연계협력 추진

❍ 현재 서울광역청년센터는 민간위탁체제로 현재 사단법인 희망가치가 운영을 맡고 있고, 서울청년센터는 민간위탁 또는 서울본청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현재 자치구 이관을 추진 중인 상황
- 서울청년센터 중 동대문, 서초, 강서, 금천 등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서울본청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음

| 그림 4-3 | 서울청년센터 추진체계



자료: 변금선(2023).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p.42.

□ 성과 및 시사점

❍ 서울시는 청년센터의 역할을 단순 활동공간이 아닌 청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전달체계로 재정립하고자 청년공간 재구조화 추진

- 과거 청년활동지원센터(1개소), 청년허브(1개소), 서울청년센터(12개소), 무중력지대(6개소), 청년교류공간(1개소) 등 뚜렷한 정체성 없는 청년정책 공간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2년 재구조화를 단행하여 현행 서울광역청년센터(1개소)와 서울청년센터(15개소)로 정책 전달체계를 체계화함

❍ 그리하여 서울청년센터는 공공과 청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광역센터와 자치구 센터로 세분화된 정책전달체계를 통해 명확한 역할 포지셔닝 추구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서울청년센터는 본청 등 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구조 속에 청년의 이해와 수요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총괄적인 청년정책 집행 기구로서 역할 담당
- 청년센터를 사업을 조정 및 운영하는 광역 단위와 현장 대응 중심의 자치구 단위로 구분하여 실행 여건과 수요에 맞는 정책전달체계를 구현

❍ 서울청년센터는 정책 일선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창구 역할 담당

- 취약 청년의 사회안전망이자 청년의 니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업 등과의 민간협력을 통해 유연하면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이 제시되는 정책의 장(場)으로서 기능
- 실제 서울청년센터 노원은 취약·위기 청년을 발굴 후 나눔냉장고 사업을 연계해 식품을 지원하고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서울청년센터 강북은 KB금융공익재단,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함께 청년 재무교육과 금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선도 사례 도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향후 행정조직과의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 센터의 운영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화될 필요가 있음

2. 청년취업사관학교

□ 추진배경 및 목적

❍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서울시가 취업의지가 있는 20·30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디지털 신기술 실무역량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최초 설립 이후 현재까지 17곳의 캠퍼스를 운영 중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SW) 개발을 전공하지 않은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미스매칭을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5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확대 조성하여 연간 3,500명 정도의 인재를 배출할 계획임[5)]

❍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Seoul Software ACademy)의 브랜드 '새싹'은 디지털 혁신 인재의 새로운 싹을 틔워 성장시키고, 취·창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 용어로 필요기술(Funtionality), 현장중심(Field), 유연함(Flexibiliity)을 핵심 키워드로 상정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의 기술 트랜드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여 청년의 취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림 4-4 | 청년취업사관학교 핵심 키워드



자료: 청년취업사관학교 https://sesac.seoul.kr/common/greeting.do

5) 뉴시스. 오세훈 "청년취업사관학교로 연간 3,500명 인재 키우겠다" 2024.8.2. 보도.

□ 추진내용

❍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양질의 커리큘럼과 강도 높은 교육,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 최적화된 학습 환경 등을 갖추고 있음

- 실제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커리큘럼은 200개가 넘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마련되었으며, 어플리케이션(앱) 개발·인공지능(AI)·로봇 등 소프트웨어 분야와 디지털마케팅, 서비스 기획 디자인 기술 분야 등 구인난이 심각한 신산업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

| 그림 4-5 |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환경



자료: 청년취업사관학교 https://sesac.seoul.kr/common/greeting.do.

❍ 특히, 신한투자증권, 현대IT&E, SK쉴더스 등 기업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일자리 연계 코스를 운영하여 실질적 성과 도출

- 2023년 본격적으로 도입한 '기업형 주문과정'은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기획해 교육생을 채용까지 연계되는 방식으로 기업, 교육생 양쪽 모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2023년 14개에서 2024년 30개로 확대하여 추진

❍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수강생 모집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청년이며, 수강 관련 모든 비용은 무료임

- 단, 교육 의지 제고를 위해 예치금을 선납하고 수료후 반환하는 시스템

- 교육선발과정은 청년이 수강신청을 하고 기초지식테스트와 면접을 거친 후 합격자로 선정되면 취업을 원하는 분야별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3-6개월의 교육과정이 진행되며, 청년들이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점심 식사도 제공

| 그림 4-6 |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과정

교육대상	정의	교육특징	교육기간	목표
A그룹 (80% 내외)	기초레벨 이상의 학습수준을 갖춘그룹 활용과정: Working-Level Developer	› 현장실전형 중심	3개월 ~ 6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동이 가능한 주니어개발자 수준의 SW인재 양성
Pre-A그룹	SW개발 분야에 관심과 학습 의지가 있는그룹 입문과정 - Start-Level Developer	› 자기주도 학습&코칭	1주 ~ 2개월 내외	A그룹 수준 진입
Post-A그룹	실무 레벨 업이 필요한 현업 재직 및 활동그룹 재직자 과정 - Developer-Level	› 재직자 실무 역량강화 과정		실무 레벨 업

자료: 청년취업사관학교 https://sesac.seoul.kr/common/greeting.do

❍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캠퍼스별로 특화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되며, 지역산업 및 특성을 반영한 캠퍼스 특화 운영 추진

- 특화형 캠퍼스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웹 등 소프트웨어(SW) 개발 과정 또는 디지털마케팅, 서비스기획 등 디지털전환(DT) 과정을 선택 운영하며, 종합형 캠퍼스는 두 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곳으로 캠퍼스별로 상이
- 또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캠퍼스 운영 사례로 동대문 캠퍼스는 지역 산업인 뷰티산업 디지털마케터 관련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봉 캠퍼스는 만화 '아기 공룡 둘리'의 고향인 도봉의 지역성을 반영한 웹툰 제작사 취업과정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함

❍ 이밖에 전담 취업 상담원(잡코디) 배치, 수료생의 네트워킹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문회 구성, 다양한 취업 기회와 미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새싹 페스티벌 개최 등 청년의 취 · 창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잡 코디는 희망교육 탐색부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검토까지 원스톱 지원
- 청년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하는 매칭데이를 주기적으로 실시

- 취업 교육 외 오랜 구직준비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

| 그림 4-7 | 청년취업사관학교 지원 프로그램



자료: 청년취업사관학교 https://sesac.seoul.kr/common/greeting.do.

□ 추진체계

❍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
-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기본계획 수립, 교육파트너 및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신규 캠퍼스 조성, 캠퍼스 지도 점검 및 민원 대응, 채용관심기업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함
- 서울경제진흥원 교육본부는 캠퍼스별로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운영

❍ 한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은 사업기획 및 공모, 평가 절차 등을 통해 선정된 역량 있는 교육파트너를 통해 추진
- 교육과정별로 전문성 있는 교육파트너를 선정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IT 기술 트랜드 변화 및 청년 수요 등에 유연적으로 대응

□ 성과 및 시사점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거쳐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누적 취·창업자수는 2,012명, 누적평균취업률은 74.9%에 달함[6)]
- 이러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취업률은 정부가 운영하는 유사 프로그램보다 10%p 높은 편임

6) 서울경제. 취업률 75% … 믿고 가는 '청년취업사관학교'. 24.5.26 보도.

❍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겨냥한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 직업연계과정의 취업률은 90.4%에 달함
- 클라우드 기반 금융 ICT개발자 양성과정은 100% 취업률 달성

❍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찾는 교육생 수도 가파르게 늘어나 설립 첫해 224명이었던 교육생 수는 2023년 2,304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 이 중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료비율은 90%에 육박하여 사업의 내실 또한 매우 양호

❍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만족도 또한 높아 2023년 조사결과, 교육생의 90.5%가 교육 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2.4%에 불과
- 취업률과 교육만족도가 입증된 만큼 청년의 사업 참여율도 높아져 2023년도 교육과정의 모집경쟁률은 3.9대1이었으며, 수료생 4명 중에 3명(75%)이 취·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남[7)]

❍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과 기업을 잇는 매개체로서 SW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이를 공급하는 중간자 역할 담당한다는 점에서 의의
- 청년의 측면에서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인재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고 기업의 측면에서 변화하는 현장 인력 수요에 빠르게 대처해 구인난을 해소
-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문과생, 구직단념 청년 등을 첨단 디지털 인재로 육성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양질의 교육뿐만 아니라 전담 취업상담원의 맞춤형 상담, 매칭데이, 취업연계 프로그램 추진 등 청년의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함

❍ 캠퍼스별 특화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배출의 산실로 활용하고 있는 점 또한 유의미

7) 세계타임즈. 청년일자리 해결사 청년취업사관학교, 2천번째 취업자 탄생…올해 20개 캠퍼스 확대. 24.4.29 보도.

3. 미국 포틀랜드 ADX(Art Design Xchange)

□ 추진배경 및 목적

❍ ‘포틀랜드를 독특하게 유지하라(Keep Portland Weird)’라는 도시 슬로건으로 유명한 미국 오리건주 북서부에 위치한 포틀랜드시는 지역의 개성을 살린 로컬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년의 유입과 정주를 강화한 사례

- 지역 상품 구매를 독려하는 ‘바이 로컬(Buy Local)’ 소비자 운동이 활발한 포틀랜드는 전통적으로 소상공인과 독립 상점을 보호하는 도시로 유명
- 이처럼 로컬의 가치를 강조하고 로컬브랜드가 잉태될 수 있는 특유의 도시 여건과 환경 등은 이를 향유하거나 지역에 머물며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고자 하는 청년의 지속적인 유입과 정착을 촉진함

❍ 포틀랜드는 지역을 대표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다양한 브랜드의 산지로 청년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가치있는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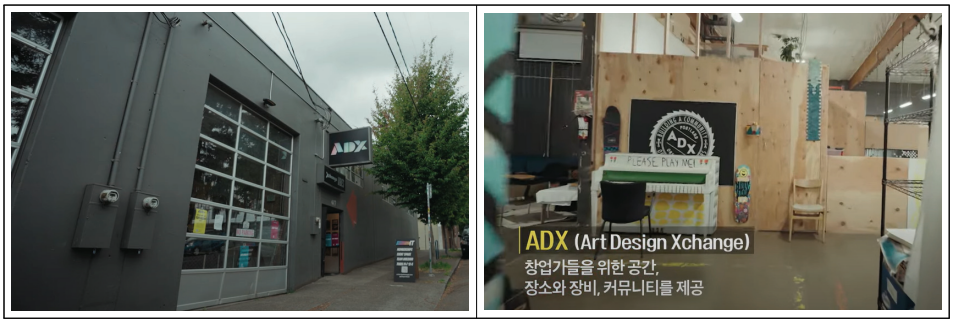
-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리더격인 스텀프타운 커피 로스터스(Stumptown Coffee Roasters)를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서점인 파월스 시티 오브 북스(Powell’s City of Books) 등 로컬 브랜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 형성
- 청년은 내가 사는 곳의 상품을 소비하는 가치를 느끼는 지역주민이자 지역에 잠재하는 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창업으로 활성화하는 경제주체로 역할

□ 추진내용

❍ 포틀랜드에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으며 그 중 ADX는 대표격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2011년 설립(모종린, 2023)

- ADX(Art Design Xchange)는 창업가들을 위한 일종의 공유형 공방으로 멤버십 형태로 운영
-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한 회원을 위한 개인 작업공간이 주어지고 회의실 등의 장소와 장비와 도구, 커뮤니티 등이 제공되며 처음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을 위한 별도의 클래스와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음
- 이밖에 방문객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 원데이클래스, 이벤트 등도 개최

| 그림 4-8 | 미국 포틀랜드 ADX



자료: KBS부산.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1부 골목위의 콜럼버스. 24.7.24 방송.
https://youtu.be/IBy7qXVBsZ4?si=5FQ1G2E3QL45DIjY

❍ 청년의 창업 및 기술력을 지원하는 ADX는 지원하는 분야(목공예, 금속, 프린트, 보석공예 등)가 다양하여 다수의 창업 아이템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개방적이면서도 독립적이고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공간 활용 역시 가능

❍ 또한, ADX는 메이드 히어(MadeHere) PDX, 메이커 협동조합 포틀랜드 메이트 컬렉티브(Portland Made Collective) 등과 협력하여 창작자의 판로 구축

- 메이드 히어 PDX는 2014년 포틀랜드에서 만든 독특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느낀 지역 기업가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로 'made in Portland'의 가치 지향함

| 그림 4-9 | 미국 포틀랜드 메이드히어(MadeHere) PDX



자료: KBS부산.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1부 골목위의 콜럼버스. 24.7.24 방송.
https://youtu.be/IBy7qXVBsZ4?si=5FQ1G2E3QL45DIjY

□ **추진체계**

❍ 지역 창업을 지원하는 시 산하기관으로 프로스퍼 포틀랜드(Prosper Portland)가 있음(KBS부산, 2024)

- 포틀랜드 사업체의 95%가 소규모 사업체로 이른바 동네상권은 포틀랜드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단위로서 청년의 주무대 역시 바로 동네 즉, 마을임
- 프로스퍼 포틀랜드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규모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기술 지원과 자문 등을 제공하며 매년 약 1,100개의 사업체를 지원

❍ 또 다른 기관으로서 시에서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인 벤처 포틀랜드(Venture Portland)는 스몰비즈니스 인큐베이팅 등의 역할 수행

- 벤처 포틀랜드는 도시를 50개 지역상권으로 나눠 상인회와 주민단체를 통해 상권활성화를 지원

❍ 시 정부는 건축자재 재활용과 상가 건물 리모델링 등을 지원(모종린, 2023)

- 리빌딩센터(Rebuilding center)는 중고 건축 자재를 회수하여 판매하는 비영리 단체로,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독특하고 저렴한 자재 및 비품 보유
- 상업용 변경-세입자 개선 건축 허가(Commercial Alteration-Tenant Improvement Building Permit) 프로그램을 통해 상업용으로 용도 변경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 수리 및 개보수 허가를 해주고, 전기, 배관, 안전 등 세입자의 상업 허가시 필요한 정보 및 상담, 지원 등을 제공

□ **성과 및 시사점**

❍ 포틀랜드는 지역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지속 유지하고자 하는 대전제 하에 지역과 청년이 상생 발전하는 방법을 보여준 사례로서 의의

- 트랜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 가능한 청년은 포틀랜드가 지속적으로 독특하게(Continuous Weird) 유지될 수 있는 핵심 자원임

❍ 그 과정에는 ADX를 위시한 메이커스페이스와 로컬 브랜드 플랫폼, 그리고 스몰비즈니스 인큐베이팅, 건축디자인 지원 등 시의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의 유입과 정주를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임

제2절 지역청년 일자리사업 정책사례

1.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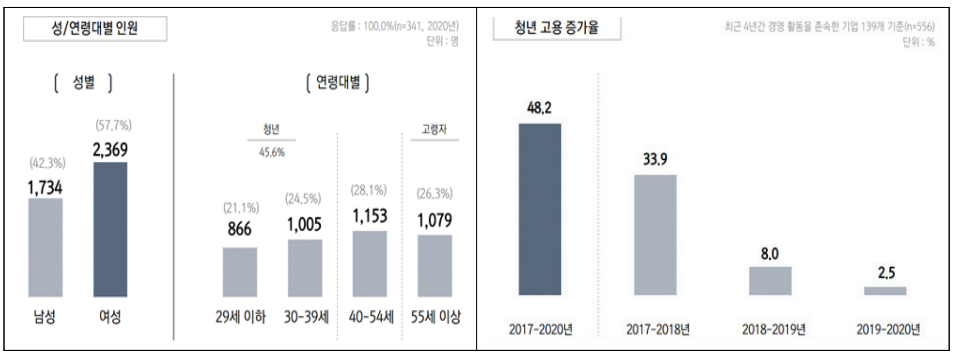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인구감소 및 청년인구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청년 유입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청년 인력에 대한 높은 고용 의지를 반영하여 구상된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

-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본 사업은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실제 청년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경북도의 인구 현상과 달리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청년 고용인력의 정착은 증가하고 있어 청년을 유입하는데 긍정적인 지점으로 확인됨

- 2020년 기준 경북도 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용인원 중 절반가량은 39세 이하 청년으로 나타남
- 최근 4년간(2017-2020년) 사회적경제 기업의 청년고용증가율은 2017년 대비 48.2% 증가함

| 그림 4-10 | 경북 사회적경제 기업의 연령대별 고용인원 및 연도별 청년고용 증가율



자료: 경북사회적경제센터(2022). 2021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영분석 보고서.

❍ 삶의 목표 및 방향과 부합하는 좋은 일자리에 관한 관심 및 참여 의지가 증대하는 최근 청년 일자리 트랜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
- 과거와 달리 현재 청년들은 의미 있는 경험과 소비, 일상의 여유를 중요시하는 생활패턴과 함께 스스로 결정하고 만족하며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추세로 기성세대와 달리 평생직장이라는 안식처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편
- 사회적경제 기업은 소셜 미션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를 결정하며 사회 혁신 활동을 주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에게 다양한 삶의 자극을 주고, 단순 취업처를 벗어나 사회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궁극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과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함
-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 미션이 청년의 가치관과 부합함으로써 상생 발전의 관계 형성

□ 추진내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양질의 청년 인력 확보 및 실무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 만 18세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참여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행안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등 일정한 참여자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시 참여청년의 근로개시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인건비(연간 2,160만 원)를 지원하고 정착지원금(연간 420만 원), 직무교육지원, 네트워킹 등을 지원함
-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일자리 면접 및 매칭을 돕고 실무 중심형 커리큘럼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의 극대화를 지원하는 한편 경북지역 정착을 위한 별도의 경비 및 참여청년간 연대감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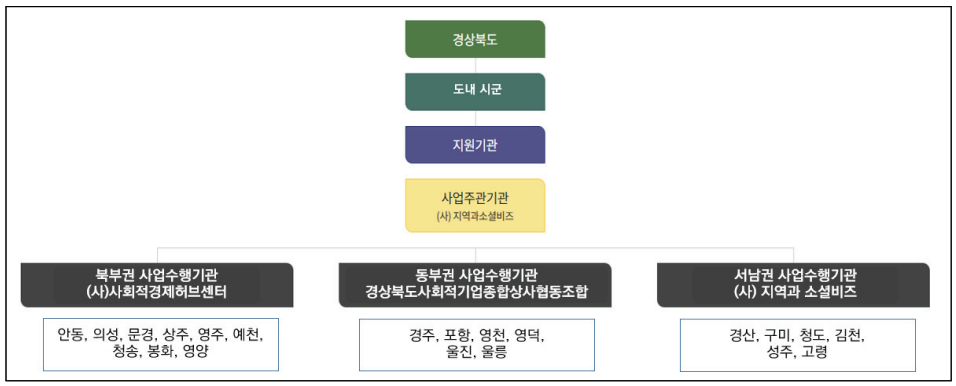
- 참여기업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의 인건비 지원과 함께 인사노무 및 회계세무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
- 참여청년과 기업을 동시 지원하고자 매월 현장방문하는 전담매니저 운영

□ 추진체계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경상북도, 소속 시군, 사업주관기관, 권역별 운영지원기관 등의 체계를 갖춤

- 경상북도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며 예산 및 규모 등을 결정
- 시군은 시군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 사업공모를 추진하고 보조금 교부 관리 등을 담당함
- 사업주관기관인 (사)지역과 소셜비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관리, 기업 및 청년 모집 공고, 경북 전역 DB관리 등 사업 전반을 담당
- 권역별 운영지원기관은 지역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관리하고 현장지원 매니저 파견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을 담당함

| 그림 4-11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체계



자료: 경북사경청년109홈페이지 https://www.gbyouth.kr/main.asp.

□ 성과 및 시사점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의 채용률은 평균 90%로, 경북 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배정인원 대비 채용인원 채용률 평균 90% 이상 유지하고, 고용인원 중 정규직 채용 성과는 평균 82% 이상에 달함

| 그림 4-12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사업참여현황

채용인원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배정인원(명)	213	805	617	287	223	2,145
채용인원(명)	203	712	543	251	201	1,910
채용률	95%	88%	88%	87%	90%	90%

정규직채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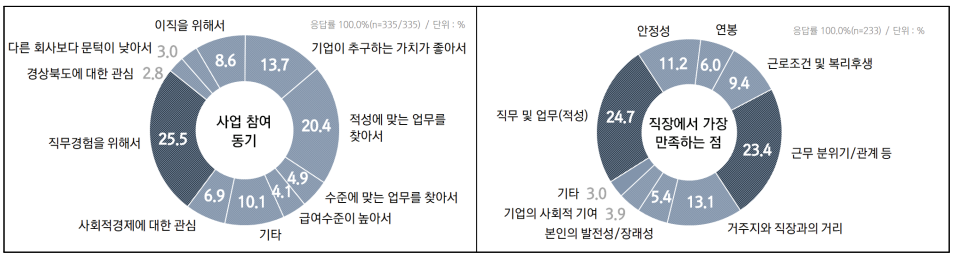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채용인원(명)	203	712	543	251	201	1,910
정규직(명)	179	604	451	189	134	1,557
비율	88%	85%	83%	75%	67%	82%

자료: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50선.

❍ 본 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성에 맞는 업무와 근무 만족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 동기 측면에서 직무 경험과 적성에 맞는 업무를 찾아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직장 만족도는 업무와 근무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

| 그림 4-13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만족도 조사(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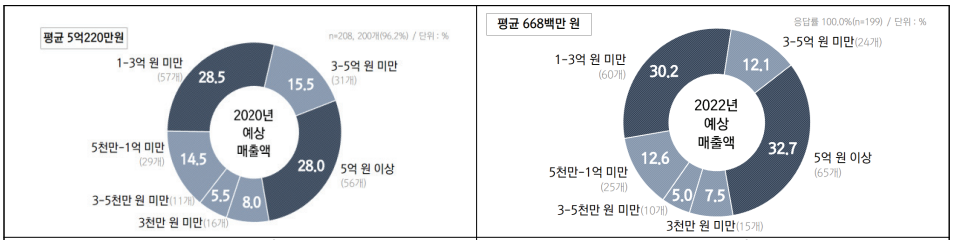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50선.

❍ 또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상 매출액 조사 결과,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한 도내 기업 매출액 상승

- 2020년 예상매출액은 평균 5억220만 원이었으나 2022년 예상매출액은 6억 6,800만 원으로 증가

| 그림 4-14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예상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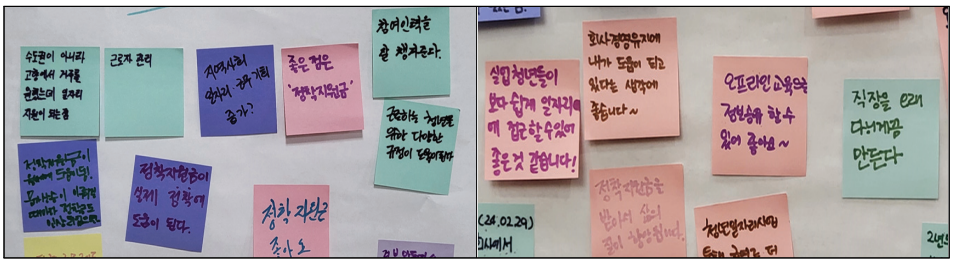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50선.

❍ 본 사례는 사회적 가치 실천을 선호하는 MZ세대(청년) 취업 경향에 맞춰 기업을 매칭함하여 고용 창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 새로운 경제 주체로 떠오른 MZ세대가 소비와 취업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사업을 구상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유출 방지와 유입을 촉진하고 인력난과 구직난의 미스매치 해소

❍ 또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정착지원금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이 약한 취업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추진력 및 지속성을 강화함

| 그림 4-15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청년 간담회 의견



자료: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50선.

2. 무주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 추진배경 및 목적

❍ 2023년 기준 인구 2만 3천 여 명의 전북 무주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하나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

- 고령화되는 지역 농가의 인력 확보는 물론 첨단 스마트화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년 유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추진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환으로서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청년과 농가(기업), 지역 모두를 위한 긍정적인 대안으로 인정받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될 계획임

-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첨단 농업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스마트팜 산업 성장의 기반 조성

□ 추진내용

❍ 본 사업의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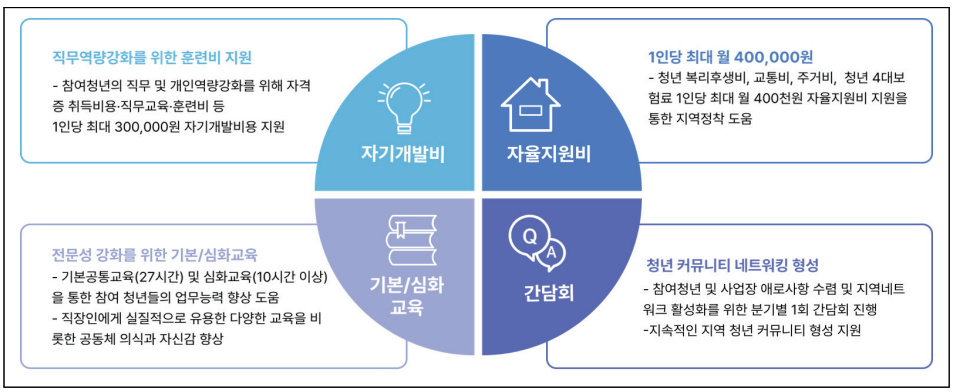
- 현재 무주군 스마트팜 사업장 4개소에서 7명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스마트팜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자기개발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함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기본(27시간) 및 심화(10시간 이상) 교육으로 구분된 맞춤형 교육 실시
- 자기개발비 지원: 참여청년의 직무 및 개인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비용이나 훈련비 등으로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

- 복리후생비 지원: 참여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교통비, 주거비, 문화생활비 등의 비용을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 네트워크 지원: 참여청년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애로사항 및 정책발굴을 위한 군수와의 간담회도 연1회 진행

| 그림 4-16 |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추진내용



자료: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50선

❍ 이밖에 스마트팜 분야 선진지 견학, 사업장 대표 및 담당자 간담회 등을 운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추진체계

❍ 본 사업은 무주군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추진되며, 무주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무주군은 참여청년과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정책개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

❍ 무주군 일자리센터는 본 사업의 실무적인 부분을 맡아 사업 전반을 운영·관리
- 참여사업장 및 참여청년 모집 선발 과정에서부터 참여청년 전문컨설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역정착율 향상과 개인별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며 해당 수행기관의 위탁 운영비는 100% 군비로 추진

□ 성과 및 시사점

❍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팜이라는 신농업시대 지역산업의 체질 개선,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주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을 모두 방점에 두고 있는 사업

- 청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스마트농업 경쟁력 강화
- 스마트팜 산업 분야로의 이행기반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사업은 마중물이 되어 관련 인재 양성 및 정보 제공 등을 실시

❍ 기업과 청년 양측 사업 참여자 모두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인건비 외 무주군은 사업참여청년에게 복리후생비로 월 4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지역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함

| 그림 4-17 |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참여자 인터뷰



자료: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50선.

제3절 지역청년 인재교류 및 파견 정책사례

1.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 추진배경 및 목적

❍ 일본은 2004년을 기점으로 총 인구(12,784만 명)가 감소하고 향후 지속 감소를 전망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해당하는 도쿄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인구의 불균등 분포가 심화하는 문제점 봉착(이근우, 2019)

- 2060년 1억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도쿄일극집중을 지양하고 인구를 전국에 고르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각종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고 지역부흥협력대도 그 일환에 해당

❍ 2009년 일본 총무성은 인구감소로 인한 시정촌의 소멸 및 쇠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도시청년의 시골파견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부흥협력대를 제도화함

- 지역으로 파견된 지역부흥협력대원이 1년에서 3년의 기간 동안 과소지역 등의 조건불리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하며 지역 브랜드나 지역 상품의 개발·판매·PR등의 지역부흥지원이나, 농림 수산업에의 종사, 주민 지원 등의 지역협력활동을 실시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지역에서의 정주 및 정착을 도모하는 정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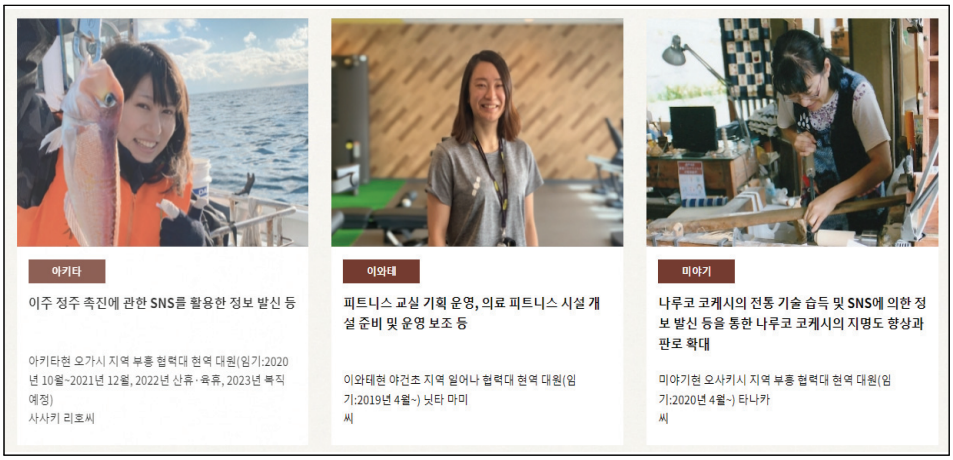
□ 추진내용

❍ 지역부흥협력대는 정책추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전출지와 전입지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전출지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전입지는 상기한 3대 도시권 외 모든 시정촌이 가능하며, 3대 도시권 내에서는 조건불리지역에 한함

- 3대 도시권은 수도권(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야마나시현)과 중경권(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긴키권(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시가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등임
- 협력대원으로 위촉되면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고 이미 해당

지역에 정주 또는 정착하고 있는 경우는 원칙상 협력대원 모집대상에서 제외하나 이전 활동 경험 보유자나 유사 사업 참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그림 4-18 | 지역부흥협력대 활동사례



자료: 일본총무성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

❍ 지역부흥협력대원이 되는 과정은 과소지역 자치단체 모집공고에 따른 참가자의 신청을 통해 추진되고 이후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대원으로 최종 선발하는데,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선정되면 최대 3년 활동가능하며 1년간 인건비 최대 400만 엔을 지원받음(이근우, 2019)

- 최종선발된 지역부흥협력대원은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며 지자체는 위촉한 협력대원에게 인건비 등의 보상 지급
- 이 중 보상비는 최대 200만 엔이고 주거비, 차량대여비, 활동여비 등 필요 경비로 최대 200만 엔 지급
- 단, 지역협력활동에 꼭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대원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연간 250만 엔까지 지급하나 이 경우에도 지급총액은 연간 400만 엔으로 상한 책정
-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임기가 끝난 후에도 창업 또는 기업승계에 필요한 경비로 1인당 최대 100만 엔까지 지급

□ 추진체계

❍ 총무성 자치행정국 지역자립응원과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역부흥협력대 촉진을 위한 특례조치로써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게 재정 및 홍보 등을 지원(이근우, 2019)

- 일본 총무성은 지역부흥협력대원 모집 활동을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지자체에게 최대 200만 엔을 지원하고, 주민과의 교류를 포함한 2박 3일 이상의 지역협력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자체에게는 최대 100만 엔 지원
- 도시 주민 유치 선진 사례 및 관련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함

❍ 지역부흥협력대 관련 실무는 사단법인 이주·교류 추진기구(JOIN)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제도 전반이나 모집, 상담, 홍보 등을 담당함

- 지역부흥협력대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모집정보 안내 및 매칭 지원, 사업홍보, 대원들 간의 네트워킹, 전문적인 상담 등의 다각적인 역할 수행

| 그림 4-19 | 지역부흥협력대 지원 홈페이지



자료: 사단법인 이주·교류 추진기구 지역부흥협력대 https://www.iju-join.jp/chiikiokoshi/

❍ 이밖에 이주를 원하는 지원자들의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한 스마우트(SMOUT)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8)]

8) 오마이뉴스. 도시버리고 떠난 이들 위한 현실 조언 가이드: 책 〈도시버리기〉를 읽고. 23.7.7 보도.

- 스마우트는 지자체, 지역사업자, 개인 등이 이주자와 지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직접 스카우터처럼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으로 인구 과소지역 특성상 외부인력 유입이 어렵기에 지역의 활기와 매력을 전하는 장으로 지역부흥협력대를 모집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활용

□ 성과 및 시사점

❍ 일본 정부는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이 도시 인구를 지방에 이주시키는 데 일정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협력대원 및 지자체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중임
- 도입 첫해인 2009년 89명에 불과하였던 지역부흥협력대는 2018년 말 기준 총 5,530명 대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책으로 거듭났으며 참여지자체의 수도 동기간 31개에서 1,061개로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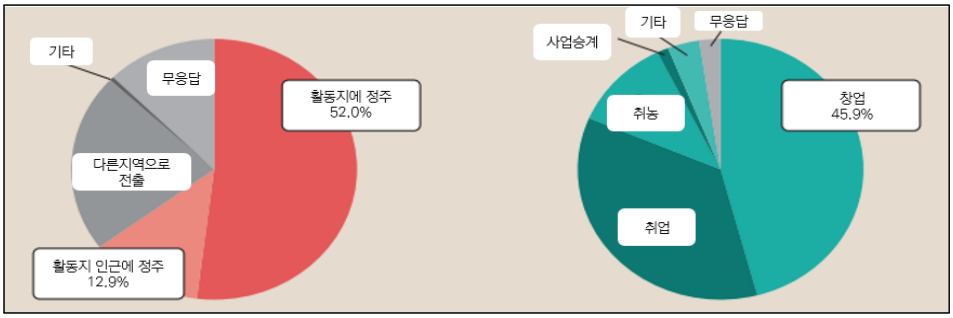
| 표 4-3 | 지역부흥협력대 대원 및 지자체 수

연도	인원	지자체수	도도부현 수	시정촌 수
2009	89	31	1	30
2010	257	90	2	88
2011	413	147	3	144
2012	617	207	3	204
2013	978	318	4	314
2014	1,629	444	7	437
2015	2,799	673	9	664
2016	4,090	886	11	875
2017	4,976	997	12	985
2018	5,530	1,061	11	1,050

자료: 일본총무성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

❍ 특히, 2017년에 작성된 총무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력대원 중 약 65%가 활동지나 인근지역에 정주하고 있었고, 동일 시정촌에 정주한 대원의 약 46%가 창업 중일 정도로 성과 확실

| 그림 4-20 | 지역부흥협력대 실태조사



자료: 일본총무성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

❍ 지역부흥협력대는 단순히 청년 유치와 같은 가시적·단기적 성과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유입한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창업지원 등 청년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활동 연계가 있었기에 지속 가능하였음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청년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보상함으로써 향후 지역 내 정착하고 홀로서기할 이들을 인큐베이팅하고, 임기 후 지역 창업, 기업승계 등 역시 현물 지원함으로써 정주 의사 결정에 대한 상대적 부담감을 낮춤
- 또한 인건비 외 필수경비로서 주거비, 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낯선 지역을 알아가는 문턱을 낮추고, 지역부흥협력대와 관련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여기에 실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다각적인 역할 강화와 온라인 채널 활성화 등 정책 접근성을 높인 점 또한 주효

- 이주·교류의 네비게이터로서 역할 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청년은 자신의 조건에 맞는 지역을 손쉽게 탐색함은 물론 현역 대원을 통한 정보 확보, 소통 등을 통해 이주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지원
- 지역부흥협력대 관련 온라인 채널은 지역이주에 관심있는 청년은 물론 청년 인구를 모집하는 자치단체도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확산하고자 적극 활용하는 창구

2. 하동 청년(마을)협력가

□ 추진배경 및 목적

❍ 2023년 말 현재 인구 4만여 명의 하동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음

- 하동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해당하며 청년인구의 유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에 따른 소멸 위기 직면

❍ 침체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지역활력 증진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

- 지역 현안 및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주도적인 맞춤형 사업 발굴 노력

❍ 그리하여 하동군은 민선8기 군정의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유급 청년(마을)협력가 파견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

-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청년(마을)협력가를 교육·양성하여 마을에 파견하는 사업 발굴
- 이때 청년(마을)협력가는 마을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침체된 마을의 활력을 제고하는 중추적 역할 담당

| 그림 4-21 | 하동군 청년(마을)협력가



자료: 경향신문. “하동군, 유급 마을협동가 파견…마을발전 ‘디딤돌’ 역할 기대”. 23.8.23.

❍ 즉, 마을코디네이터와 ICT플래너를 결합한 개념인 청년(마을)협력가는 지역 활성화 과정의 촉매제로서 기능
- 마을코디네이터로서 주민 돌봄과 소통은 물론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마을 비전 수립 등 체계적인 마을 활성화 임무를 수행
- ICT플래너로서 지역 자원 발굴 및 이를 활용한 상품 제작, 온라인 운영 등 로컬크리에이터로서 역할 수행

□ 추진내용

❍ 청년(마을)협력가는 참여를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3개월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며 수료 후 적격자 선발을 통해 희망마을 우선순위에 따라 유급 파견됨
- 사업신청은 하동군 거주 및 생활하는 청년(19세~45세)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60세 이하 하동군 거주 및 생활하는 자도 신청 가능하며 하동군이 위탁 운영하는 마을협력가 대학에서 하동학, 마을학, 자원발굴, 갈등관리와 회의 진행, 지역탐방, 현장실습 등 3개월간의 양성과정 이수 필수
- 파견대상 마을 선정은 파견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의 역량, 활동가 제도의 이해도, 활동가 수용 태세 등의 기준으로 일정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파견 기간은 총 3년임
- 협력가는 1일 8시간 주2.5일 또는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협력가 및 마을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청년(마을)협력가 인건비는 하동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수준으로 전액 군비로 지급

❍ 2023년 도입 첫 해 6명의 청년(마을)협력가를 파견한 하동군은 2024년 7월 7명의 협력가를 마을로 파견
-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청년협력가 파견 마을에 마을만들기 사업(악양 매계 마을만들기, 별천지 하동 마을 만들기 등)을 시행하고 협력가가 수행하는 마을자원 조사 및 자원 활용 과정을 통해 지역민 화합행사(북천 직전마을 돌담걷기 행사, 진교 중평3구마을 행복점심 밥상 행사 등) 추진
- 성과확산을 위해 연 1회 성과공유회 개최하여 운영상황 및 대상 활동 등을 점검·공유

□ **추진체계**

❍ 하동군 청년(마을)협력가 운영 지원사업은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담당 업무에 해당

- 지역활력추진단은 청년정책, 인구정책, 귀농귀촌, 공단설립, 엑스포 후속조치 및 대외적 성과관리 등의 업무 관장

❍ 본 사업은 원활하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마을)협력가 모집 및 양성에서부터 마을 파견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

- 최근 3년 이내 공동체 활성화 사업 또는 교육 실적이 있는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교육생 모집 및 관리, 청년마을활동가 파견 읍면 선발, 사후관리 등의 사업 위탁
- 현재 하동군은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 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 체결

❍ 이밖에 청년(마을)협력가를 지원하는 상임교수진을 구성하고, 1기·2기 협력가들을 멘토와 멘티로 결연하여 사업추진 및 효과 배가

- 협력가 파견 이후의 사업 멘토링과 갈등관리 차원에서 상임교수진이 2개 마을씩 전담 밀착 지원할 방침

□ **성과 및 시사점**

❍ 국내 최초로 도입된 유급 청년(마을)협력가는 청년의 안정적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청년(마을)협력가 파견마을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이와 비례하는 파견협력가의 근무만족도 등 실질적 측면에서 마을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

- 2023년 파견된 제1기 협력가들은 주민 돌봄과 소통은 물론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마을 비전 수립 등 체계적인 마을 활성화 임무를 수행하며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
- 또한 청년(마을)협력가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유급 보상을 통해 사업의 추진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협력가의 책무성을 강화

❍ 고령화된 지역사회 내 젊은 인력의 상시근무로 상대적으로 침체된 마을 활력 제고는 물론 마을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 마을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접근 가능

- 어르신 고독사, 마을공동체 붕괴 등 당장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지역의 다양한 정책 접근 모색 가능
- 향후 하동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활성화사업의 추동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

❍ 협력가와 파견대상마을 양방의 준비와 협조를 통해 사업추진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배가하고자 노력함

- 파견 전 실시되는 협력가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이해의 시간을 마련하여 협력가로서의 위상과 역할 명확히 제시
- 마을현장조사 및 마을대표자 PT 등 파견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 심사절차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능동적 이행 의지 확인
- 협력가를 지원하는 상임교수진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관리 철저

| 그림 4-22 | 하동군 청년(마을)협력가 홍보영상: "나는 마을로 출근한다"



자료: 하동군 놀루와 https://youtu.be/keO5ep6Ec3g?si=LsNcs6LIBxENDDA1

제4절 수도권-지방 연계협력 정책사례

1.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은 인구감소시대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인구와 경제 문제를 동시 해결하는 대안적 모델로서 경북도가 2017년 전국 최초 도입한 정책사례임

-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기조에 발맞추면서도 지방의 인구정책은 국가와 다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확신 하에 경상북도만의 청년인구 유입정책 마련

○ 본 사업은 경북으로 주소를 옮겨 창업·창작 활동을 하는 청년지원을 골자로 외지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만들어 지역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22년 기준 약 400명의 청년이 경상북도로 유입하였고, 이들 청년 중 70% 이상이 계속 정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청년창업 기업들의 5년 이상 생존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9)]

○ 궁극적으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의 지향점은 유입된 청년 창업가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로 성장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함

- 로컬에서 청년창업가는 '지역성과 결합된 고유의 콘텐츠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 혹은 1인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정의 가능 (이미나, 2022)

□ **추진내용**

○ 경북도로 유입한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예산지원, 창업컨설팅 지원, 네트워킹 지원이 있음

9) 대구일보. 경북, 청년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전국 두 배 이상, 24.2.18. 보도.

- 첫째, 정착지원금과 사업화자금 등 예산지원의 경우, 2017-2018년 초창기 모델에서는 청년 1인당 연간 3천만 원씩 2년간 지원하였으나 이후에는 청년들의 사업 신청 당시 연고지 여부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배제하는 등 지원금을 차등으로 지원하고 사업화 단계에 따라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 유형을 세분화함
- 둘째, 창업컨설팅 지원의 경우, 초기 실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컬 기반의 창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이후 창업이 안정화 단계에 도달할 시에는 유관 공공기관과 연계해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셋째, 청년 창업가들 간의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창업가들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함

| 그림 4-23 |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 지원내용



라이브커머스 교육진행 | 창업자 컨설팅

자료: 이미나(2022). 청년·인구·경제 문제해결하는 도시청년시골파견제.

❍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2021년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까지 지속
- 청년에 대한 단순 창업 지원을 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강화
- 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2천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 및 정착 활동비가 지원되며,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참여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적합한 맞춤형 전문가를 배치해 1대1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한편, 본 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사업의 목적이나 대상, 지원 범위 등이 세분화된 후속 사업들이 발굴되고 있음
  -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와 유사한 성격의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은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신청자가 경북외 타 지역 청년과 팀 구성이 가능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전과정을 지원하는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 역시 청년유입 및 정주,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하나 단순 카페와 식당 창업, 숙박업 등을 지원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이
  - 이밖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의료, 문화, 복지 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등의 사업으로 확장

□ 추진체계

○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 추진 당시 경북도는 23개 시군과 경북경제진흥원 등을 주축으로 체계적인 지원 조직 마련
  - 지역대학 창업보육센터, 청년창업 지원 유관기관, 민간 컨설팅 업체 및 교육기관 등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도내 각종 기관 및 관련 업체와의 연계협력 체계 확보
  - 현행 본 사업은 경북도의 경우 지방시대정책국 청년정책과에서 맡고 있고,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경북행복경제지원단 청년경제지원팀이 실무 담당

○ 특히, 사업추진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창업기업들이 판로개척, 홍보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경북경제진흥원 등은 온라인시장 개척, 새로운 유통경쟁력 방안 마련 등을 적극 지원

□ 성과 및 시사점

○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의 시범사업이자 마을재생 성공사례로 유명한 리플레이스의 문경 한옥 게스트하우스 '화수헌'을 비롯하여 친환경 먹거리 생산기업 마주 등 다수의 창업 성공 사례 보유
  - 그 중 리플레이스는 대구와 부산 등지 도시 청년 5명이 설립한 사업체로 이들이 운영 중인 화수헌은 1800년대 고택을 리모델링한 한옥스테이 겸 카페로

SNS 등을 통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고, 오미자, 미숫가루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음료 개발, 마을가꾸기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와 상생 발전 추구

| 그림 4-24 |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성공사례 '화수헌'



자료: 오마이뉴스. "고택 개조해 한옥카페 화수헌을 연 이유는..." 21.10.22. 보도.

❍ 최근 경북경제진흥원(2024)이 발표한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 내 청년창업기업의 폐업률은 24.2%로, 청년창업기업의 70% 이상이 창업 후 5년 뒤에도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국 신규 창업자 대비 폐업률이 2020년 60.6%, 2021년 63.1%, 2022년 66.2%로 매년 약 3%p씩 증가하는 것과 대조되는 상황
- 2022년 기준 도내 125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억7천여만 원으로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28.9%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보였고 사업을 유지 중인 125개 창업기업 중 32개 기업(25.6%)이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78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됨

❍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 유입정책으로서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마을 재생이라는 난제에 도전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재능있는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입시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 활동이 지역자원, 주민공동체 등과의 연계협력 지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
- 특히, 지역에 선정착한 청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이들을 지역으로 불러 모으는 안내자 역할 담당

2. 서울-지방 상생 청년교류사업(넥스트로컬)

□ 추진배경 및 목적

❍ 서울시 넥스트 로컬(NEXT LOCAL)은 서울 청년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파견해 지역의 특산품 등을 활용해 창업하도록 돕는 지역 상생 청년지원사업으로 2019년 도입되어 올해로 6회째 지속

- 지역의 자원을 연계 활용하거나, 지역 내 문제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아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상생 청년창업가 육성

❍ 넥스트로컬은 창업자금 지원과 교육만 진행하는 단순 창업지원을 넘어 지역 네트워크 연결과 지역상생 판로지원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로컬창업 지원사업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역연계협력 사업에 해당

- 서울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통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 침체된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반성장 추구

| 그림 4-25 | 서울-지방 상생 청년교류사업: 넥스트로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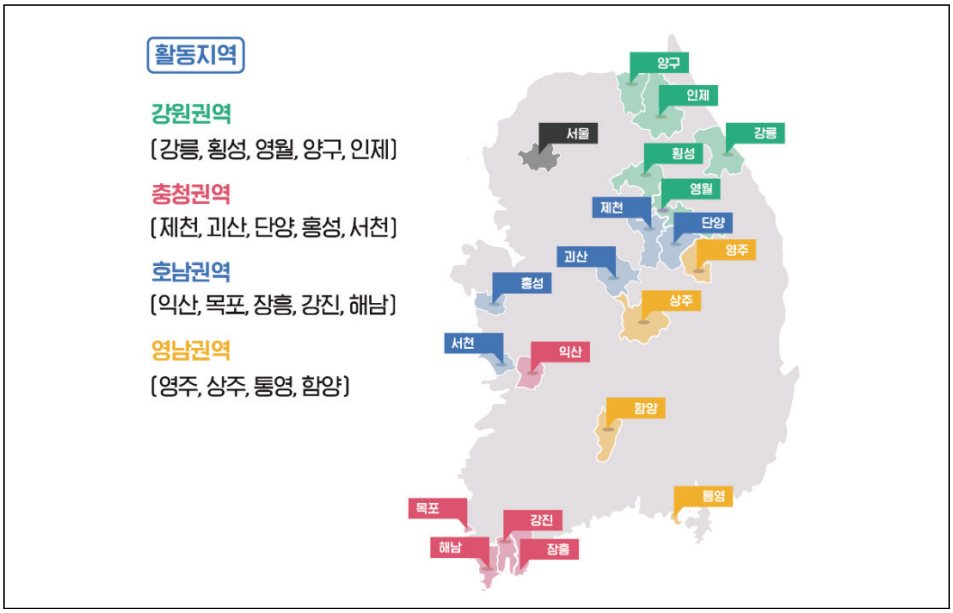


자료: 넥스트로컬 http://seoulnextlocal.co.kr/.

□ 추진내용

❍ 넥스트로컬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이 시와 연계된 19개 지방자치단체 자원을 연계·활용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현재 시와 연계된 4개 권역 19개 지역에서 활동 가능

| 그림 4-26 | 넥스트로컬 활동지역



자료: 넥스트로컬 http://seoulnextlocal.co.kr/.

❍ 넥스트로컬 사업과정은 크게 4단계 과정으로 추진되며 단계별 예산 및 교육 등을 지원

- 1단계는 2개월간의 자원조사과정으로 성공 가능성 높은 창업아이템을 발굴하도록 2개월간 교통비와 숙박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가는 최대 3개 지역을 선택해 각 지역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토대로 지역현장조사를 진행함
- 2단계는 사업화과정으로 지역연계형 창업교육, 1:1맞춤형코칭 등을 지원하고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20여 개 팀을 선발하고, 최대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 3단계는 후속과정으로 사업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최대 5,000만 원의 최종사업비 지원
- 4단계는 지속지원 과정으로 창업팀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유사사업과 투자 연계를 지원함

| 그림 4-27 | 서울 넥스트로컬 사업과정



자료: 넥스트로컬 http://seoulnextlocal.co.kr/.

❍ 넥스트로컬은 청년창업가에게 지역자원연계,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 임시체류공간 등을 지원
- 지역자원연계: 지역 내 파트너의 도움으로 원활한 지역 내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내 지자체, 중간지원기관, 지역 토착기업, 지역농가 등 네트워크 지원함
-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지역연계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실전 워크숍 및 분야별 전문가 특강 실시
- 창업전문가 멘토링: 개별 맞춤형 1:1 전담 코치 배정하고 주기적인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피드백 제공
-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혜택 제공: 지역 여건에 따른 체류공간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지원

❍ 본 사업유형은 자원활용형, 지역해결형, 지역기반형 등으로 구분됨
- 자원활용형: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비즈니스로, 대표적으로 전북 고창의 검정보리를 활용하여 커피 대체음료를 만드는 달차컴퍼니 등이 있음
- 지역해결형: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기반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비즈니스로 해당 창업사례로는 농경지 드론 방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드론 방제 업무 배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남 고성 더대시 등이 있음

- 지역기반형: 지역 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비즈니스로, 강원 영월에서 지역특산물인 쑥을 활용한 디저트 개발 및 거점 공간을 운영하는 레드로즈빈 등이 대표적 창업사례

| 그림 4-28 | 서울 넥스트로컬 사업유형



자료: 넥스트로컬 http://seoulnextlocal.co.kr/.

□ 추진체계

❍ 넥스트로컬은 서울시청 행정국 대외협력과 소관으로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담당하되, 사업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진행은 넥스트로컬6기 운영사무국에 위탁하여 추진 중임

- 서울시 대외협력과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인 넥스트로컬 사업 외 지역상생 사업으로 서울농장, 서울캠핑장, 서울동행상회 등 타 지자체와의 연계 교류 사업을 담당
- 넥스트로컬운영사무국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사례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의 실무 담당

❍ 한편, 서울시와 연계를 맺은 협력 지자체의 경우, 청년들의 지역 내 창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사무·회의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거나 지역생산자를 연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함

- 예컨대, 홍성군은 사업화 과정 진입팀에게 서울시 지원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영월군은 지역활동비를 팀당 30만 원씩을 지원하며, 영주시는 1박당 7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함

❍ 또한 청년·지역사회 간 소통·협력 창구인 1인 지역파트너 제도는 7인 내외의 다각적 '지역파트너커뮤니티'로 확장하여 현장지원 강화

- 19개 지자체 117명으로 구성된 지역파트너는 2개월간 서울 청년 창업가들이 현장감 있는 아이템 검증과 지자체·민간전문가, 지역 내 생산농가·가공센터 등 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연계 등을 돕는 역할 담당

❍ 이밖에 롯데카드,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기업 및 공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참여청년의 지원을 다각화

- 롯데카드는 넥스트로컬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가의 제품을 롯데카드 앱 쇼핑몰에 입점시켜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인제, 양구, 단양, 제천, 횡성 등 5개 지자체로의 선발팀에게 창업지원금 지원

| 그림 4-29 | 서울 넥스트로컬 6기 발대식



자료: 넥스트로컬 http://seoulnextlocal.co.kr/.

□ 성과 및 시사점

❍ 넥스트로컬 1기부터 5기까지 사업에 참여해 사업화에 성공한 팀은 모두 195팀이며 소자본으로 접근하기 쉬운 식품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사업 지속률 또한 매우 양호[10]

10) 경향신문. "지방에서 돈벌어 서울로?" 오해 푸는 서울 '넥스트로컬'... 식품업종 편중은 아쉬워. 2024.6.19. 보도.

- 업종 별로 나누면 식품 관련 창업이 76팀(39%)으로 가장 많고, 상품·굿즈(35팀), 콘텐츠 등 문화 관련(29팀), 기술 및 IT(26팀), 관광(16팀), 공간 사업(13팀) 순으로 나타남
- 195팀 중 165팀(84.6%)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1기 42개팀 중 30팀, 2기 46팀 중 40팀이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 중임

❍ 지역상생 청년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는 넥스트 로컬 사업은 지방소멸과 청년실업 등에 동시 대응하는 정책적 접근으로 지역에 대한 청년의 관심 및 탐색 과정이 체류 및 정착으로 나아가는 전 과정을 청년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
- 유입 초기 지역을 알아가는 현장조사 기간을 배정하고 교통비, 숙박비 등의 실질적인 비용을 예산지원함
- 특히, 서울시는 서울 청년 창업가와 지역을 매개하는 지역파트너커뮤니티를 두고 현장지원성을 강화
- 이후 사업화과정 및 후속 과정 등에서는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가가 지역 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그리하여 청년창업이라는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로컬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
- 통상 1차 산업 중심의 인구감소지역의 경직된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 확보

❍ 또한 본 사업은 연계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여러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들의 성공적 창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전국에 분포하는 19개의 지자체에서는 사업 청년에게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이나 임시숙소, 예산 등을 지원하며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정주 의지 고취
-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등은 본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판로 확보나 홍보, 예산 등 실질적인 차원에서 청년창업 지원

제5절 다부처 협업 정책사례

1. 지역활력타운

□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 지역 이주를 희망하는 다양한 수요자층의 정주 의욕 고취하고자 이에 필요한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도입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지방이주가 쉽지 않은 현실을 조명한 정책(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6)

❍ 특히 지역활력타운은 8개 중앙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사례(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12)

- 당초 7개 부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하는 사업이었으나 24년 교육부 추가 참여로 8개 부처가 참여
- 각 부처 연계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증가함

□ **추진내용**

❍ 지역활력타운 지원대상은 수도권·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지자체이며, 대상지 선정시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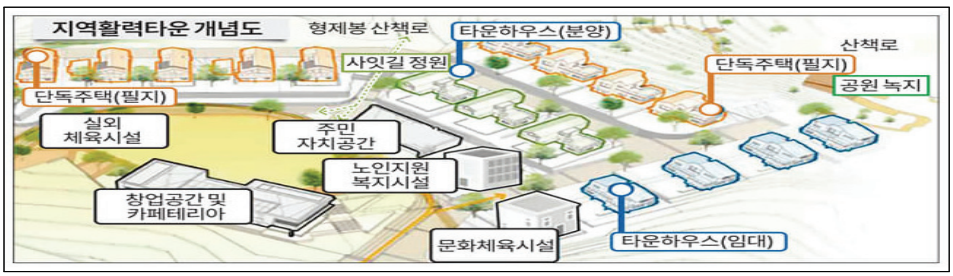
- 23년 7곳(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창군)이 선정되었고, 24년에는 10곳(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가 선정됨

❍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 및 공급방식의 주거 형태를 제공하며 문화·복지 등 필수 서비스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통합적으로 지원함

- 고령친화설계, 제로에너지 설계 등을 고려한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거 유형을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
- 생활인프라(국토부), 주민자치(행안부), 돌봄(복지부), 체육(문체부), 일자리(고용노동부) 등 부처별 특성에 따라 세부 사업 추진

| 그림 4-30 |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3.6.).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7개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조성 본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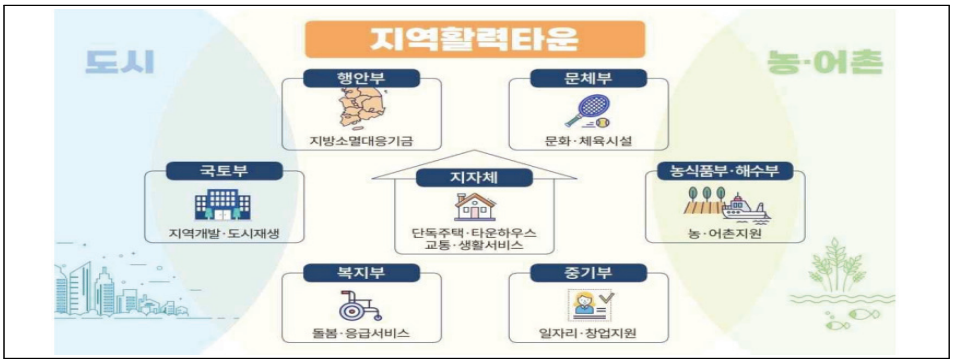
□ 추진체계

❍ 부처별 업무협약에 따라 각 부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과 관련한 세부 업무를 담당

-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 농장 등 연계사업 제공
- 보건복지부는 돌봄, 의료·보건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지원

-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이 어촌인 경우 필요한 경제·생활인프라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직업활동 지속위해 일자리연계사업 마련

| 그림 4-31 | 지역활력타운 부처 간 협업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3.12).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8개 부처 합동으로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 한편 각 부처는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함

- 이 때, 광역지자체는 단지조성 인허가 지원 및 작은도서관, 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

□ 성과 및 시사점

❍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은 인구가 가진 특성상 포괄적 속성을 가진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은 분절적으로 접근하는 한계 내포

-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 등은 접근 상의 구분일 뿐 동일 문제에 대한 대안이며 심지어 같은 지역 내 동일 대상을 두고 펼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간의 벽은 높고 분명

❍ 지역활력타운은 다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사례

- 이는 현재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주, 일자리 확보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부처가 파편화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큼

2. 지역혁신공모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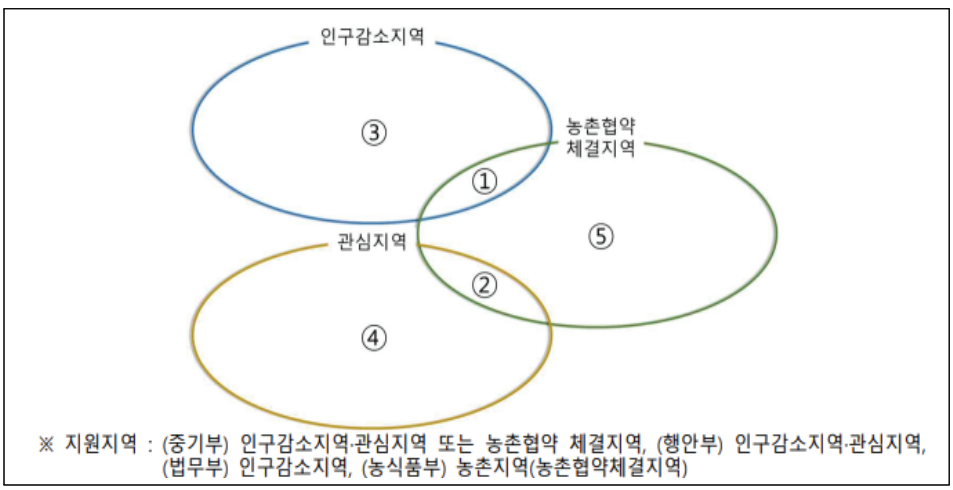
❍ 지역혁신공모사업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일자리 중심의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진행

- 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 기업육성과 각종 기반(인프라) 조성은 함께 이뤄져야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4.1)

❍ 최근 정부는 지역혁신공모사업에서 협업 부처 범위 및 지원 대상을 넓힌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로 확대 추진(행정안전부 공고, 2024.10)

- 기존 행안부와 중기부 등 2곳에서 법무부와 농식품부까지 협업 부처 범위 확대
-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최근 발표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농식품부와 농어촌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133곳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된 22개 과제도 포함됨

| 그림 4-32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지원대상



자료: 행정안전부 공고 (2024.10.)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고. 제2024-1396호.

□ **추진내용**

❍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등 지역중소기업 정책(소프트웨어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하드웨어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이때,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이라 함은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으로 사업의 혁신화 및 인식개선, 애로사항 해소 및 컨설팅 등의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일컬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수립한 투자계획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연 1조의 규모로 운용됨
- 사업은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청년창업센터, 실습공장, 기술교육센터 등 기반(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과제 고도화를 위한 기술애로 해소,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4.1)

❍ 부처간 정책 연계는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를 동시 강조

- 예컨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충남 부여군 지능형 농장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과제의 경우,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을 통한 재배품목 시험, 제품개발 등과 함께 부여군 자체적으로 지능형 농장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현장실습, 창업시뮬레이션 등을 지원함(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4.1)

❍ 최근 본 사업은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로 개편되고 부처별 협업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지원내용이 강화되었고,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협업 유형(중기-행안, 중기-행안-법무, 중기-행안-농식품부) 선택 가능

- 중기부(기업육성)+행안부(기금운용)+지자체(인프라):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업활동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중기부의 기업육성 프로그램과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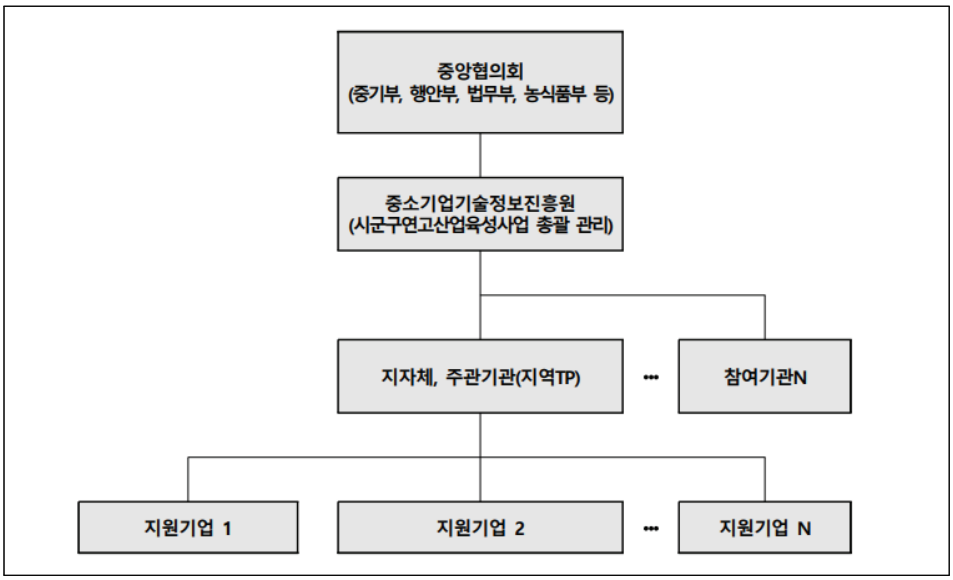
- 중기부(외국인 채용 기업지원)+법무부(비자운영)+지자체(정착지원):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지역 기업에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해당 기업의 집중 성장 및 외국인채용 지원, 정주여건 개선을 협업
- 중기부(농촌특화 기업지원)+농식품부(공간재구조)+지자체(정주여건): 농식품부의 공간재구조화 지원(하드웨어 사업)과 중기부의 농촌기업특화 지원(소프트웨어 사업), 농민·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협업

□ 추진체계

❍ 당초 지역혁신공모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가 주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부처협업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한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는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중앙협의회를 토대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총괄관리하는 체계

- 지역 단위에서는 테크노파크(TP) 등 주관기관을 두고 지원기업 관리

| 그림 4-33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추진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공고 (2024.10.)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고. 제2024-1396호.

□ 성과 및 시사점

❍ 정부 부처별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이 도입·추진되는 가운데, 정책 간 중복 및 혼선 발생, 효율성 추구의 문제가 불가피

-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체결을 맺은 지역은 전국에 총 42곳으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부처간 정책의 협업 추진 가능

| 그림 4-34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지원가능지역 현황

구분	지역 유형			최대 협업 가능 모델	지자체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농촌협약체결지역		
①	O	X	O	중기부·행안부·법무부·농식품부	(경기) 가평군, (강원) 평창군·양양군·정선군·횡성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부여군·예산군·보령시, (전북) 진안군·무주군·남원시·고창군·부안군·정읍시·장수군, (전남) 화순군·장흥군·강진군·구례군·해남군·함평군·담양군·장성군, (경북) 고령군·봉화군·성주군·안동군·영덕군·영주시·영천시·울진군·청도군·청송군, (경남) 고성군·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 **42개**
②	X	O	O	중기부·행안부·농식품부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 → **4개**
③	O	X	X	중기부·행안부·법무부	(부산) 동구·서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강원) 고성군·양구군·영월군·철원군·태백시·홍천군·화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공주시·논산시·태안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고흥군·보성군·신안군·완도군·진도군, (경북) 문경시·상주시·울릉군, (경남) 밀양시 → **28개**
④	X	O	X	중기부·행안부	(부산) 중구·금정구,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강원) 동해시·속초시·인제군, (경남) 통영시, (대전) 중구·대덕구 → **11개**
⑤	X	X	O	중기부·농식품부	(경기) 안성시·여주시·양평군, (충북) 음성군·청주군·진천시, 충주시·증평군, (충남) 아산시·서산군·당진군·천안시, (전북) 군산시·완주시, (전남) 나주시·순천시·광양시, (경북) 칠곡군·예천군·구미시·포항시·경산시, (경남) 창원시·진주시,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 **26개**

자료: 행정안전부 공고 (2024.10.)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고. 제2024-1396호.

❍ 청년정책 역시 부처 간 협업 범위 파악 및 유형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 정비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 기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 가능 모델을 파악하고 부처별로 대응 지원
- 지자체는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고 청년의 니즈를 파악해 지자체에 맞는 협업 유형 선택

제6절 소결

1.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의 현 주소

□ 지역발(發) 청년정책의 의의

❍ 지방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청년발전을 도모해야 할 공동의 책무자
- 청년기본법 제 4조 의거 지자체는 국가와 함께 청년정책의 수립 및 조정, 청년지원 등의 책무를 가지고 있음

❍ 지방은 특색있고 의미있는 청년정책의 산지로서 정책 일선에서 청년의 니즈와 가치를 파악하며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
- 지역발 청년정책은 청년에게 필요한 체감형 정책들이 다수로 청년의 권리 존중 및 사회적 안전망 구현, 시장 상황에 맞는 직무능력 함양, 사회적 가치 지향 존중,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주체로서의 역량 지원 등의 목적 추구하며 실질적인 지원 강조

□ 무분별한 정책 베끼기, 가시적 성과 집착 등 지역 청년정책의 한계도 여전

❍ 단, 지역마다 정책의 온도 차는 존재하여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청년의 가치를 인정하며 청년과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정책의 실상은 난항을 거듭
- 청년은 물론 지역 여건 및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정책 베끼기에 급급한 정책들이 다수 존재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로 지역 저마다 청년정책을 강조하는 추세이나 차별화되지 않는 정책의 난립 속에 청년이 불안정한 정책실현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 내포
- 지역이 단기적·가시적 성과에 목매지 않고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 청년정책의 분권과 특화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2. 청년정책을 매개로 한 지역발전의 가능성

□ 지역의 혁신 주체이자 동력으로서의 청년 위상 확인

❍ 본 장의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청년은 지역 내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 주체이자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는 핵심 동력임을 재확인

-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지원하는 미국 포틀랜드의 ADX 사례나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과 같이 청년은 지역에 머물며 지역에 있는 기회를 토대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새로운 산업의 동력으로 작동시키는 핵심 자원임
- 또한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나 하동 청년협력가 등의 사례처럼 고령화되는 지역의 관리자이자 민과 관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을 통해 지역공동체는 유지 존속 가능함

❍ 다만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주, 활동 등을 환대하고 조력하는 지역 분위기 형성 및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력 강화 등 토대 구축 중요

- 미국 포틀랜드 사례처럼 로컬의 가치를 지향하는 청년 개개인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시 정부와 산하기관, 비영리단체 등 연계기관의 노력은 타지 청년의 발길을 사로잡는 매력이자 포틀랜드라는 도시경쟁력을 지속시키는 핵심

□ 지역과 청년을 묶는 부처 간/지역 간 정책연계 강화

❍ 청년이 곧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할 때 청년발전은 곧 지역발전과 동의어 관계를 맺는 만큼 기존 및 신규 부처 사업 간 효율적 정비 필요

- 지역활력타운, 지역혁신공모사업 등과 같이 동일 목표를 향한 부처 간 협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처별 청년정책을 지역과 지역청년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연계를 강화하여 비대칭적인 인구쏠림의 해법으로 활용하고 청년을 매개로 지역의 개성을 살린 로컬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균형발전의 기틀 마련하는데 주효

- 서울 넥스트로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청년 인재를 교류·지원하며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지역정주를 촉진하는데 유의미

제 5 장
지역청년 지원 제도 수립방안

제1절 지역청년지원 법·제도의 필요성

제2절 지역청년 지원정책 추진방향

제3절 지역청년지원법 제정(안)

05 지역청년 지원 제도 수립방안

제1절 지역청년지원 법·제도의 필요성

1. 기존 법·제도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 국무조정실의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 등 다수 개별법상의 관련 조문 존재

-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조정실 설치(범정부 청년정책 정책 총괄), 청년정책 기본계획·실행계획(중앙·지자체)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청년정책조정실장 주재) 회의 등 회의체 운영, 중앙청년센터 운영, 청년인재 DB 구축 등 직접 사업 일부 수행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은 고용노동부 소속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청년고용촉진대책을 수립·시행(국가와 지자체)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서 청년에 대한 우대조항 및 재정, 세제 지원 강화 등의 조문이 존재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청년에 대한 우대 조항
-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및 재정 세제 지원 조항

| 표 5-1 | 청년 지원 관련 제도 및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고용노동부(취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창업)	도전K-스타트업, 생애 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펀드 등
국토교통부(주거)	청년층 공공분양주택·공적임대주택, 전·월세 지원, 청년공유주택,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금융위원회(금융)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부채 경감 지원 등
보건복지부(복지)	자립준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문화)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문화누리카드지원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 지역소멸 방지 및 활력 회복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소멸 지역소멸 방지대책 전반을 다루면서 청년과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에 관한 1개 조문 포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 ·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등 지역소멸 방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다수 법률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귀농어귀촌법」 등 귀촌 관련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후계청년농어업인법」 40세 미만 후계청년농어업인 우대 조항 등

2.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 방향

□ 지역소멸 방지와 청년의 역할 연계 법제의 필요성

○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구의 지방유입 정착을 유도하는 법률과 청년에 대한 특별 배려를 하는 법률들이 많은데 이들 양자를 결합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한 단행법률에는 아직 뚜렷한 것이 없음
- 인구소멸 방지와 청년에 대한 배려는 이들 각각의 목표를 다룬 별도의 단행법률 외에 이러한 목표가 포함된 많은 개별법률도 존재함
- 법률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배려나 청년에 대한 배려를 명시하지 않았어도 집행을 할 때 이러한 배려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법률에 근거 없이 특정 지역이나 청년에 대한 배려를 할 경우 평등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특별한 배려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집행상의 평등 위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우리 헌법은 노인 여자 청소년 장애자 등에 대한 특별배려를 규정하고 있지만 건강한 성인 남성에 대한 배려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지역별 차등을 정하는 입법은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헌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

○ 인구 부족으로 낙후되어 가는 지역 활력 회복의 관건은 인구의 유지에 있으며 그 중 생산 활동성을 가진 청년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
- 기존의 법제를 보면 미래 세대 부재로 인한 지역소멸 대책과 청년문제를 별도로 다루고 있고 양자를 긴밀히 연결하는 법제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청년 중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책추진의 법제적 근거 부족

❍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법제 보완이 필요함

- 한정된 자원 분산: 대부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자/ 청년마을 청년마을기업 등 다른 분야도 추진중이지만 저조한 수준
  - 지방에도 청년거점을 지정하고 민간 역량·자원 활용 및 지역 집중지원 필요
- 사업간 연계 미흡: 주거·일자리 등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사업 추진, 청년에게 낮은 정책 체감도
  - 청년거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방 협업 체계화 필요
- 제도적 기반 부재: 지원 근거 및 체계적 계획 수립 없이 보조금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어, 청년의 체감효과 저하
  - 기금·특례 등 행·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체계적 지원 필요

❍ 특히, 지역마다 청년들의 상황과 요구는 상이해서 지역적인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그동안의 청년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체감도는 미흡

- 대부분의 청년인구는 고학력이지만 특히, 지역에는 이들이 만족할만한 보수와 근로환경을 가진 일자리는 부족하여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인구가 커지고 있는 추세
- 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 유입된 청년들도 생활비 과다, 집값 상승, 경쟁 치열 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어들고 고물가로 생활비 증가, 경쟁 심화 등으로 만족도 저하
  - 2022년 상반기 기준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청년층(15~29세)이 25.1로 全 세대 중에서 월등하게 높아서 1위(한국경제인협회, 2022)
  - 청년의 우울감과 좌절감은 7대 광역시 중에서 인천이 1위, 서울은 2위(국회미래연구원, 2023)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전국 공통의 혜택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한계

-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와 만족도는 여전히 부족

□ 지방의 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간의 형평 문제

○ 지방이라고 해도 시가지가 조성된 도심지역에 대한 별도의 입법조치가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 등은 제외되어 지역간 형평에 문제가 있음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심이란 수도권 등의 대도시 도심이 아니라 지방도시의 도심만을 의미
- 도심융합특구법은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 더 문제되는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도심융합특구법의 목적 및 도심융합특구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방 및 민간의 역할 체계화

○ 청년 중심의 지역활력 회복은 청년의 자발적 적극적 역할과 참여가 관건이고 국가 중심의 시책 추진은 호응도는 물론 실효성에서 한계를 가져옴

○ 지방소멸 대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사항으로서 국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함

○ 현장부합성과 절박성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을 장려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며 국가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임

3. 입법형식

□ 제1안: (가칭)지역청년지원법안 제정

❍ 기존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수 법률이 있지만 이들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입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을 추진

- 청년기본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신규입법을 추진

❍ 특별법 양산에 대한 비판을 감안하여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하지 않고 (가칭)지역청년지원법안 제정

– 특별법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용상 특별법이 될 수 있으며, (가칭)지역청년지원법안 또는 (가칭)지역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 제명 간소화 유도 방침에 따라 복합명사형 제명 채택

□ 제2안: (가칭)지역청년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제정법과 기존법의 관계는 보완적 보충적 관계로도 설정할 수 있지만, 인구소멸과 국토 균형발전 등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된 기존의 입법정책이 충분한 실효성을 갖지 못해 제정하게 된 것이라면 기존의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

– 예를 들어 유사한 항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제정법을 위한 편성과 집행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입법효과를 극대화하고 다른 법률에서 달성하지 못한 입법목표를 실효성있게 달성함으로써 그 다른 법률의 입법목적을 대신 달성해 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함

❍ 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존 다른 법률 소관부처 내지 실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우려는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들은 기존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이 됨

제2절 지역청년 지원정책 추진방향

1. 기본방향

1) 지역청년지원 정책방향

□ 청년의 도약과 성장을 돕는 지역발(發) 청년정책의 추진

○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체인 청년층의 도약과 성장은 곧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잠재적인 성장률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임

- 청년 실업률이 1% 높아지면 국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가 낮아지고, 잠재성장률은 0.21%가 낮아짐(한국경제연구원, 2021)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高 현상 장기화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로 청년층의 삶은 더욱 치열해지는 경향

- 2024년 기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15~29세)은 39만 8천명으로 2023년에 비해 1만3천명이 증가하여 전체 청년인구는 감소했지만 비중(4.6%에서 4.9%)은 더 증가
  - '쉬었음' 인구는 이직자들도 있지만 적성 불일치나 '쉬었음' 기간의 장기화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가 상당수

○ 우리나라 청년들이 미래를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튼튼한 역량을 점차 보유해 나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청년의 도약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공동의 책무자
  - 미래에 대한 낙관, 참여, 기대에 20대는 6.5%, 30대는 10%만 동의하여 40대가 21.9%, 50대가 24.5%, 60대가 37.1% 동의한 것과 대조적(국회미래연구원, 2023)

○ 지방자치단체는 특색있고 의미있는 청년정책의 산지로서 정책 일선에서 청년의 니즈와 가치를 파악하며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구현할 필요

□ ‘지역’과 ‘청년’을 연계하는 지역격차 완화정책의 추진

❍ 청년들은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와 경험과 훈련을 위해서 끊임 없이 지역을 이동함

-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명으로 산업·교육·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여 기존 비수도권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고 신산업 창출이 지체됨에 따라서 인적자본의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으로의 이동이 심각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 이에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핵심 인적자본의 역외 유출로 지역소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는 유입된 청년들도 집값 상승 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어들고 고물가로 생활비 증가, 경쟁 심화 등으로 만족도 저하

- 청년의 우울감과 좌절감은 7대 광역시 중에서 인천이 1위, 서울은 2위(국회미래연구원, 2023)

❍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던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인구를 ‘핵심 인적자원’으로 인식, 지역산업을 가동시키고 지역의 인구를 재생산하는 주체로 인식하여 청년인구 유치에 열을 올려 왔음

- 그러나 청년세대를 놓고 본다면 전체 인생에서 실패를 해가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 인생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기 위한 청년인구의 유치가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을 살리기 위한 지역격차 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

❍ 지역의 혁신주체이자 동력이 되는 청년과 지역이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연계 강화

- 청년 중심의 지역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청년’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정책의 분권과 특화발전을 지원

○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연계가 강화됨으로써 비대칭적인 인구쏠림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을 매개로 지역의 개성을 살린 로컬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의 기틀 마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서로 상생하고, 청년 인재를 교류·지원하며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지역정주를 촉진

□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는 지역청년정책의 추진

○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와 만족도는 여전히 부족

- 청년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지역적으로 차별적이고,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필요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
  - 2022년 상반기 기준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청년층(15~29세)이 25.1로 全 세대 중에서 월등하게 높아서 1위(한국경제인협회, 2022)

○ 지역적인 특성과 어려움을 반영하여 지역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지방시대를 향한 맞춤형 청년정책의 추진 필요

-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부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각 장관실 소속의 청년보좌역을 설치하고, 청년세대의 입장에서 청년들의 의견과 인식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 현재 24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이 운영되고 있음
  - 청년보좌역은 각 중앙부처별 2030 자문단의 단장 역할 담당

○ 시대 변화에 따라서 청년의 선호도는 변화하고 있어 新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지역청년 정책 필요

- 탈물질주의적 성향이 소비에서도 나타나 청년들은 감성적인 소비와 지역 특색을 중시하는 경험을 선호하며,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 청년들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평생직장 개념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일자리를 탐색하며, 프리랜서와 긱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 등

2) 비전 및 목표

❍ 비전: 청년은 지역에서 꿈을, 지역은 청년에서 미래를

❍ 목표: 청년과 지역이 함께 하는 로컬 생태계 조성

| 그림 5-1 | 지역청년 지원정책의 추진방향



2. 추진전략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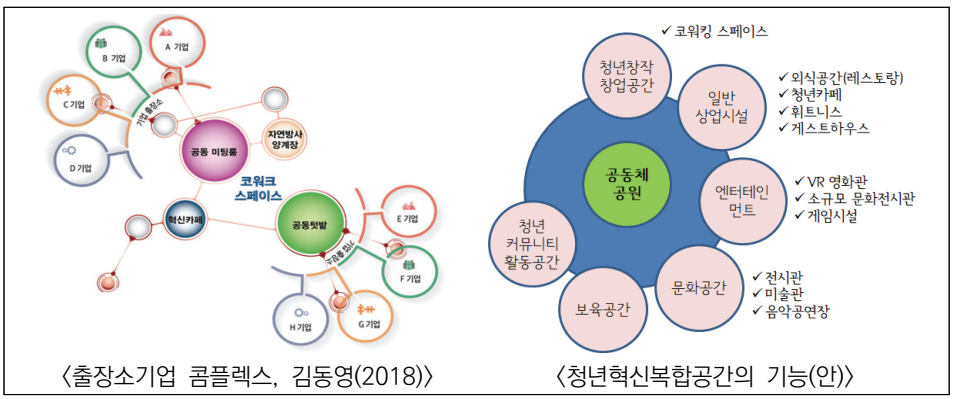
1) 지속가능 로컬 청년생태계 구축

□ 융복합 지역청년특구 조성

○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중소도시에서도 지역청년들이 함께 놀고, 일하고, 쉴 수 있는 청년거점공간 조성

- 청년들의 삶터+일터+놀이터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젊은 인구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중소도시 거점공간 조성
- 새로운 인구가 지역에 유입되었을 때 필요한 임시주거공간 마련이나 주거지원 강화, 다양한 지역을 탐색·경험하고 정착할 수 있게 컨설팅해주는 기회의 제공 등을 함께 지원
- 지역청년특구 내 지역에 정착한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공유재산 사용특례,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특례 부여
  - 수도권 청년들의 소도시·농어촌 지역 이주시 청년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기능과 필요한 상업시설 서비스 수요를 조사한 결과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는 VR 영화관이나 소규모 문화 전시관 등 일반 상업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4%로 가장 많았고, 청년 창작 및 창업공간, 19.5%, 엔터테인먼트 기능 16.9%, 문화공간 13.6% 순(박진경·김도형, 2020)

| 그림 5-2 | 청년혁신복합공간 개념도(예시)



〈출장소기업 콤플렉스, 김동영(2018)〉 〈청년혁신복합공간의 기능(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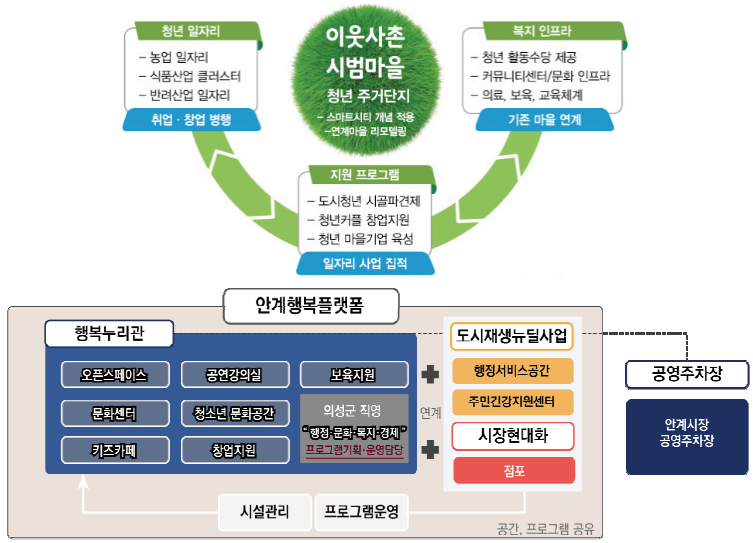
자료: 박진경·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안계행복 플랫폼 구축사업) 사례〉

민선7기 경북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전국 지방소멸위험지수(고용정보원) 1위인 의성군을 1순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청년일자리+주거+문화+복지 등 청년유입과 관련된 사업을 복합지원

■ 안계행복플랫폼: 복합문화·창업보육·공공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행정, 문화, 복지, 경제 서비스 복합화
- 하나금융그룹과 민관협력으로 안계하나국공립어린이집 구축
- 경북형 AI미래학교 지정
-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출산통합지원센터(가정양육지원, 베이비카페 운영)

■ 창업을 하는 경우 외지청년+의성청년이 한팀이 되어 공동으로 창업
- 지역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



자료: 경상북도(2020.5),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추진현황.

❍ 청년거점으로서의 지역청년특구는 외지청년과 지역청년이 대면하여 교류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서울청년센터와 같이 청년정책 종합 서비스를 전달하는 창구역할 담당
- 지역사회의 특성과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여 지역청년들의 창의적 활동공간, 지역 고유의 문화체험공간, 청년센터 등을 융복합하여 조성하여 청년들의 정서적 만족감과 소속감 증대

〈서울청년센터 조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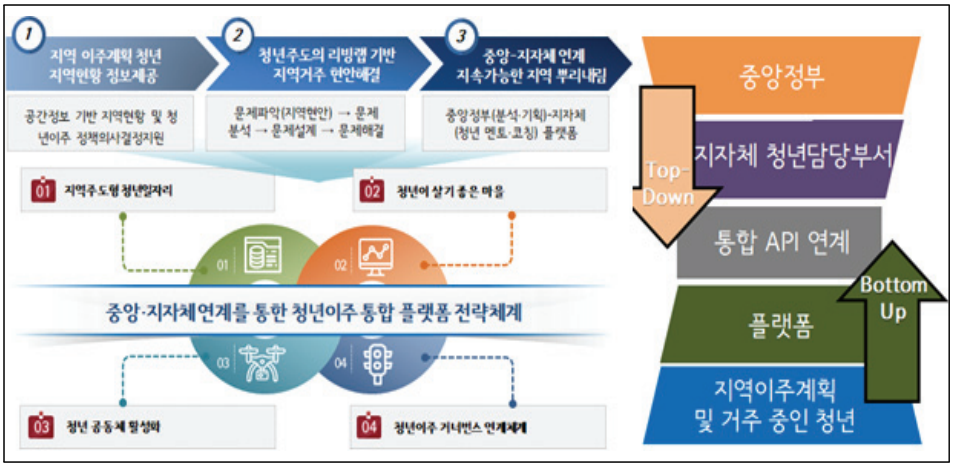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를 통합 재구조화하여 만든 서울청년센터는 서울 전역에 15개가 운영 중이며, 청년을 매개하는 '공간'이자 서울청년들에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지원매니저를 배치해 안정적인 청년정책 패키지를 제공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복합공간

-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사단법인 희망가치에 민간위탁
- 청년수당 사업관리,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정보망 운영 및 관리, 대외협력 및 교류추진 등 15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해당 사업별로 세부 프로그램 기획·운영

❍ 시도별 여러 청년거점들을 연결하고, 기관간 정보교류와 여러 지역간의 청년들의 교류를 함께 지원

- 수도권이나 대도시 청년들이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데이터 기반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교류 및 이주정보 플랫폼 역할도 담당

| 그림 5-3 | 리빙랩 기반 청년이주 통합플랫폼(예시)



자료: 박진경·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역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소통 강화

❍ 공간의 효율화 및 재구조화 등을 통해 지역청년과 유입청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청년 네트워크 구축

- 외지에서 유입된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청년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 내 활동하고 있는 지역청년리더 등을 중심으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청년들 간에 소통을 강화해 나감

〈경남 함안군 민간 청년활동공간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례〉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카페, 공방, 플라워숍, 서점 등)을 '민간청년활동공간'으로 지정하여 청년공간의 다양성 확보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공간조성으로 청년간 교류 촉진과 활동기회 부여로 청년 참여문화 확산, 자연스러운 유대와 네트워크 형성

- 사업비: 개소당 25백만 원
- 사업규모: 함안청년(19~45세)이 운영하는 공간 5개소
- 사업내용: 지역내 청년이 운영중인 민간청년활동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청년공간 제공과 프로그램(취미, 원데이 클래스, 작업공간, 세미나 등) 운영(소상공인 지원 효과)



자료: 국무조정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대표사례 모음집.

❍ 청년이 제안하고 청년이 답하는 청년문답 토론회 및 각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업과제를 발굴하는 등 청년들의 소통 강화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2022년 11월부터 각 장관실 소속의 청년보좌역을 설치하고, 청년세대의 입장에서 청년들의 의견과 인식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한 이유는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
- 청년들은 고령의 지역주민들과 세대가 달라 사고방식이 다르고, 생활패턴도 다르고 구속받기 싫어함
-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유출을 저지하고, 지역과 청년이 함께 안정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

2) 지역활력형 청년 비즈니스 기반 창출

□ 지역인증 청년 디딤돌 일자리 사업 추진

❍ 지역에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IT 기술창업회사 등의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역청년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고, 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청년의 유출 저지 및 지역정착 도모 필요
- 현재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커지고 있어 정보 관련 기업이 많은 벤처는 창업이나 기업육성에 필요한 수요와 자금이 모두 수도권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서울벤처밸리, 판교벤처밸리 등으로 이전하고 있음 (박진경·김도형, 2020: 337)

❍ 따라서 국가는 지역기업이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증대 도모
- 현재 청년세대는 비교적 고학력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 일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보다는 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필요
- 따라서 해당 시도지사가 인증하는 청년적합형 기업이나 견실한 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조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는 민간 일자리로 연결시켜 주는 '경과적' 일자리 사업 추진

• '지역성'을 가지는 지역인증기업이란 지역경제·산업 기여도가 높고, 지역 인재 채용 등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주민과 유대감이 큰 기업이나, 오랜 향토기업으로서 역사와 전통을 잇는 기업 등을 말함

〈대구 청년 귀환 경력직일자리 예스매칭 사업 사례〉

대구광역시는 지역청년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서 타지역으로 출향했다가 다시 귀환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경력 있는 인재확보 도모

■ 대구 전입의사가 있는 1년 이상 경력의 타지역(출향) 귀환 청년(만19~39세)
■ 월 급여 200만 원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 매칭 지원
  - 3개월 근무시 이주지원금 지원
  - 6개월 근무시 근속장려금 지원
  - 직무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전북 청년친화 일자리 매칭사업 사례〉

청년들의 희망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청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필요

* 청년이 좋아하는 기업: 연봉, 복지 등 특정분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도내 우수기업

■ 사업대상: 도내 미취업 청년 120명 및 도내 우수기업 50개사
■ 사업비 100백만 원(도비)
■ 사업내용: 청년친화 강소기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취업 희망청년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우수기업-청년 인재 맞춤형 일자리 매칭 실시, 사후관리 및 환류

□ 지역자산기반 청년 비즈니스 활성화

❍ 지역에 있는 고유한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인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청년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 청년은 내가 사는 곳의 상품을 소비하는 가치를 느끼는 지역주민이자 감성적 소비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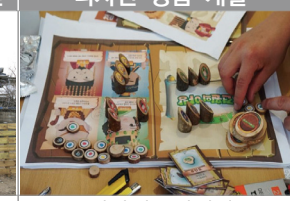
❍ 청년들의 감성적인 소비와 지역특색을 중시하는 선호도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고, 지역의 매력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비즈니스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 활용

- 지역의 청년혁신복합공간이 되는 지역청년특구는 메이커스페이스이자 스몰 비즈니스 인큐베이트로서 지역의 잠재자원을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센터 역할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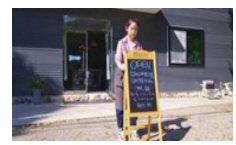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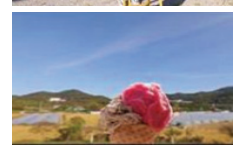
외지청년의 지역유입과 정착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을 건설하고,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역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최대 2년까지 정착비와 사업화자금을 인당 연 3천만 원까지 지원하던 민선7기 경북 자체사업을 2018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확대·개편한 사례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지원
  - 참여청년 94명 중에서 74명이 경북 외 출신자로 도외청년의 비율이 79%
- 대상연령은 만 39세 미만 청년(사업기간동안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유지 조건)
- 사업화자금, 교육훈련비, 임대료, 4대 보험료 지원
- 지자체에서 정주여건 지원, 교통비 지원 등
-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창업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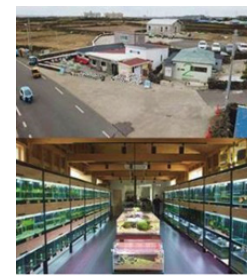
200년 된 전통한옥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및 카페	근대문화유산(일본식건물)을 활용한 카페 및 청년 공간	견훤역사·유적 등과 연계한 디자인 상품 개발
		
리플레이스팀 (외지 5명)	다카포팀 (외지 2명)	디자인스위치팀 (외지1, 도내 3명)







〈시골에 사는 아이스크림〉



〈들판한가운데 수족관〉

자료: SBS(2019.11.17.), 시골가게 영업비밀.

3) 수도권과 지역의 청년상생발전

□ 수도권-지방 연계협력사업 추진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연계를 강화하여 비대칭적인 인구쏠림의 해법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청년의 지역정주 촉진

- 서울 및 수도권에 정주하고 있는 청년을 모집하여 지방으로 파견하고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 창업하도록 돕는 지역상생 청년지원사업 추진

○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주, 활동 등을 환대하고 조력하는 지역 분위기 형성 및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력 강화

- 서울과 지방의 연계 및 상생협력을 통해서 청년에게는 지역에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동반성장 도모
  - 대표적인 서울시의 '넥스트로컬' 사업은 초기 2개월 동안에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여 지역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며,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창업팀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오고 있음

〈서울시 청년 지역교류 지원사업 사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지역교류 모델 발굴 및 프로젝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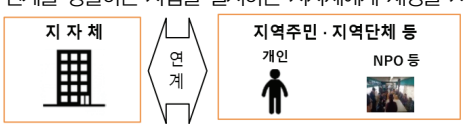
■ 지원대상: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조건: 서울과 지방의 청년단체 2개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응모 해야 함)
■ 지원내용: 연결형 최대 30백만 원, 교류형 최대 100백만 원 이내 차등지원
■ 지원유형
- 연결형: 서울과 지역 청년단체 연결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역교류모델 가능성 탐색
- 교류형: 청년마을조성 등 구체적인 현장 활동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진행

○ 일본 총무성에서는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바 '주변확대형'에서 도시부 소재 대학교를 비롯하여 개인, 기업, 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

- 일본의 관계인구는 2016년 타카하시 히로유키의 저서 '도시와 지방을 섞다: 타베루 통신'에서부터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도시부와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이소영·김도형, 2020)

〈일본 총무성 관계인구 창출사업 중 주변확대형 사업 사례〉

총무성의 관계인구 창출사업에서 관계인구는 관계심화형, 관계창출형, 주변확대형으로 구분하여 지역 외 도시부와 지역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모델사업 실시

구분		내용	지원
관계심화형	연고형	•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계인구를 모집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이 안의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지원	• 11개 지자체 • 지원금 상한 500만엔 • 복수단체 연계 사업인 경우 700만엔
	고향납세형	• 고향납세 제도를 활용하여 고향에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부자에게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지자체에게 재정을 지원	
관계창출형		• 지역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과 지속적인 연계를 가질 기회나 계기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과제 혹은 요구와 관계인구가 될 사람의 지식·기술을 매칭하기 위한 중간지원기능을 조성하는 지자체에게 재정을 지원	• 7개 지자체 • 지원금 상한 700만엔 • 복수단체 연계 사업인 경우 1,000만엔
주변확대형		• 도시부에 소재하는 개인·기업·단체(NPO·대학교 연구실 등)와 연계하며 도시부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게 재정을 지원 	• 21개 지자체 • 지원금 상한 900만엔
주변확대형 (외국인)		•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와 연계하면서, 방일외국인과의 교류를 촉진해서 지역(지역주민, 지역산업)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창출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게 재정을 지원 	• 5개 지자체 • 지원금 상한 700만엔

자료: 이소영·김도형(2021), 「작지만 강한 연결,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역청년 인재교류 및 파견

❍ 지역청년이 고령화되는 지역의 관리자이자 민과 관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와 지역의 지역공동체 상생 유지 존속

- 침체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활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을 지역에 파견

❍ 서울시 사업 등 기 추진 중인 사업을 확대·재편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청년 인재를 교류·지원하며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 지역의 로컬코디네이터로서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발전계획 수립, 지역홍보 및 지역 마케팅 강화 등 수행
- 청년 주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청년과 외지청년이 함께 지역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전남 마을로 프로젝트 사례〉

도시청년들을 모집하여 전남 지역내마을단위 사업장(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문화예술협동조합, 농어업법인등)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함으로써 마을 사업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마을사업장은 시군이 추천하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발굴, 청년모집 후 합동면접을 통해서 도시청년을 매칭하는 방식
- 대상연령은 만 39세 미만 청년(사업기간동안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유지 조건)
- 인건비, 교육훈련비, 4대 보험료 지원
- 지자체에서 정주여건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충남 홍성 청년 마을조사단 운영 사례〉

초고령화, 탈농촌화 등으로 지역자원에 대한 존재와 의미가 사라지고 있어 청년마을조사단을 통해 지역청년을 고용하여 마을자원을 새롭게 조명하는 활동 전개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청년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정착 가능성 확보

- ■ 지원대상: 청년 마을조사단에 관심있는 만 18~39세 청년
- ■ 사업비: 150백만 원(군비)
- ■ 사업내용: 마을지 제작 및 배포, 책거리 잔치 운영, 영상 상영 등

3. 기반구축

□ (가칭)지역청년지원법 제정

○ 청년기본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신규입법 추진

□ 지역청년 주도 추진체계 구축

○ 청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증대로 지역공동체 발전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청년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

○ 청년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정착하여 경제, 문화, 재생 등 지역사회가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다부처 협업 활성화

○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창업,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지원 등 다부처가 협업하여 주거·복지·일자리·공동체 등 융복합 사업 추진

○ 지역활력타운, 지역혁신공모사업 등과 같이 동일 목표를 향한 부처 간 협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처별 청년정책을 지역과 지역청년을 중심으로 재구조화

제3절 지역청년지원법 제정(안)

1. 법안의 주요 내용

1) 목적 및 대상

□ 목적

○ 이 법은 청년과 지역의 주도에 의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청년과 지역(여기에서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개념) 주도,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이 주된 입법 목표, 국가는 지원에 중점(재정지원 외에 관계 법제의 정비 등도 포함하는 개념)
- 궁극적 입법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지속가능발전을 덧붙이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도 명시(지역에서 자신의 능력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정신적 행복 포함)

□ 지역청년의 정의

○ 지역청년 지원법에서 청년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함

- 현행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법」,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등 법률마다 청년의 범위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나, 지역청년 지원법은 지역활력 회복의 차원에서 역할을 담당할 연령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법률을 포괄할 수 있도록 책정

○ 다만, 특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관할 아래 있는 청년에게 적용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청년의 범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상 청년의 범위는 주로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로 되어 있으나, 강원과 전남이 45세까지로 규정

| 표 5-2 | 현행 관련 법률과 조례상 청년의 범위(2024년 기준)

관련 제도		청년의 범위
법률	청년기본법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법	15세 이상 29세 이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39세 이하 청년 우대
	후계청년농어업인법	40세 미만
광역 자치 단체 조례	서울, 대구, 광주, 세종,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19세 이상 39세 이하
	부산, 인천, 대전, 전북	18세 이상 39세 이하
	강원, 전남	18세 이상 45세 이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 이 법률에서 지역청년이란 대상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대상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을 말함
- 해당 지역 거주 중인 청년 외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도 포함
- 이주 희망 청년의 명확한 식별이 어려울 수 있으나 지역협의회 등에서 갖는 권한 행사를 통해 융통성있고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

□ 대상지역과 지역청년특구의 정의

❍ 대상지역이란 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소멸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 중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속한 지역을 말함
- 시·군·구, 읍·면·동 등 행정계층은 따로 표시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융통성있게 적용
- 지방은 국가와 대칭되는 개념이거나 지방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 지역은 특정한 장소적 범위에 국한한 개념이라는 어감을 가지므로 이 법에서는 지방 대신 지역이란 용어를 사용
  • 인구감소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3조에 의거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함

❍ 지역청년특구란 청년의 대상지역으로의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청년과 해당 대상지역이 공동으로 주거·문화시설·네트워크 등을 복합하여 기획·설계한 청년친화 복합공간으로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함

- 지역청년특구의 구체적인 지정절차는 지역청년특구의 신청 및 지정 조문에서 규정하고 여기에서는 지역청년특구의 법적 성격을 개념 지음

| 표 5-3 | 관련 법률상 핵심 개념 및 용어

법률	핵심 개념	용어의 뜻
도심 융합특구법	도심융합특구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지역문화 진흥법	문화도시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
	문화지구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
지역상권법	지역상생구역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 • 상업지역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자율상권구역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 • 상업지역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2) 지역청년특구 지정 및 운영

□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 국가는 청년과 대상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청년특구를 기획·설계 및 운영하도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정 그 밖의 지원을 하여야 하고, 지역소멸 방지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서로 긴밀히 협업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 지역청년특구로 적합한 장소적 범위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대상지역 내에서 지역청년특구를 기획·설계 및 운영하되, 이주를 희망하거나 이주한 청년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업을 통하여 성과를 확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는 관계법령을 집행할 때와 관련예산을 집행할 때 청년의 지방유입 및 정착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유의하여야 함

○ 부처간 협업,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조하고, 국가 주도가 아니라 청년과 지역이 주도

-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정책과 지역활력 회복에 관련된 다수의 법령이 있고 이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이 행하여짐을 감안하여 이 법의 취지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지역청년에 대한 우대 등을 하도록 촉구

□ 지역청년특구의 지정 절차

○ 지역청년특구 신청

- 시·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서 작성한 지역청년특구 조성계획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역청년특구의 지정을 신청
- 지역청년특구 조성계획에는 지역청년특구의 명칭·위치·면적, 지정의 필요성, 지역청년특구의 내용과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시기, 그리고 지역청년특구사업 협의체의 구성 등 추진체계, 재원조달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지역청년특구 지정
- 지역협의회에서 지역청년과 공동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 및 운영계획수립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안을 고려
-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은 기본목표와 중장기 지역청년특구사업에 관한 사항, 기획·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시·도지사는 전략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청년특구의 운영을 포함한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연도별 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을 수립
- 지역청년특구는 청년유입거점 기능을 하므로 광역자치단체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업체제 구축(지역협의회 기능 최대 활용)

□ 지역청년특구 운영 추진체계

○ 지역청년특구 추진위원회
-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시·도 부단체장,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 3년마다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 심의·의결, 거점 지정

○ 지역청년특구 지역협의회 및 시군구 협의회
- 설치 희망지역의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설치, 시장·군수·구청장 및 청년 등으로 구성, 운영계획(설치 이후) 및 조성계획(신청시) 수립
- 관할구역 내 지역청년특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의 공동 해결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함
  • 각 지역에서는 지역청년특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지역청년특구 협의체
- 지역청년은 지역자원의 연계·활용을 통한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체의 운영 및 지역청년특구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협의체는 지자체장에게 등록
  •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주체는 사업시행자로서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군구에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하여 관리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3) 지역청년특구 특례 및 재정·금융지원

□ 지역청년특구 관련 특례

○ 사용료 및 조세 감면
-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는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담금·점용료·사용료·비용·협력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지역청년특구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 우선임대, 수의매각 등 공유재산 사용 특례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 등을 사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음

○ 전입희망청년 대상 주택 특별공급
-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청년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 지역청년특구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증금 증액 청구가 불가하도록 함

○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특례 등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조치 등을 적용하지 않음

○ 청년 애로센터 설치 운영, 학령아동 진학 지원, 의료지원, 문화생활 지원 등 추가 검토
- 특정 지역의 자치단체장 또는 유입 청년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특례 추가

□ 지역청년특구 재정·금융지원

○ 재정 지원 및 기금 신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 지원, 지역청년지원기금 신설(지방비), 특별교부세 지원 등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금융지원
- 설립취지가 지역청년특구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에 있는 법률의 운용에서 이 법에 따른 사업이 우선되도록 함

2. 법률(안)

○ 6개 장 27개 조문 및 부칙
- 법률의 내용별로 조문을 세분화하여 구성안 마련(부록 참조)

○ 법률명
- (가칭)지역청년지원법 또는 (가칭)지역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검토

| 표 5-4 | (가칭)지역청년지원법 장별 편제안

장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청년특구 운영 추진체계	제5조(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 제6조(지역청년특구지역협의회 및 시군구 협의회) 제7조(실태조사) 제8조(관련 조례의 제정)
제3장 지역청년특구 관련 계획과 지역청년특구의 지정	제9조(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 수립) 제10조(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의 수립) 제11조(지역청년특구의 신청 및 지정) 제12조(지역청년특구의 지정 해제)
제4장 지역청년특구사업시행 등	제13조(사업시행자) 제14조(지역청년사업특구 협의체의 설립) 제15조(지역청년특구운영재단의 설치) 제16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제5장 지역청년특구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자금지원 등) 제1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2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2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22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제23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24조(지역청년지원기금 설치 등)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25조(지역청년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제26조(전문지원기관)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이 법 시행 당시 추진사업에 대한 적용)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고문헌

[국내 및 해외 문헌]

감사원(2018.5),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감사연구원(201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실태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2013), 「공공부문 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야)」.

감사원 감사연구원(2019), 「고용장려금 성과분석 및 개선과제」.

경기도(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5),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고용노동부(2017), 「청년고용정책 현장모니터링 및 정책대안 마련」,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2018), 「일자리사업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2019), 「지역산업 중심 고용정책 활성화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2020), 「지역고용정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2024.2), 「2024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

관계부처합동(2019.9),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관계부처합동(2020.5),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 방안(Ⅱ)」

관계부처합동(2020.7), 「청년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계부처합동(2020.10),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관계부처합동(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관계부처합동(2022.10.26),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관계부처합동(2024.3),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청년정책 추진계획」.

관계부처합동(2024.3), 「2024년 중앙부처 청년정책 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2024.3), 「2024년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일자리위원회(2018.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국무조정실(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 07),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국회예산정책처(2013), 「청년 일자리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202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23.10),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Ⅱ」.

국회예산정책처(2024.7),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Ⅲ」.

김기헌(2015),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제1차 청년정책포럼: 2025년 대한민국 청년의 삶을 전망하다」,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외(2016),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외(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외(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도형·박승규(2017), 「울산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수요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도형·박승규(2021), 「전라남도 은둔형 청·장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동영(2018),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이슈브리핑」 183호, 전북연구원.

김문연 외(2017), 「울산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정책방안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김선기·박진경·김도형(2012),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상민·박진경(201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 및 성과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주·김성찬(2017), 「경북 청년발전기금(가칭) 설치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승택(2018), 「청년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해외사례 심층연구: 일본」,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2018), "청년고용의 현황과 대응방안",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정진호·이인재(2016), 「일자리 창출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2015),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환경농업연구원.

박승규·김도형(2020), 「경상북도 신혼부부 주거실태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이제연(2017),「충북 청년실업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준 외(2022),「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전환을 위한 과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박진경·이소영(2016),「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김선기(2017),「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김상민(2018),「울산 청년층 주거실태분석 및 주거복지 안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임태경(2019),「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간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김도형(2020),「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원시(2017),「수원청년생태계조사 보고서」, 수원시정연구원.

오은주(2018), "4차 산업혁명시대, 서울시 노동시장 진단과 대응방향",「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56」, 서울연구원.

오은주·박진경(2015),「청년층 농산업분야 취농·창업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효송(2024). "'결혼도 출산도 싫어' 한·일·중 2030 왜 이럴까…한 목소리로 꼽힌 원인". 머니투데이, 2024년 9월 3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90315323882348.

은평구(2016),「청년지원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대학내일.

이상호·주무현·오민홍·고영우(2015),「지역노동시장 유형화와 지역고용정책 개선과제」, 한국고용정보원.

이성희·노용진(2017),「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정책 심층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이소영·김도형(2021),「작지만 강한 연결,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창준(2023), "'결혼 전까진 독립 안 할래요' 청년 절반이 부모와 함께 산다". 경향신문, 2023년 11월 27일.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1272110005.

임홍택(2018),「90년대생이 온다」, 웨일북.

일자리위원회(2017),「미래가치형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공공협력원.

일자리위원회(2017),「일본의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고용정책 연구 – 일본의 지역 부흥협력대 제도를 중심으로」, 생각연구소.

전라남도·경상북도(2020),「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 마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라북도(2017),「전라북도 청년실태조사 연구」, 전북연구원.

전정환(2019).「밀레니얼의 반격」. 더퀘스트.

제주도(2017),「제주청년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조기현·이장욱(2017),「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성철 외(2019).「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4.1.10.)「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칸막이 없앤다」.

통계청(2024.1),「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통계청(2024.2),「국민 삶의 질 2023」.

통계청(2024.5),「2024년 5월 최근경제동향」.

통계청(2024.6),「2024년 6월 고용동향」.

청년위원회(2012),「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위원회(2016),「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2016년 청년정책 포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위원회(2016),「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위원회(2017),「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2017년 청년정책 포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행정안전부(2017),「지방소멸대응지역활력 특별법 수립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20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성과분석 및 진단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2021), 「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2023), 「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성과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2020, 2021, 2022),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공고(2024.10.),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고(제2024-1396호)」.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6.2.),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7개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조성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12.27.),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8개 부처 합동으로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법령 및 관련 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법률 제20314호, 2024. 2. 20.,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귀농어귀촌법)」 (법률 제19283호, 2023. 3. 28., 일부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약칭: 지역특구법)」 (법률 제20236호, 2024. 2. 6., 일부개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심융합특구법)」 (법률 제20234호, 2024. 2. 6., 타법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법률 제20259호, 2024. 2. 13., 일부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약칭: 인구감소지역법)」 (법률 제19840호, 2023.12. 26., 타법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법률 제19514호, 2023.7.1.4., 타법개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상권법)」(법률 제20365호, 2024. 2. 27., 일부개정)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약칭: 청년고용법)」(법률 제19253호, 2023.3.21. 일부개정)

「청년기본법」(법률 제19940호, 2023.12.31., 일부개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법률 제17278호, 2020.5.19., 제정)

[웹사이트]

모종린(2023), 로컬콘텐츠의 타운화 제5화 포틀랜드 모델: https://brunch.co.kr/@riglobalization/587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World Bank Group 홈페이지: https://www.ifc.org/en/what-we-do/sector-expertise/public-private-partnerships

KBS부산.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1부 골목위의 콜럼버스. 24.7.24 방송. https://youtu.be/IBy7qXVBsZ4?si=5FQ1G2E3QL45DIjY

Portland.gov. Commercial Alteration - Tenant Improvement Building Permits & Inspections:

https://www.portland.gov/ppd/commercial-permitting/commercial-permit-inspections/commercial-tenant-improvement-alteration

The World Bank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www.worldbank.org/

부 록

부록: 지역청년지원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과 지역의 주도에 의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특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관할 아래 있는 청년에게 적용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청년의 범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대상지역"이란 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소멸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인구감소지역(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비수도권(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3. "지역청년"이란 대상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대상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을 말한다.
4. "지역청년특구"란 청년의 대상지역으로의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청년과 해당 대상지역이 공동으로 주거·문화시설·네트워크 등을 복합하여 기획·설계한 청년친화 복합공간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지역청년특구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지역청년특구의 발전전략 및 과제에 따라 지역청년특구에서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다음 항목을 통한 로컬 청년 생태계의 구축
      1) 융복합 지역청년특구의 조성
      2) 지역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강화
   나. 다음 항목을 통한 청년 비즈니스 기반 창출
      1) 지역인증 청년 디딤돌 일자리 사업 추진
      2) 지역자산기반 청년 비즈니스 활성화

다. 다음 항목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청년 상생발전
1) 수도권과 비수도권 연계협력사업의 추진
2) 지역청년 인재교류 및 파견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년과 대상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청년특구를 기획·설계 및 운영하도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정 그 밖의 지원을 하여야 하고, 지역소멸 방지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서로 긴밀히 협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 지역청년특구로 적합한 장소적 범위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대상지역 내에서 지역청년특구를 기획·설계 및 운영하되, 이주를 희망하거나 이주한 청년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업을 통하여 성과를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는 관계법령을 집행할 때와 관련예산을 집행할 때 청년의 지방유입 및 정착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청년특구의 기획·설계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거나 더 높은 지역청년 우대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청년특구 운영 추진체계

제5조(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 ①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9조에 따른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0조에 따른 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의 추진상황에 따른 보완 및 추가지원 사항의 검토
3. 제11조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의 지정 및 제12조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지역청년특구의 기획·설계 및 운영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조와 지원
5. 그 밖에 지역청년의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단체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청년문제와 지역소멸 등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④ 제3항의 위원 중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청년특구지역협의회 및 시군구 협의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및 구청장 및 관할구역 내의 청년단체의 대표자와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을 위원으로 하여 지역청년특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협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협의
2. 제11조에 따른 지역청년특구 조성계획의 수립
3. 관할구역 내 지역청년특구의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공동 해결방안 협의
4. 그 밖에 지역청년특구과 관련된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관할구역 내 지역청년특구의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와 그 밖의 관련사항을 심의 및 협의하기 위하여 시, 군, 자치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회 및 시, 군, 자치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과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 지역청년특구의 지정 그 밖에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에 관한 현황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제8조(관련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청년특구 관련 계획과 지역청년특구의 지정

제9조(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청년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지역청년특구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청년특구의 기획·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청년특구의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청년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계획이 수립된 후 매년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성과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의 발전전략 및 과제를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제6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전략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전략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청년특구의 운영을 포함한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연도별 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제4항의 시, 군, 자치구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청년특구의 신청 및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서 작성한 지역청년특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역청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청년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역청년특구 지정의 필요성
3. 지역청년특구사업의 내용 및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4. 제14조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 협의체의 구성 등 추진체계(협의체를 구성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재원조달방법
6. 제15조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운영재단의 설립계획 및 운영 방안(설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지역청년특구 조성·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역청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청년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역청년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지역청년특구의 경우 관보에 지정사실을 고시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지역청년특구을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지정”을 “변경지정”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지역청년특구의 지정·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청년특구의 지정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변경지정된 지역청년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청취 및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지역청년특구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지역청년특구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청년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청년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지역청년특구의 경우 관보에 지정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지정해제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4장 지역청년특구사업시행 등

제13조(사업시행자) ①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11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 협의체, 지역청년특구운영재단 또는 그 밖에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② 지역청년특구사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면 지역청년특구사업 중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계획을 제11조제1항의 지역청년특구 조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한 때를 말한다)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역청년특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의 신청·지정 및 변경,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작성 및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청년사업특구 협의체의 설립) ① 지역청년은 지역자원의 연계·활용을 통한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협의체의 운영 및 지역청년특구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협의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3. 협의체의 목적, 구성 또는 운영 형태가 사업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협의체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그 밖에 협의체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청년특구운영재단의 설치) ① 지역청년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역청년특구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청년특구운영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청년특구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또는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을 재단으로 보고 재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지역청년특구 사업의 지원 및 시행
3. 지역청년특구 내 교육·문화·의료·정보통신·유통산업 등의 육성·지원
4. 지역청년특구 내 기업·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
5. 지역청년특구 내 교육시설·주택단지 등의 조성·관리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청년특구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제9조 제4항(제16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지역청년특구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장 지역청년특구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자금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지역청년특구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자금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제1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청년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비용·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10.「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11.「초지법」 제23조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2.「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제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청년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또는 정착 청년 및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 감면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청년특구사업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특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재산·공유재산은 지역청년특구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④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지역청년특구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국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및 제4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역청년특구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지역청년특구로 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지역청년특 내의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지역청년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지역청년특구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제23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지역청년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역청년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청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청년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청년지원기금 설치 등) ① 시·도는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청년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과 기부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지역청년의 유입 및 정착 지원 목적으로 사용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25조(지역청년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청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청년특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역청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청년특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3.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6조(전문지원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문제와 지역활력 회복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지역청년 유입 정착 지원 전문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규제 개선, 자료 제공, 예산 배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에 지원내역 등 지역청년 유입 정착 지원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당시 추진사업에 대한 적용) 이 법 시행 당시 행하여진 사업으로서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이 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에 (9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지역청년지원법」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

②「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정책연구 2024-14

지역청년지원에 관한 법·제도 수립방안 연구

저 자 박진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정찬 | 입법 Q&A 대표
최민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발 행 일 2024년 11월 21일
발 행 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전 화 033-769-9999
홈 페 이 지 http://www.krila.re.kr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